

부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부유세의 조세정책적 의미

2012. 12

노영훈

Kipf 한국조세연구원

서 언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에서 재정적자 및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조세개혁(Tax Reform) 작업들이 한창이다. 특히, 고소득자와 자산가들에 대한 개인소득세 개편 및 부유세 도입 논의들은 유럽 내 재정위기 국가들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부유세 시행국들의 세제와 세무행정에 기초하여 순부유세의 원형(proto-type)에 해당하는 개념을 정리한 후, 이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부동산만에 대한 조부유세(gross wealth tax)인 종합부동산세와 대조 비교하고, 주택분 증부세의 순부유세로의 발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순부유세를 도입하여 시행하다가 폐지한 유럽의 국가들 중 스웨덴과 독일에서의 문제점들, 그리고 매년 개편하면서도 여전히 시행중인 프랑스에 대하여 매우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택자산에 대한 조부유세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가구들에 대한 과세당국의 미시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저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계자산 소유정보를 담고 있는 가계금융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지방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가구를 추정하여 세부담액을 추산한 후, 그 분배효과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주택분 증부세의 대안으로서 우리나라에 순부유세를 부과할 경우의 각종 대안들을 제시한 후 대안별 세수효과와 분배효과를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자는 소득과 자산의 결합분포를 제공하는 통계청의 가계금융조사 제2차 연도 자료인 2011년 가계금융조사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정밀한 실증분석을 하였는데 이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단순히 가구별 소득-자산자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가구원별 주택 소유 자료까지 연계하여 가구별 다주택분포 상황까지도 파악하여 제시하는 등 그동안 학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유익한 연구결과들을 제시하여, 본 보고서는 수편의 학술논문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미시원자료를 제공한 통계청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있다. 또한 동 자료를 사용한 실증분석의 기초가 되는 각종 전산분석 통계작업을 수행하는 데 기여한 김용대 박사에게 최대의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다. 마지막까지 저자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에 맞추어 각종 그림과 표를 작성하면서 원고를 정리해 준 홍유남 주임연구행정원에게도 사의를 표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혀둔다.

2012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조 원 동

요약 및 정책시사점

우리나라에서 2005년에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는 두세 차례의 주요 개편을 거치고,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함께 개편한다는 정책논의가 진행되다가 현재는 멈춘 상태이다. 토지만이 아닌 주택건물의 자본가치도 포함한 주택자산에 대한 합산과세가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단순히 지방재산세로의 통합과세 방향만으로 개편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주택자본'이라는 저장(housing stock)에 대한 시장평가액과세가 자본형성을 기본적으로 저해할 수 있다는 부작용인데, 이를 완화할 세제개편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종합부동산세는 1992년 시작된 토지에 대한 조부유세(gross wealth tax)인 종합토지세에 주택자산을 추가하여 2005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순부유세와 비교하여 보면 부채를 공제하지 않는 조부유세의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한 세제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그리스·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극복 노력, 그리고 미국의 재정절벽 및 국가부채 축소 논의들에서 빠짐없이 제기되는 고소득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증세 주장과 순부유세 도입 주장들은 소득 및 자산분배 불평등도의 축소와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한 다양한 세제 개혁의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이나 부의 분배라는 목표만 놓고 보더라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많은 공공정책 수단 중에서 조세정책 수단으로 어떠한 형태의 부유세제를 도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수효과 및 경제에 미치는 각종 효과들에 대한 정책적 검토는 순부유세 도입 논의를 위한 선결 사안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한국 사회의 빈부 격차와 소득불평등 문제를 완화하는 다양한 접근방법론들 중의 하나로서 부유세 도입의

가능성을, 우리나라 소득세 및 자산과세분야 세제개혁의 여러 과제들 특히 주택분 종부세의 개편과제와 함께 살펴보는 데 있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부유세의 개념과 함께 부자와 고소득자 간 구분, 유량(flow)으로서의 소득과 저장(stock)으로서의 부(자산)의 개념 그리고 양자 간 관계들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각국의 과세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민간 개인 및 가계부문에서의 소득분포 및 자산분포 정보들, 그리고 통계당국이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표본가구를 통한 소득과 자산 간 결합분포에 대해 소개한다.

제Ⅲ장에서는 순부유세의 원형적 모습(proto-type)을 유럽의 시행국들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이것이 개인소득세의 누진세제 및 세무행정적 보완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도입되었음을 보인다. 순부유세는 가계나 개인을 과세단위로 하면서 부과대상 자산범위를 부동산 이외에 금융자산 및 기타 실물자산까지도 포함시켜 민간가계 대차대조표상의 구성자산(portfolio) 합계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순자산(또는 순부: net wealth)에 대해 단일 또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면서도 낮은 세율로 매년 부과함으로써, 가계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소득 및 자본이득을 과세당국이 파악하기 어려운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에서 착안하여 시행되었다.

명칭과 달리 고액자산가들만을 대상으로 부과되지 않는 나라들이 많은 것은 이러한 소득세 보완론적 역할 때문이다. 장점 못지않게 매년 소유자산에 대한 시가평가(mark-to-market valuation)의 애로, 납부세액 현금 확보의 어려움(liquidity problem), 해외 자산도피, 그리고 비과세 대상자산으로의 자산구성 변화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성 문제들로 인해 순부유세는 1990년대 중후반 폐지되는 추세에 있었다. 스웨덴의 경우 1990년대 이원적세제(Dual Income Taxation)를 도입하면서 자본소득에 대해 낮은 정률과세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순부유세의 기능을 재정립하였으나, 순부유세 비과세대상으로 비상장주식, 상속가업, 개인사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주요 대주주 소유지분까지도 포함되어 불공평성 문제 때문에 2007년 폐지되었다. 독일의 경우 1997년

연방헌법재판소가 순부유세 과세대상 자산의 평가 불균일성 때문에 세부담 형평성이 위배된다는 논리로 위헌결정을 내린 후 상속증여세와 부동산취득세의 개편과 함께 폐지되었다.

프랑스의 순부유세인 사회통합적 자산세(Impô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 ISF)는 사회당과 보수연합 간 정권교체에 따라 폐지와 재도입을 거듭하였는데, 명칭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최고액 자산가들이 높은 세부담을 지는 것이 형평성을 높이고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하다는 정치철학을 대변하는 조세이다. 목적세로 특정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ISF의 세수총액은 최저생계비보조금 프로그램의 소요예산과 거의 같아서 프랑스 내 최고 부자들이 제일 열악한 입장에 있는 계층들을 구원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또한 사회통합적 자산세는 개인이 소유한 한 시점에서의 순부의 가액에 대해 매년 과세하는 특성상 세금을 납부할 현금 확보능력(liquidity problem)이 납세자의 소득으로부터 있는가를 배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특징적이다. 특정 연도의 사회통합적 자산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순부유세액에 개인소득세, 사회보장세, 주거주 주택에 대한 지방재산세 납부세액을 합친 총세액이 그 전년도 연간소득의 50%를 넘을 수 없다는 세부담 상한 혜택을 받게 된다.

소득세 순부유세의 부과대상 범위에 따라 총조세수입에서 순부유세 징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 나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1% 미만의 낮은 세수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세수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운용되는 조세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유럽 재정위기 국가들을 중심으로 재도입되고 있으며 세수증대 목적의 조세개혁 방안들 중 순부유세나 일회성 자산세 부과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제Ⅳ장에서는 2011년 가계금융조사 미시원자료를 사용하여 주택물건별 지방재산세 및 각종 부가세들의 세액, 그리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를 추정하고 이들의 인별 종합부동산세 및 부가세 세액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택 관련 보유세부담의 분배효과 및 소득 대비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주택에 대한 지방재산세 등은 소득 기준 미약하게나마 역진적인 반면, 주택자산 소유에 대한 추가적인 주택

분 중부세 등의 소득기준 세부담은 누진적임을 Suits 지수값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표본가구들로부터 255가구의 주택분 중부세 납부 추정가구들을 대상으로 주택보유세액의 주택자산가액의 비율인 평균실효세율을 구한 결과 전체평균은 0.32%이며, 소득분위별로 0.3%(소득 1, 2분위), 0.33%(소득 3, 4분위), 0.32%(소득 5분위)의 분포를 보여 별로 차이가 없음이 나타난다. 경제적 능력을 보다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저량변수인 순자산(=총자산-총부채)과 대비하여 주택보유세의 부담비율을 계산한 결과, 소득분위가 올라감에 따라 증가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역U자형 패턴을 보이는데, 이는 주택자산가액을 순자산에 대한 대리변수(proxy)로서 과약하고 과세하기 곤란함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순부유세의 여러 대안들을 기준금액, 자가거주주택에 대한 감면평가를 적용, 연간소득 대비 상한 등의 몇 가지 조합을 통해 상정한 후 세수 및 분배효과를 살펴보았다. 가장 높은 기준금액인 순자산 30억원 초과를 부과대상으로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1조 5천여 억원의 세수가 예상되며, 그 분배효과는 현행의 주택분 중부세보다도 더 나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요약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개편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현실에서 주택분 중부세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주택분 중부세의 성격을 재규명하는 과정에서 주택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주택임대소득과세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순부유세에 충실하게 개편할 경우의 각종 정책대안들을 모색해 보았다. 연간소득 대비 세액상한 부담, 주택자산 산입비율 조정, 순부유세 과세대상 기준금액 설정 등을 통해 현행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비 세수 및 분배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득 대비 세부담액의 형평성을 제고 하면서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대안들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순부유세 도입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기존의 관련 조세들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과세, 상속증여세, 그리고 지방재산세에 대한 조세개혁과 병행하여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

목 차

I. 서론	15
II. 부유세의 개념과 조세정책적 의의	19
1. 부자(Rich)와 고소득자(High-income earner)의 구분 및 분포	19
2. 부유세의 개념	22
3. 부유세 도입 주장의 배경	24
III. 외국에서의 부유세 시행 경험	27
1. 일반론	27
2. 최근 폐지한 스웨덴의 순부유세 경험	40
가. 도입 배경, 역할 및 기능	40
나. 스웨덴 순부유세의 구조	41
다. 스웨덴 순부유세의 개편논의들	43
3. 프랑스 순부유세인 '사회통합적 자산세'의 현황	44
가. 개요	44
나. 납세자범위와 신고의무	45
다. 과세대상 자산	47
라. 세수규모	47
마. 순부세의 세부담 상한	48
바. ISF로부터의 정책적 시사점	48
IV. 부유세로서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평가	51
1. 종합부동산세의 성격	51
2. 종합부동산세의 시행 경험	52
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형평성 논의 및 세부담 검토	52

나. 주택중부세의 주택임대소득 보완과세 기준에서의 적정성 판단	70
3. 부유세 대안별 세수 및 분배효과	70
 V. 결 론	 77
 참고문헌	 82
 <부록>	 86
1. 2012년 프랑스 부유세(ISF) 해설	98
2. 종합부동산세 개요	162
3. 종합부동산세의 변화	165
4. (구)중부세법 위헌소송 헌법재판소 결정문 요약	166

표목차

〈표 Ⅲ-1〉 순부유세 도입 및 운영국가 현황	29
〈표 Ⅲ-2〉 각국의 부유세 제도(2011)	30
〈표 Ⅲ-3〉 OECD 국가별 순부유세(4200) 세수(4200 Recurrent taxes on net wealth)	35
〈표 Ⅲ-4〉 국가별 부유세 납세의무자 범위	39
〈표 Ⅲ-5〉 프랑스 ISF 과표구간별 세율	46
〈표 Ⅳ-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보유주택수별 과세현황 추이	54
〈표 Ⅳ-2〉 센서스 점유형태별 타지주택 소유 비율	58
〈표 Ⅳ-3〉 2011년 가계금융조사 표본가구의 주택 소유 및 점유 현황	59
〈표 Ⅳ-4〉 2011년 가계금융조사 소득 5분위별 자산 분포	60
〈표 Ⅳ-5〉 2011년 가계금융조사 주택종부세 납부가구 소득분위별 세부담 분포(공시가격비율 80%, 가중치 적용)	65
〈표 Ⅳ-6〉 2011년 가계금융조사가구의 소득분위별 주택 보유세 부담 분포(공시가격비율 80%, 가중치 적용)	66
〈표 Ⅳ-7〉 순부유세 대안별 시뮬레이션 결과	74
〈표 Ⅳ-8〉 순부유세 대안별 세수추계액	76
〈부표 1〉 개인소득세의 총조세수입 대비 비율의 국제비교 (2008년 기준)	86
〈부표 2〉 2010년 가계금융조사와 센서스상의 점유형태별 주택소유 비교	86
〈부표 3〉 소득 및 순자산 불평등도 변화	87
〈부표 4〉 2010년 가계금융조사 표본가구의 주택 소유 및 점유 현황	87
〈부표 5〉 2010년 가계금융조사 소득 5분위별 자산 분포	88

〈부표 6〉 소득 10분위별 누적 소득과 누적 보유세 부담액(2011) ……	89
〈부표 7〉 소득 10분위별 누적 소득과 누적 보유세 부담비율(2011) ……	90
〈부표 8〉 과세대상(지방세법상 과세유형 구분 → 종부세법상 기준금액 초과) ……	162
〈부표 9〉 주택 종부세 세율 ……	162
〈부표 10〉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종부세 세율 ……	163
〈부표 11〉 별도합산토지(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종부세 세율 ……	163
〈부표 12〉 세액계산절차 ……	163
〈부표 13〉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포함) ……	165
〈부표 14〉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165
〈부표 15〉 별도합산토지(건축물 부속토지 등 사업용토지) ……	165

그림목차

[그림 IV-1] Lorenz 곡선과 Suits 지수	68
[그림 IV-2] 우리나라 주택관련 보유세들의 Lorenz 곡선 (2011년 가계금융조사자료)	69
[그림 IV-3] 순부유세 대안별 Lorenz 곡선 및 분배효과 (2011년 가계금융조사)	76
[부도 1] 2012년 프랑스 사회통합적 자산세(ISF) 신고서 양식 (No. 2725)	91
[부도 2] 별지(S1) 양식(부동산)	95
[부도 3] 별지(S2) 양식(증권 등 금융자산)	96
[부도 4] 별지(S3) 양식(부채 및 기타공제)	97

I. 서론

우리나라에서 정치권 및 정책서클에서의 '부유세' 신설 주장은 1993년 이후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1993년의 금융실명제와 1997년의 부동산 실명제 도입 당시 정책당국은 동 제도들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부유세 도입에 대한 내부적 논의를 가졌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 이어 2004년 이후 몇 차례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노동당은 당의 주요 경제정책 공약으로 '부유세'의 신설을 주장했다. 가장 최근에는 2010년 (현) 민주통합당의 정동영 의원이 재원조달의 수단으로서 부유세 신설을 주장했다.

일반 국민들의 부유세 도입에 대한 호응은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으나¹⁾, 부유세의 구체적 모습이 제시되면서 설문조사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여 그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일반 국민이나 유권자들은 대개 글자 그대로 해석하여 '부유한 만큼 내는 세금' 또는 '부자들만이 내는 세금' 정도로 추측하여 설문 응답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와 함께 찬반논쟁 또는 간단한 의견 제시 (comment)를 하는 각계 전문가들 역시 '부유세'의 실체 그리고 이와 연계된 관련 조세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어쩌면 일반국민들 입장에서 "부자들이 더 세금을 내서 자기나 자기 주변 또는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더 많이 쓰겠다"는 조세정책으로 이해하고 심정적으로 호응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득이나 부의 분배라는 목표만 놓고 보더라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많은 공공정책 수단 중에서 조세정책 수단으로 어떠한 형태의 부유세제를 도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수효과

1) 부유세 도입 찬성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로는,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2004년 5월 8일 실시한 한국경제긴급진단 국민여론조사와 5월 20일의 한국방송(KBS)과 미디어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각각 62.3%와 69.1%의 찬성률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됨.

및 경제에 미치는 각종 효과들에 대한 정책적 검토는 순부유세 도입 논의를 위한 선결 사안이라는 판단이다.

본고의 목적은 현재 한국 사회의 빈부 격차와 소득불평등 문제를 완화하는 다양한 접근방법론들 중의 하나로서 부유세 도입의 가능성을, 우리나라 소득세 및 자산과세분야 세계개혁의 여러 과제들과 함께 살펴보는 데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2008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함께 개편한다는 정책논의가 진행되다가 중단된 상태이다.

최근 미국에서의 최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불공평성 이슈들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버핏룰(Buffet Rule) 주장이나, 유럽 재정위기 국가들의 부유세 제도입 및 신설 주장들은, 세부담 공평성의 문제와 함께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수증대용 목적으로도 '부(wealth)'에 대한 직접적 과세가 필요하다는 논의로 새롭게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8월 현행 연방소득세의 세부담 공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연간소득 100만달러 이상 초고소득자의 (평균세율로 계산한) 세부담이 중간소득 계층보다 적지 않게 되도록 하자'는 원칙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고용증대와 재정적자 감축방안'의 5대 원칙 중 중요한 하나이다²⁾. 스페인에서는 2008년 폐지되었던 부유세를 2012년 재차 도입하는 법률안이 이미 2011년 9월 상하원 의회를 통과하여 부활하였고, 이탈리아는 2조 유로달러(Eurodollars)에 달하는 국채문제 해법으로 '1회성 부유세 부과'가 논의되고 있으며, 독일도 올해 7월부터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해결 차원에서 1회성 부유세 부과 논의가 정치권에서 나오면서 독일경제연구소(DIW)³⁾에서 세수 및 분배효과 등을 연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미국에서의 '부자'들에 대한 세부담 불공평성 논의는 정확하게는 '최고소득자'에 대한 평균실효세율이 차하위소득계층들과 비교하여 더 낮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논란이므로 엄밀하게는 '부' 그 자체가 아닌 '고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 문제임. 그러나, 주로 주식으로부터의 장기자본이득이나 배당에 대한 별도 우대세율 적용 등의 혜택에 기인하여 세부담 역전현상이 발생하므로 특정유형 자산을 많이 보유한 부자에 대한 소득세 형평성 문제로 전개되는 것임.

3) Bach et al.(2011) 참조.

우리나라는 부유세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학계에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이다. 1990년대 중반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도입하면서 정책서클에서 잠깐 유럽식 (순)부유세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외국 제도에 대한 이해 차원으로 진행된 것이 전부이다. 반면 유럽은 도입하여 시행하였던 국가들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였던 영국이나 캐나다에서도 소득 및 부의 분포에 대한 실증연구들에서 출발하여 자산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한 세계개혁과 함께 순부유세 도입의 가능성을 검토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Davies(1991)는 캐나다를 대상으로 순부유세를 도입하려 할 경우 “부의 분포에서 하위(lower tail)에 속하는 빈자(貧者) 계층에 오히려 부유세가 역진적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설계해야 하며, 특히 어떻게 설계하더라도 고령자계층에 세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고 있다.

Kessler & Pestieau(1991)는 유럽공동체 국가들에서의 순부유세 및 상속세 과세를 연구한 결과, 부에 대한 조세들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부의 분포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세원 침식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부를 재분배할 수 없음을 제시하였다.

Duran, J. M. and A. Esteller(2007, 2010)는 1983년부터 2003년까지 20년 동안의 스페인의 부유세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상위 1% 부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의 비중에 대한 시계열을 구축하였는데, Alvaredo and Saez(200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15~20%의 범위 내에서 움직였으며 주택자산에 대한 과소과세 평가와 불성실신고 정도를 감안하면 19%까지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따라서 자산세 부과와 어려움을 통해 스페인의 순부유세가 부의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제Ⅱ장에서는 어떤 의미의 부유세 도입을 논의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이미 시행한 경험이 있는 나라들에서 발견되는 최대공약수적인 부유세 개념을 상정해 보고, 이러한 부유세 도입의 배경과 조세정책적 의미를 살펴본다. 그 다음 제Ⅲ장에서는 외국의 시행사례들을 유

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2011년 말 기준으로 정리해 본다.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종합부동산세 시행 경험을 살펴본 후, 부유세적 의미의 종합부동산세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고자 한다. 제1절에서는 기존의 종합토지세와 건물재산세에 대한 지방 재산세제를 개편하면서 2005년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소유자에 대해 추가적 보유과세가 도입된 이후 2차례의 개편을 겪으면서 제기된 ‘세부담의 형평성’ 도입 목적에 대한 판단을 2011년 가계금융조사 미시자료를 통해 실증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제2절에서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부유세의 원형에 가깝게 개편하는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며 그 세수효과 및 분배효과에 대해 가늠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부유세의 신설이 조세개혁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자본 및 자산소득과세 분야의 숙제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II. 부유세의 개념과 조세정책적 의의

1. 부자(Rich)와 고소득자(High-income earner)의 구분 및 분포

고소득자는 소득이 많은 개인들을 말하며, 이때의 소득은 일정기간, 예를 들어 1년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한 경상소득 또는 이로부터 이전지출을 감안한 가처분소득 등으로 정의된다. 이들 모두는 일정 단위기간 내에서 정의되는 유량(flow) 개념으로서 개인이나 가구 등 한 경제단위의 경제적 능력(economic position)을 측정하는 한 가지 척도이다. 특정한 명목 화폐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그 이상의 연간소득자를 고소득자라고 칭할 수도 있고, 모집단소득에 대한 정보가 비교적 충실하다면 이들을 10분위, 100분위와 같은 소득자 순위에서 차지하는 상위 10%, 상위 1% 소득계층에 속한 개인들로 정의할 수도 있다.

만일 어느 나라의 개인소득세가 매우 포괄적 소득(comprehensive income)에 대해 과세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면, 과세당국이 소득세 신고자료를 통해 포착한 과세소득 또는 총소득을 기준으로 최상위 1% 또는 10% 고소득자 소득의 전체 소득 대비 상대비율 또는 납부소득세비율 등을 통해 소득분포의 집중도나 분위별 납세부담을 가늠할 수도 있다. 반면, 어느 나라의 개인소득세가 특정 소득유형(예,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신고할 의무조차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과세(exclusion)되면서 이러한 유형의 소득이 특별히 고소득자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면, 신고된 개인소득세 과세자료를 통한 최상위 1%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집중도나 세부담 형평성 논의는 기본적인 한계를 갖게 된다. 따라서, 과세자료를 가지고 최상위 1% 고소득자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들이 납부하는 개인소득세액의 세수비율을 통해 소득집중도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또는 국제비교 연구할 때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본소득 등 소득원천 (source of income) 별로 과세제도의 변화와 조세체계의 국가별 차이를 감안하여 분석하는 것이 기본이다.

반면 부자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부자는 일정시점에서 소유한 자산의 평가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을 말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은 고소득자에 대한 기준금액과 마찬가지로 매우 주관적일 수 있다.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 금융회사들은 고액 순자산가(High Net Worth Individual, HNWI)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고액 순자산가는 '순재산(net worth)'이 일정 기준 이상인 개인으로, (주)거주주택 및 동산들을 제외하고 투자자산(investable asset)이 순액으로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경우를 기준금액으로 삼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2011년 1천만 여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07~2008년 세계 금융위기 직전의 인원수를 회복한 것이다. 또한 지역별로는 고액 순자산가 1인당 평균이 북미, 아태(330만달러), 유럽(310만달러)의 순으로 순위가 바뀌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310만달러), 독일, 일본의 순서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캡제미니/메릴린치(Capgemini & Merrill Lynch)는 세계-지역-국가별로 세분화하여 "World Wealth Report"를 1997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고액 순자산가가 전 세계 71개국 총소득의 98%와 전 세계 주식시가총액 (market cap)의 98%를 소유하고 있음을 조사발표한 바 있다. 또한 씨티그룹(Citibank & Knight-Frank)에서도 "Wealth Report: A Global Perspective on Prime Property and Wealth"라는 보고서를 통해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부의 규모나 분포는 민간금융회사 이외에도 중앙정부 내 통계부처나 중앙은행에서도 업무의 특성상 이들을 파악하고 있다. 통계청 및 중앙은행 등은 일정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민간가계가 보유한 실물 및 금융자산, 부채 등을 (설문)조사한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개인 또는 가구단위의 '부'의 분포를 추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캐나다 등에서의 소비자금융조사(Survey of Consumer Finances, SCF), 우리나라의 가계

II. 부유세의 개념과 조세정책적 의의 21

자산조사나 가계금융조사가 대표적인 예들이다. 어느 나라나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 통계를 작성하는 통계청이나 중앙은행은 국부통계의 개인(및 비법인사업) 부문 대차대조표 잔액을 통해 민간부문 개인 순부(=자산-부채)의 총계치(aggregate value)를 추정하거나, 부문별 자금순환표 작성을 위해 부의 변화를 추정하고 있다.

전술한 개인소득세 신고납부자료 이외에도 과세당국은 자산소득, (실물자산) 보유과세, 상속·증여 등 이전과세 자료를 활용하여 한 경제 내의 인별, 가구별 부의 분포를 추정하는 방법들을 개발하고 있다.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과세자료상의 이자·배당 등(연간) 금융소득으로부터(원본 스톡인) 금융자산 소유분포를 계산 또는 추정하거나, 스웨덴 등 순부유세 부과국들의 경우 과세당국에 신고된 부유세 신고자료를 직접 활용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종합토지세나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해당 부동산유형에 대해서 그 분포를 직접 계산한다.

또한 상속세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역추정 방법론(Estate Multiplier method)을 사용하기도 한다. 과세당국의 상속세 신고자료는 해당연도 중에 사망한 피상속인(deceased)들의 상속재산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들을 연초에 생존하고 있었던 부자들 모집단으로부터의 추출된 표본(sample)인 것으로 가정하고, 연령·성별·자산규모별 하위그룹들의 비중(weight)과 사망률(mortality rate)의 역수로 확대하여 생존하고 있는 부자들의 부의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가계금융조사와 같은 설문조사상의 부의 분포는 통상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상위 분포(upper tail)가 truncate되어 있어서, 최상위부자들에 대한 상세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는데,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위의 상속세 과세자료 역추정법으로 최상위 0.5% 또는 1%의 부자 정보를 추가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 후반부에서는 매년 3천~4천명 정도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자료나 우리나라 부자순위 일정인원(예: 300명)의 신빙성 있는 자산보유 현황자료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이러한 보완방법을 사용하지 못한 제약점이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2. 부유세의 개념

먼저 우리가 부유세라고 말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미 유럽 여러 나라에서 20세기 초부터 시행한 경험이 있는 14개 국가별 형태의 부유세, 그리고 인도·파키스탄 등에서 도입한 부유세의 개념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부유세라고 칭할 만한 기본 특성들(stylized facts)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본 특성들을 갖춘 부유세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고유의 특이한 형태의 부유세인지에 대한 개념 규정을 하지 않고 논의를 시작한다면, 동일한 부유세라는 용어를 쓰면서도 서로 다른 개념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게 되어 부유세 도입에 대한 논쟁은 소모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순부유세 시행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들만을 모아 정의를 내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가(자진신고납부 방식으로) 매년 과세하는 국세로서⁴⁾, 둘째, 개인소득세와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며, 셋째, 부부 또는 가구가 소유한 총자산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부(순재산가액)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人稅(personal tax, ad personam tax)로 과세하는 방식을 택하며, 넷째, 부를 구성하는 과세대상 자산이 상당히 포괄적이라는 기본 특성들을 갖고 있다.

또한 그 주된 과세목적과 기능으로, ①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거나 ② 국세로서의 개인소득세를 세제 및 세정적 차원에서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순부유세를 다른 자산과세인 지방재산세, 상속세·증여세 등과 대비하여 차이점을 살펴보면 순부유세의 개념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첫째, 거의 모든 나라에서 재산의 소유 사실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지방재산세(local property tax)를 발견할 수 있는데, 재산세는 대부분 지방정부 관할영역 내에 소재하는 개별 부동산 물건별로 달리 과세되는 物稅(in

4) 이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스위스를 들 수 있는데, 스위스연방을 구성하는 Canton별로 과세됨.

II. 부유세의 개념과 조세정책적 의의 23

rem tax)인 반면, 부유세는 부과주체 및 세수 사용권이 주로 중앙정부에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부 또는 가구단위로 전국에 소유한 재산의 합산가액을 기초로 과세되는 人稅(ad personam, personal tax)인 국세로서 전국 공통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이다. 또한 부유세와 개인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과세상한규정이나, 소득세의 자본이득 합산규정을 준용하여 과세단위를 선택한다거나, 소득세 인적기초공제제도와 밀접하게 연계하여 인적기초공제액을 설정하는 등 개인소득세 제도와 유기적으로 관련된 장치들을 갖고 있다. 물론 지방재산세도 재산의 가액(ad valorem)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가 많고 납세자의 타 원천소득에서 납부되므로 명목적 자산세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나, 납부소득세액과의 합산에 의한 과세상한과 같은 소유재산의 원본잠식 배제 장치가 없어 물세로서의 특성이 강하다⁵⁾.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부터 전국 단위의 인별 토지소유 합산가액에 대해 종합토지세가 누진세율로 최초 부과되기 시작하였고, 2005년부터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기 시작한 종합부동산세는 상업용 건물만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한 유형별 조부유세(gross wealth tax) 형태를 띠어 상당히 변형된 개념의 부유세의 변종(variant)이라고 볼 수는 있어도 부유세의 원형(prototype)과는 거리가 있다⁶⁾.

둘째, 상속세·유산세(inheritance, estate tax), 증여세(gift tax)는 보유세와 마찬가지로 人稅로서의 국세이면서도 세대간 또는 타인에 대한 자산이전 행위에 대해 포괄적 또는 개별적으로 과세되는 반면, 부유세는 자산의 보유단계에서 정기적으로 과세되며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재산에서 부담되는 실질적 자산세가 아닌 자산수익이 없을 경우 타 원천의 소득으로 납부해야 하는 명목적 자산세이다. 국가간 조세체계의 비교를 위해 마

5) 납부된 지방재산세액을 중앙정부의 개인소득세에서 소득공제하는 방식으로 개인소득세 쪽에서 지방재산세 납부액을 감안하는 경우는 있으나, 지방재산세는 물세로서의 기본 특성 때문에 인적 특성 및 납세자의 경제적 위치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개인별 토지소유가액을 합산·누진과세하는 우리나라의 종합토지세는 이러한 측면에서 전형적인 '지방재산세(local property tax)'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음.

6) 우리나라 종합토지세의 부유세적 특성, 우리나라에서의 순부유세의 단계적 도입 가능성, 그리고 조세정책적 의의에 대해서는 노영훈(1996)을 참조할 것.

련한 OECD의 조세분류 기준에 따르면 부유세는 대분류의 4000단위 재산과세(Taxes on property) 중 4200단위(Recurrent net wealth taxes)의 중분류에 속하게 되며, 상속이나 증여 행위와 같은 비정기적인 과세요건이 필요 없다.

셋째, 부동산 임대소득 및 부동산 양도차익과 같은 자산소득이나 자본이득은 개인소득세 체계 내에서 종합 또는 분리과세되는데, 이는 자산소득 또는 자본이득이라는 유량(flow)에 대한 과세이지 부유세와 같이 특정 시점에서 소유한 자산이라는 저장(stock) 또는 원본에 대한 과세는 아니다.

3. 부유세 도입 주장의 배경

부유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의 배경에는 부 및 소득의 분포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거나 개선되지 못했고, 특히 개인소득세 및 관련되는 재산과세가 적극적으로 재분배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 혹은 비슷한 발전단계에 있는 외국과 비교하여 부 및 소득의 불공평도가 심하다는 판단에도 기인하고 있다. 과연 부유세 도입을 통해 재분배를 도모할 정도로 부 및 소득의 분포가 불공평한지를 생각해 보자.

먼저, 민간부문의 개인 또는 가구단위의 부의 분포에 대해 동일한 기준에서의(on equal footing) 국가간 상대비교를 할 수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시장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민간부문에서의 부(marketable wealth)를 계층별 또는 인별 수준에서 일정 시점 기준으로 포착하고 있는 나라들은 순부유세를 시행 및 경험한 국가들과 상속·증여세 및 인지세, 그리고 개인소득세 과세자료로 추정하고 있는 몇몇 나라들에 불과하다⁷⁾. 따라서 부만을 놓고 볼 때 상위 몇 %의 부자가 일정기간

7) 다만 부유세를 부과하게 됨으로써(예, 스웨덴 등) 또는 상속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개인 부의 분포를 추계한 통계(예, 영국 국세청 국세통계) 및 연구 자료는 존재함. 특히, 미국 및 영국에서는 상속세 과세자료를 통한 간접추계 방법으로, 그리고 영국 및 영연방 국가들에서는 인지세(stamp duty)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고 있음. 또한 포괄적 소득세제(comprehensive income tax)에 가깝게 개인소득세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도 자본소득 및 자산소득을 통해

II. 부유세의 개념과 조세정책적 의의 25

또는 생애기간 동안 한 국민경제 전체에서 몇 %의 세부담을 하는지는 파악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기껏해야 최상위 몇 명의 재벌가 소유주식 가액이 몇 조원이라거나, 우리나라의 상위 몇 %의 땅부자가 전국 토지가액의 몇 %를 소유하고 있다는 정도와 같이 언론에서 단편적으로 보도하는 수준에 그친다. 물론 우리나라 경제 전체로 보아 증권거래소 등의 상장주식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며 공시지가로 계산한 전국 토지가액이 얼마이고, 국세청 기준시가로 계산한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이 얼마라는 통계치들은 총액(aggregate value)으로는 존재하지만 그 분포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표되지 않고 있다.

한 경제 내에서 부의 분포에 대한 신뢰할 만한 조사자료나 통계 그리고 이에 기초한 연구를 확보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자산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확한 기존 연구가 존재한다. 종합토지세의 부과자료는 1990년 이후 14년간 축적되어 있으나 이에 접근하여 수행된 연구는 단 3차례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이성욱·현진권(1993), 노영훈(1995), 노영훈(1999)). 특히 전 모집단을 상대로 토지소유분포가 개선 또는 악화되었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노영훈(1999)이 유일한데, 이들은 토지과표현실화율 제고를 통해 종합토지세 세부담을 집중적으로 인상하였던 1995년 기간 중 토지소유구조가 개선되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고 오히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정도이지만 악화되었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⁸⁾. 이후 노영훈(2004)은 토지과표현실화율이 상당히 진전된 2003년의 자료를 1996년의 인별토지가액 소유분포와 비교하여 최저 25%, 최상위 1%, 그리고 그 사이 토지소유계층들에서의 변화를 통해 소폭의 토지소유집중도 완화를 보고하고 있다.

인별 자산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음. 일본의 경우 총량적인 차원에서 국민경제계산을 통해 부문별 자산소유 상황을 매년 추적하고 있으나 인별 단위로는 이용 가능하지 않은 상황임.

- 8) 1993년의 종합토지세 개인납세자 840만명과 1996년의 960만명을 대상으로 하여 인별토지과표총액을 기준으로 토지소유집중도를 계산한 결과 Gini계수는 1993년의 0.654에서 1996년 0.671로 소폭 증가하여 토지과표현실화율을 21.3%p에서 31.1%p로 50% 가까이 급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토지분포의 불평등도가 심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소득이나 가계지출의 경우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미시자료나 대우패널을 이용한 수많은 기존 연구들이 있으나, 조사대상의 제약성 및 방법론 측면에서 각각 장단점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같은 자료를 쓰면서도 분석기간에 따라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소득분포가 악화되었다는 결론도 있는 반면, 그다지 심하지는 않다고 결론짓기도 한다. 또한 개인소득세가 누진세로서 세전소득과 세후소득의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여 소득재분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있는 반면, 다른 방법론을 이용하여 대체로 분위별 부담비율은 유지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들 연구들 대부분들이 갖는 가장 큰 문제는 본고에서 중요시하는 자본이득 및 자산소득에 대한 인별 또는 가구별 실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제한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에 봉착하게 된다는 점이다.

결국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금융 및 실물자산과 같은 저장변수(stock variable)에 대한 모집단 또는 표본자료를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 자료와 같은 유량변수(flow variable)와 연결시켜 대표성 있는 연도별 횡단면 자료를 주요 시점별로 파악하여 분석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소득(income)과 부(wealth)를 2차원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여러 원천의 자료 집합들(datasets)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결합분포(joint distribution)를 구성하는 노력은 노영훈·김현숙(2005) 이후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2006년 통계청 가계자산조사와 2010년 이후의 통계청·한은·금융감독원의 가계금융자산조사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Ⅲ. 외국에서의 부유세 시행 경험⁹⁾

1. 일반론

부유세를 시행한 경험이 있는 국가들의 다양한 부유세 제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20여 개에 달하는 사안들에 대한 기준과세구조(baseline structure)가 정의되어야 한다.

즉, 과세대상 자산범위(부를 구성하는 자산형태), (예상)세수규모, 세율수준, 단일비례세율 또는 누진세율(graduated rate), 면세점 설정 여부 및 수준, 소득세와의 세무행정 연관성 및 과세상한(ceiling) 또는 최저한(floor) 설정 여부, 납세의무자 범위(거주내국인 등) 및 비거주자에 대한 징세절차, 국제조세조약 관련 문제, 법인에 대한 과세 여부(net worth tax), 개인·부부·가구 등 과세단위(taxation unit) 설정, 신탁 및 재단 등에 대한 특례조항 여부, 법인 등에 대한 과세시의 이중과세 문제, 점진적·단계적 도입 여부 및 도입기간, 면세나 비과세 대상, 과세표준 산정 시의 공제 범위, 비과세대상 자산범위, 재산평가방법 및 평가갱신주기, 평가 곤란 재산에 대한 실무문제, 재산저평가 방지 대책, 자진신고납부 또는 정부부과 결정제도 등 과세방식 결정문제, 불성실신고 시의 징벌문제, 결정세액 납부에도 조치, 징세비용 및 납세협력비용 등 최소화 문제 등이다

순부유세는 아시아권에서는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중남미에서는 콜롬비아, 우루과이가 그리고 일본도 잠시 시행해 본 경험이 있지만¹⁰⁾, 주로 유럽의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70여 년 이상의 긴 시행 역사를 갖

9) 본장은 1996년 필자의 재정포럼 원고를 기초로 2010년 시점 기준으로 수정 보완 발전시킨 것임.

10)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도 1960년대를 전후하여 칼도(Nicholas Kaldor)의 세계개혁권고안을 받아들여 부유세를 도입하여 시행중이며, 일본은 샤우프 사절단(Shoup mission)의 권고로 3년간(1950~53)의 시행 경험을 갖고 있음.

고 있다¹¹⁾.

2011년 현재 시행 중인 유럽의 5개 국가 중 폐지했다가 재도입한 프랑스(1982, 1989), 1978년에 비교적 늦게 도입했다가 폐지한 후 재정적자 문제로 올해부터 재도입한 스페인, 향후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핀란드 그리고 도입을 고려한 적이 있는 영국(1974~75) 등에서는 「부의 불균등분배 완화」가 순부유세 도입의 가장 큰 목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부유세 과세대상자산의 평가불균일 문제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아 1997년부터 부유세가 폐지된 독일, 2001년부터 저축과 투자에 대한 새로운 과세 방식을 도입한 소득세법 전면개편으로 부유세가 폐지된 네덜란드, 20세기 초부터 시행하다가 2007년경 모두 폐지한 핀란드, 룩셈부르크, 스웨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 국가들의 시행 경험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편이었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써 순부유세는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다.

그 외의 국가들에서는 순부유세 도입 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당초의 목적과 현재의 유지 이유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1900년대 초기 도입국들의 주요 목적은 근대적인 소득세제가 정착되기 이전의 「소득세에 대한 보완적 기능」에 있었다. 첫째, 20세기 초 부의 대부분을 구성하던 부동산은 가시적인 자산으로 과세당국의 세원포착이 용이한 반면, 이로부터 발생하는 부동산 소득은 세원포착이 어려운 세무행정상의 애로가 존재하여 이러한 재산소득과 관련된 세정의 보완 필요성이 발생했다. 둘째,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의 담세력 차이를 인정하여 동일한 종합소득하에서도 양자간 수평적 형평성 실현을 목표로 하는 소득세제의 보완을 위한 기능이 나 역할이 제기되었다. 부유세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과세최저한이 상당히 낮거나 비례세율이건 누진세율이건 세율 자체가 낮아서 명목적 재산세¹²⁾로서의 소득소멸형 구조를 갖는 나라들은 특히 수평적 형평

11) 네덜란드는 1892년, 덴마크는 1904년, 스웨덴은 1910년, 노르웨이는 1911년, 독일은 1922년에 부유세를 도입하여 7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룩셈부르크는 1944년, 아일랜드는 1975년, 스페인은 1978년, 프랑스는 1982년에 도입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갖고 있음.

12) 재산에 대한 조세는 명목적 재산세와 실질적 재산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III. 외국에서의 부유세 시행 경험 29

성을 고려한 보완적 기능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표 III-1〉 순부유세 도입 및 운영국가 현황

2003년			2011년 현재		
순부유세 유지(8개국)	순부유세 경험국	순부유세 미경험국	순부유세 유지(5개국)	순부유세 경험국	순부유세 미경험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1923~1993)	호주	프랑스	오스트리아 (1923~1993)	호주
아이슬란드	덴마크 (1903~1996)	벨기에	아이슬란드 ¹⁾	덴마크 (1903~1996)	벨기에
노르웨이	독일(1922~1996)	캐나다	노르웨이	독일(1922~1996)	캐나다
스위스	네덜란드 (1982~2000)	그리스	스위스	네덜란드 (1982~2000)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1975~1978)	이탈리아	스페인 ²⁾	아일랜드 (1975~1978)	이탈리아
핀란드	일본(1950~1953)	뉴질랜드		일본(1950~1953)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핀란드 (1920~2006)	포르투갈
스웨덴		터키		룩셈부르크 (1913~2006)	터키
		영국		스웨덴 (1910~2007)	영국
		미국			미국

주: 1) 아이슬란드는 2006년 1월 1일 폐지하였으나 2009년~2012년 기간 재도입.
 2) 스페인은 2008년 폐지하였으나 2012년 재도입.

〈표 III-2〉는 2011년 현재 시행 중인 5개 유럽 국가들의 부유세 제도를 부과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대상자산 등을 기준으로 정리한 표이다. 〈표 III-2〉상의 프랑스, 스페인, 노르웨이는 모두 누진세율구조를 갖는 국가들로 이 중 프랑스와 스페인은 비교적 근래에 부유세를 도입하였는데 「부의 불균등분배 완화」를 목적으로 수직적 형평성을 추구하면서 누진세율구조를 택한 국가들이다.

전자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조세가 과징되지만 납세자가 자기의 소득에서 조세를 부담하는 것이고, 후자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가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재산에서 부담되므로 원본이 잠식될 가능성이 있는 것임.

〈표 III-2〉 각국의 부유세 제도(2011)

구분 \ 국가	프랑스 (Impô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 - ISF)	노르웨이 (Formuesskatt til staten)	스위스 (Eidgenössische Wehrsteuer: Impôt pour ladéfense nationale, Vermögensteuer)
창설연도	1982년 도입, 1987년 폐지, 1989년 부활	1914년 도입	1998년부터 법인에 대한 연방 부유세 폐지
부과주체	- 중앙정부, 국세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 주정부+기초자치단체, 지방세
납세 의무자 및 과세단위	- 개인: ○, 법인: × - 거주자: 전 세계 순자산 - 비거주자: 국내소재 자산(금융투자자산 제외)	- 개인: ○, 법인: × (1992년 폐지) - 거주자: 전 세계 순 자산 - 비거주자: 국내소재 자산 - 부부 합산과세	- 개인: ○, 법인: ○ - 거주자: 해외부동산·국 내외의 외국소유 고정사 업장 제외 - 비거주자: 국내소재 기업· 고정사업장·부동산 소 유자(주별로 차이 있음) - 세대별 과세
대상자산 및 자산별 면세점	- 사업용 자산 ¹⁾ , 관리 이사 소유 25% 초 과 주식제외 - 부동산: 건물, 너대지 - 동산: 가재도구, 보석, 채권, 자동차, 선박 - 금융자산: 소액저축, 연금, 생명보험 - 기타: 거주주택, 영 업권	- 부동산: 해외 부동산 제외 - 동산: 가재도구 - 금융: 소액저축(30,000NOK), 생명보험(50,000NOK) - 기타: 거주주택 (시장가치의 20~30%)	- 부동산 - 동산: 보석, 자동차, 선박 - 금융: 소액저축, 연금, 생명보험 - 기타: 미술품 등, 거주 주택, 영업권
과세표준 ²⁾ 및 기초공제	- 세대당 80만유로를 초과하는 순자산액 - 거주주택 30% 공제 허용	- 기초공제 • 거주자 1인당 10만 NOK까지 공제	- 부채는 과세표준에서 공제 - 기초공제: 주정부별로 상이 예) 취리히의 경우 • 기혼자(자녀 있는 이혼 자·독신자 포함): 154,000CHF • 독신자: 77,000CHF - 법적인 실체: 지분 (=납입자본+공개된 적 립금+이윤으로 과세되어 온 숨겨진 적립금+부채 자본) • 기초자치단체의 순부유 세는 주정부의 순부유 세에 부가세 형태로 부과

III. 외국에서의 부유세 시행 경험 31

〈표 III-2〉의 계속

구분	국가 프랑스 (Impô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 - ISF)	노르웨이 (Formuesskatt til staten)	스위스 (Eidgenössische Wehrsteuer: Impôt pour ladéfense nationale, Vermögensteuer)
세율과 과세상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진세율구조 ~ 130만 유로 : 0% 130만 ~ 300만 유로: 0.25% 300만 유로 초과 : 0.5% - 과세상한: 소득세 와 순부유세 합계 액이 전년도 연간 총소득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 700,000NOK 초과분 0.7% 단일비례세율(0.4~0.7 % 내에서 결정) 부부합산과세 시 1,400,000NOK - 중앙정부: 750,000NOK 초과분 0.4% 부부합산과세 시 1,500,000NOK - 과세상한: 세부담이 납 세자 순소득의 80%를 초과하는 경우 중앙 순 부유세 및 필요하다면 지방 순부유세 경감 제도 → 2009년 1월 부터 폐지(단, 노령연 금, 장애인혜택 수혜 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대부분 누진세율구 조, 추정부별로 상이 예) 취리히의 경우(부부) 최초 154,000CHF: 0% 다음 231,000CHF: 0.05% 다음 385,000CHF: 0.10% 다음 616,000CHF: 0.15% 다음 925,000CHF: 0.20% 다음 924,000CHF: 0.25% 3,235,000CHF 초과: 0.30% - 법적인 실제: 대부분 단일 세율, 추정부별로 상이 예) 취리히의 경우 일반 0.15% 자회사 및 관리회사 0.03% - 실효세율은 기본세율에 계수를 곱하여 산출 예) 취리히의 계수: 1.19%(2010년)
평가방법 및 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과세연도 1월 1일 기준) - 평가: 소유자산의 공정시장가치(the fair market val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과세연도 말) • 개인소유동산: 보장가 치에 비례 • 부동산: 시장가격 • 주식: 상장기업: 시장가치 비거주기업 비상장주식: 기업의 순과세가치(net tax value) 또는 기대 시장가치(expected market val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 정상시장가격 평가 원칙 • 부동산: 시장가격 • 주식: 거래가격 • 연금: 보상액

〈표 III-2〉의 계속

국가 구분	프랑스 (Impô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 - ISF)	노르웨이 (Formuesskatt til staten)	스위스 (Eidgenössische Wehrsteuer: Impôt pour ladéfense nationale, Vermögensteuer)
비과세 감면 및 소득세 최고세율	- 비과세: 주식이나 지분 - 감면: 사업용자산, 골동품, 예술품, 수 집품, 관리이사 소유 25% 이상 초과 주식, 일부생명보험 - 41%	- 비과세: • 해외부동산 • 해외부동산 소유 비거 주법인의 지분을 95% 이상 소유한 거주자가 독신이거나 동거인 9인 이하인 경우 해외부유 세납부세액공제 -28%(중앙+지방)	- 11.5% (별도의 지방소득세 있음) - 비과세: 가정용품, 개인 의 일상적인 생활용품

주: 1) 프랑스에서 주식이나 지분은 사업용 자산으로 분류되어 비과세됨.

2) 과세표준=총자산가액-채무-인적기초공제

자료: IBFD, *European Tax Handbook*, 각 연도; IBFD, *Taxation of Individuals in Europe 2012*, 2012로부터 재구성.

〈표 III-2〉의 계속

국가 구분	아이슬란드 (Eignarskattur til ríkisins)	스페인 (Impuesto sobre el Patrimonio - IP)
창설연도	1970년 도입, 2006년 폐지, 2009년 부활	1978년 도입, 2008년 폐지, 2011년 부활
부과주체	- 중앙정부	- 주정부(17개 자치지역)
납세 의무자 및 과세단위	- 16세 이상의 개인(2009년 부활 시 개인에 대해서만 부활)	- 개인: ○, 법인: × - 거주자: 주별 공제한도액을 초과 하는 전 세계 순자산 - 비거주자: 국내소재 자산 - 개인단위로만 부과(부부 및 세대 합산부과: ×) - 납세의무자 • 순자산 700,000유로 초과자 • 총자산 2,000,000유로 초과자(순 자산이 700,000유로라 하더라도 신고)

III. 외국에서의 부유세 시행 경험 33

〈표 III-2〉의 계속

국가 구분	아이슬란드 (Eignarskattur til ríkisins)	스페인 (Impuesto sobre el Patrimonio - 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및 해외 위치 자산 - 개인자산의 총합 - 부부 및 공동생활자(cohabiting couples)는 총자산 합한 후 동등하게 나누어 개별 과세 - 16세 이하 개인의 자산은 부모 자산과 합하여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 동산: 가재도구, 보석, 자동차, 선박 - 금융: 소액저축, 연금, 생명보험 - 기타: 미술품 등, 거주주택, 특허권, 저작권, 영업권
과세표준 ³⁾ 및 기초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7,500만 ~ 15,000만ISK 1.5% 15,000만ISK 초과 2% - 부부(공동생활자) 10,000만 ~ 20,000만ISK 1.5% 20,000만ISK 초과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표준: 전체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 - 기초공제 • 표준공제액은 700,000유로
세율과 과세상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세점 초과분 순자산의 1.5% 단일세율로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진세율구조 0유로 ~ 700,000유로: 0% 700,000유로 ~ 867,129.45유로: 0.2% 867,129.45유로 ~ 1,034,252.88유로: 0.3% 1,034,252.88유로 ~ 1,368,499.75유로: 0.5% 1,368,499.75유로 ~ 2,036,999.51유로: 0.9% 2,036,999.51유로 ~ 3,373,999.01유로: 1.3% 3,373,999.01유로 ~ 6,047,998.03유로: 1.7% 6,047,998.03유로 ~ 11,365,996.06유로: 2.1% 11,365,996.06유로 초과: 2.5% - 과세상한: 소득세와 순부유세 합계액이 총과세소득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평가방법 및 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과세연도 말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 개인소유동산·부동산: 시장가격 • 주식: 거래가격 • 생명보험: 상환가액 • 농지·임야: Rural Tax 과표의 4% • 저작권 등: 시장가격
비과세 감면 및 소득세 최고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 거주지은행예금, 재무부 발행 각종 국공채, 일정한도의 주식 - 개인: 7,000만ISK 이하 면세 - 공동생활자: 1억ISK 이하 면세 - 3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 가재도구 및 개인비품, 개인연금, 원작자 소유의 지적 또는 산업재산권(사업활동에 쓰이지 않는 경우), 사업 또는 전문적 활동에 쓰이는 자산, 특정 주식 및 지분, 예술가 소장 예술품, 문화유산 - 45%

법인에 대한 부유세는 룩셈부르크를 제외하고는 거의 폐지된 상태인데, 법인에 대한 부유세 부과는 법인의 자본축적을 억제하여 생산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이유에서 부유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에서는 법인의 순소득을 주주에게 배분·귀속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여타 조세와 마찬가지로 부유세도 ① 세수 확보의 충분성, ② 세제의 단순성 및 세무행정의 편의성, ③ 형평성의 제고, ④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각국의 시행 경험을 판단해 볼 수 있다. 이 중 자원의 효율적 사용은 시행 국가들에서 실시 동기로 간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수 확보의 충분성, 행정편의성, 그리고 형평성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유럽 국가들의 시행 경험을 가늠해 보기로 한다.

순부유세의 부과대상 범위에 따라 총조세수입에서 순부유세 징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 나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세수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운용되는 조세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표 III-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총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부유세의 비중은 법인에 부과되는 룩셈부르크(5.43%)나, 노르웨이(1.35%)와 스위스(4.31%)를 제외하고는 대개 0.2~0.5% 범위의 극히 낮은 세수비중을 갖고 있다. 그러나 순부유세 제도의 유지 및 운영이 재산관련 타 세목의 세수증대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까지도 감안한다면 부유세만의 총조세수입 대비 비율만으로 순부유세 제도의 세수기능을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11년 현재 순부유세 시행국 중 절대금액 측면에서 순부유세 세수가 가장 큰 나라는 스위스로 72.4억스위스프랑의 세수가 징수되었다. 독일의 경우 순부유세 세수비중은 60년대의 3%대에서 70년대의 2%대, 그리고 80~90년대 1%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1997년 폐지되기 직전연도인 1996년에 78억유로달러였다가 1997년 42.5억유로달러로 감소한다. 프랑스의 순부유세 세수는 제도 변경과 자산시장 가격의 급변 때마다 변동이 심한 편이었는데, 2010년 44.4억유로달러를 정점으로 2011년 순부유세관련 세법개정으로 42.8억유로달러로 감소하는데, 폐지 전의 독일 순부유세 절대세액과 비교하면 양국의 순부유세 제도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1996년과 2011년이라는 15년간의 시간적 차이를 생각할 때 매우 큰 세수격차를 보이고 있다.

〈표 III-3〉 OECD 국가별 순부유세(4200) 세수(4200 Recurrent taxes on net wealth)

(단위: 백만유로, 백만자국통화²⁾, %)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오스트리아 ¹⁾	세액	103	174	270	401	417	642	58	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비중 ³⁾	1.66	1.79	1.47	1.35	0.99	1.19	0.0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덴마크 ⁴⁾	세액	306	267	414	963	1,408	928	92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비중	1.45	0.56	0.47	0.57	0.47	0.24	0.1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핀란드 ⁶⁾	세액	24	13	33	24	47	26	35	179	128	113	99	117	129	0.00	0.00	0.00	0.00	0.00	0.00
	비중	1.77	0.52	0.50	0.21	0.21	0.07	0.08	0.29	0.21	0.18	0.15	0.18	0.19	0.00	0.00	0.00	0.00	0.00	0.00
프랑스 ³⁾	세액	0.00	0.00	0.00	0.00	2,021	2,615	1,299	2,425	2,645	2,458	2,352	3,046	3,643	4,367	4,132	3,555	4,436	4,276	4,276
	비중	0.00	0.00	0.00	0.00	0.63	0.60	0.25	0.38	0.40	0.37	0.34	0.36	0.40	0.46	0.53	0.49	0.44	0.53	0.48
독일 ⁴⁾	세액	2,530	3,103	3,823	4,362	3,923	6,213	6,926	433	291	239	230	80	97	27	5	-7	7	2	586
	비중	3.41	2.73	2.02	1.52	1.10	1.37	1.01	0.06	0.04	0.03	0.03	0.01	0.01	0.00	0.00	0.00	0.00	0.00	0.06
아이슬란드	세액	0.00	2	5	69	588	2,402	3,191	5,173	5,886	5,918	3,400	2,887	50	-8	-18	12	3,849	5,260	5,260
	비중	0.00	1.20	0.75	1.46	1.71	2.09	2.25	2.03	2.15	2.05	0.94	0.96	0.69	0.01	0.00	0.00	0.00	0.71	0.90
아일랜드 ⁵⁾	세액	0.00	0.00	5	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비중	0.00	0.00	0.31	0.0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룩셈부르크	세액	7	14	21	44	83	172	268	633	616	542	517	557	698	801	878	725	716	831	864
	비중	2.67	3.23	2.31	2.82	3.16	4.59	4.78	7.35	6.86	5.75	5.43	6.13	6.58	6.57	5.18	5.08	5.56	5.56	5.43
네덜란드	세액	86	173	231	517	427	554	681	824	91	49	38	44	32	-6	30	20	25	23	..
	비중	0.79	0.84	0.53	0.74	0.50	0.53	0.54	0.50	0.05	0.03	0.02	0.02	0.02	0.00	0.01	0.01	0.01	0.01	..

〈표 III-3〉의 계속

(단위: 백만유로, 백만자국통화²⁾, %)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노르웨이	세액	341	431	984	1,450	2,623	5,118	7,703	7,998	8,383	8,720	9,947	10,700	11,574	13,244	14,711	13,357	14,191	15,879	
	비중	2.03	1.37	1.48	1.09	1.11	1.70	1.49	1.22	1.21	1.27	1.29	1.32	1.26	1.34	1.36	1.34	1.31	1.35	
스페인	세액	0.00	0.00	0.00	107	156	637	625	1,181	1,166	1,153	1,185	1,212	1,379	1,647	2,034	2,375	90	108	55
	비중	0.00	0.00	0.00	0.49	0.32	0.61	0.44	0.55	0.51	0.46	0.45	0.41	0.42	0.45	0.52	0.66	0.03	0.03	0.02
스웨덴	세액	366	492	647	717	1,871	3,200	3,583	8,223	6,483	3,934	4,897	5,333	4,998	6,142	0.00	0.00	0.00	0.00	0.00
	비중	0.92	0.71	0.49	0.28	0.43	0.42	0.42	0.71	0.56	0.34	0.40	0.42	0.37	0.43	0.00	0.00	0.00	0.00	0.00
스위스	세액	692	1,158	1,886	2,201	2,657	3,640	4,626	5,232	5,743	5,891	6,057	6,021	6,415	6,943	6,997	6,946	7,053	7,238	
	비중	6.16	6.01	5.11	4.75	4.21	4.31	4.49	4.13	4.54	4.56	4.62	4.68	4.47	4.52	4.64	4.38	4.36	4.38	4.31

주: 1) 총조세수입에 대한 순부유세의 비율임.

2) 각국의 통화단위로 덴마크는 크로너(kroner)(DKK), 스웨덴은 크로나(kronor)(SEK), 노르웨이 크로네(kroner)(NOK), 스위스 프랑(francs)(CHF), 아이슬란드는 크로나(krona)(ISK),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은 유로(Euros).

3) 프랑스는 1982년에 도입하여 1987년 일시 폐지하였다가 1988년 재차 도입하여 시행 중임.

4) 오스트리아는 1994년 1월 1일부터 폐지하였고, 독일과 덴마크는 1997년부터 폐지함.

5) 아일랜드는 3년간(1975~78년)만 시행하였으므로 징수액은 과년도분이고 1975년 비율은 0.3%임.

6) 핀란드는 2006년 1월부터 폐지.

자료: OECD, OECD.StatExtracts(<http://stats.oecd.org/index.aspx>).

III. 외국에서의 부유세 시행 경험 37

또한 부유세 그 자체만 놓고 볼 때는 세무행정의 편의성 측면에서 그다지 매력적인 조세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부유세는 신고납부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과소신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과세당국이 적절한 세무조사비용을 설정해야 한다. 모든 나라들이 부유세 세무행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자산의 다양성과 이에 따른 과세당국에서의 포착률(disclosure rate) 상이성, 그리고 공개거래시장의 존재 정도에 따른 과표율(assessment ratio)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보석, 서화·골동품, 가재도구류는 공개거래시장에서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를 파악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보유 사실 여부도 납세자의 신고에 의존해야 하며, 비상장·장외주식 등은 추계적 과세평가방법에 의해서도 대부분 저평가되고 있다. 재산평가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특기할 만한 사건은 독일 헌법재판소의 1995년 6월 22일 판결이다. 독일 현재는, 토지자산의 경우 1964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재평가하지 않고 단순히 1964년 평가액에 40%를 추가(mark-up)하여 과세표준으로 사용케하는 반면, 증권 등 금융자산은 현재가치로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순부유세의 세부담 균등화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입법부가 1996년 말까지 새로운 과세표준 결정방식을 마련하지 않는 한 현행 세법규정은 자동적으로 실흐된다고 결정하였고, 연방정부는 1997년 초 순부유세를 신규 부과하지 않는 대신 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의 인상을 통해 세수부족분을 보충하였다.

경상적 소득이 아닌 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상적으로 과세되는 부유세의 도입을 통해 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과세함으로써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며, 자산소득이 노동소득보다 중과된다는 이론적 측면의 형평성 제고는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정액의 세입을 확보하기 위한 부유세 세율은 소득세 세율보다 훨씬 낮기 마련이고, 이미 부유세를 부과해 온 국가들의 부유세 부담이 그다지 높은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제고라는 분배효과는 부유세의 구체적인 시행형태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다만 90년 이상의 시행 경험을 갖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 유로화 가입에 대한 국민투표 부결 이후 2007년 폐지되는데, 그 주된 이유는 최상위의 부

유층에 대한 각종 면세조치가 부유세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가중시켰고, 1984년부터 1998년까지의 스웨덴 가구별 부의 동태적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 부의 불공평성이 심화되었다는 결론¹³⁾이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부유세의 경제적 효과는 ① 저축 및 투자, ② 소비유형 및 자산수요 왜곡, ③ 분배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저축 그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부유세는 저축의 결과로 축적된 자본에 대한 과세이므로 소비지출을 늘려 저축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비수익재산에까지 과세되므로 저축감소 효과의 크기는 소득세보다 클 수 있고 장기적으로 자본형성에 負(-)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으로 내구소비재(예, 자동차 및 보트)도 포함되므로 소비지출 중에서도 내구재와 비내구재 간의 지출 구성비율을 변화시킨다. 자산으로부터의 수익은 일반적으로 i) 보유기간 중의 자산소득 흐름(capital income flow) 과 ii) 매각 시의 자산가치 상승 또는 자본이득(capital appreciation)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납세자들은 소득세와 부유세의 세부담 합계를 줄이기 위해 양자 중 자본이득 구성부분이 많은 위험자산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부유세는 대체로 전가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나 자본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소비자나 요소공급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갖는다.

결국 부유세 제도는 부에 대한 수익활동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자산소득으로 포착되지 않는 부유층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소득을 통해서만 세부담을 지울 수 있는 소득과세적 접근방법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데서 출발하였다. 가시적인 부 자체에 대해 담세력을 인정하여 독립적인 자산세를 운영함으로써 부의 불균등 완화 또는 심화 저지를 지향하고 있다. 부유세 제도를 부라는 원본 그 자체(stock)에 대한 직접적인 교정적 조세로서의 기능보다는 누진적 개인소득세의 최고한계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 계층의 과세소득 중 최고세율구간소득(top slice)이 대부분의 근로소득보다 영속성이 강한 자산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누진도를 강화하여 소득재

13) Klevmarken(2001) 참조.

III. 외국에서의 부유세 시행 경험 39

분배의 실효성을 높이기보다, 조세회피를 위한 절세전략 기획활동(tax planning)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현실을 인정하여 자본소득에 대한 소득세 보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명목적인 법정세율을 높게 유지하는 것보다는 세율의 인하와 함께 부유세를 도입하는 조세 정책이 유럽을 중심으로 시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III-4〉 국가별 부유세 납세의무자 범위

(단위: 자국통화단위, 유로)

	노르웨이	스위스 ²⁾	스페인	아이슬란드	프랑스
GDP(백만)	2,523,226	550,571	1,051,342	1,537,106	1,932,802
인구(명)	4,889,252	7,786,200	46,072,830	318,006	64,847,900
1인당 GDP	516,076	70,711	22,819	4,833,575	29,805
기초공제					
면세점 ¹⁾	700,000	71,000		70,000,000	800,000
개인			700,000		
자녀					
예금 등					
자가 주택					
개인자산	100,000				
과세방식	합산과세	합산과세	분리과세	합산과세	합산과세
4인 가족 가구기준					
가구소득 ³⁾	2,064,304	282,844	91,277	19,334,301	119,221
공제액 ⁴⁾	1,500,000	142,000	700,000	100,000,000	800,000
기초공제/가구소득	0.73	0.50	7.67	5.17	6.71

주: 1) 면세점은 개인(single) 기준임.

2) 스위스는 지방정부별로 다양함. 여기서는 취리히(Zurich)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임.

3) 1인당 GDP × 4인.

4) 합산 또는 분리과세 적용기준.

1. 각 국가별 통화단위는 노르웨이: NOK, 스위스: CHF, 스페인: EUR, 아이슬란드: ISK, 프랑스: EUR임.

2. GDP 및 인구는 2010년 기준.

자료: IBFD, European Tax Handbook, 각 연도; OECD, Stat Extracts(<http://stats.oecd.org/index.aspx>).

2. 최근 폐지한 스웨덴의 순부유세 경험¹⁴⁾

가. 도입 배경, 역할 및 기능

스웨덴의 순부유세는 1910년 도입되었다가 2007년 폐지되어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행 경험을 갖고 있었다. 스웨덴의 순부유세는 20세기 초기 도입국들의 공통적인 도입 배경이었던 ‘자본소득(capital income)’ 파악에 따른 일종의 추계과세적 성격에서 도입되었으며, 처음에는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순부의 1/60을 자본소득으로 보고 타 소득들과 합산하여 과세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근로소득과 대비하여 불로소득적 성격과 지속적 성격이 있으므로 납부능력이 더 크다는 근거로 합리화되었다. 따라서 근로소득보다 증과되었는데, 1947년에 순부유세를 소득세와 세법상 분리하였지만 자본소득을 타 소득보다 증과한다는 취지에는 변함이 없었다.

스웨덴의 순부유세를 규정했던 법은 1997년의 순부유세법으로 1947년 법을 개정한 것이다. ‘부의 재분배’라는 조세정책적 근거 이외에도 순부유세는 자본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라고 판단되지만 그 기본 개념은 과거와 달리 ‘누진도(progressive dimension)’를 추가로 강화하는 것이라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다른 순부유세 부과국들과 달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Nordic) 국가들에서는 1990년대 초 도입된 ‘이원적 소득세(dual income taxation)’와 함께 순부유세의 기능과 역할을 판단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원적 소득세의 핵심은, 자본소득과 근로소득(earned income)을 구분하여 전자는 다소 낮은 정률세율로, 후자는 누진세율로 과세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순부유세를 시행하고 있던 북구권 국가들에서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하면서 자본소득에 대해 왜 낮은 정률세율로 과세하게 되는지를 합리화하는 근거로써 즉, 순부유세로 추가과세하고 있으니 자본소득을 정률세율로 낮게 과세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적용

14) Christer Silfverberg(2009)를 요약 정리함.

했다. 또한 실현주의 과세원칙 때문에 소득으로 과세되지 못하고 있던 자본이득(capital gains)에 대해서도 순부유세는 소득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1997년 개정법률안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추가적인 부가세로서의 순부유세 개념은 순부유세액과 자본소득 간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아서 순부유세가 자본소득과세 역할을 충분히 유사하게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다양한 투자자산들로부터의 수익률은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데 순부유세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웨덴에서 순부유세를 채택하게 된 또 다른 근거는 타 세목의 조세행정, 예를 들어 소득세 행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획득은 반드시 순부유세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었고, 보다 간단한 개인소득세 세무신고 방식으로도 실현 가능했다는 반박도 있다. 게다가 현재의 순부유세 신고서 또한 순부가 150만 SEK(Swedish Krone)인 부부의 경우 200만SEK를 초과하는 납세자들만 제출하도록 납세자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서 정보제공 차원의 순부유세 존재 이유가 비판받기도 했다.

나. 스웨덴 순부유세의 구조

스웨덴의 순부유세 납세단위는 개인이며, 법인 및 개인회사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사망자의 유산, 협회나 재단 같은 단체에 대해서도 부과된다. 매해 연도 말 납세자가 소유한 순부를 기초로 150만SEK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라는 정률세율로 부과되는데, 국제적 기준에서 보면 상당히 높은 세율이다. 한 세대를 구성하는 동거가구의 경우 세대주, 배우자, 18세 미만 직계존속이 소유한 자산가액을 합산한 후 순부를 계산하는데 공제는 한 번만 허용되고 배우자공제는 200만SEK이었다.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가재도구, 예술품, 개인보험증서 등을 제외한 '개인의 사적인 부'를 구성하는 자산들이며, 납세자의 사업용 고정 및 운영자산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환경을 저

해하지 않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사업용 자산을 포함하지 않은 결과, 개인 사업, 농업, 그리고 가업상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도 비과세 대상이 되었다. 게다가 정기적인 공개시장가격 정보가 비공식적으로 발표되는 O-list 상의 비상장주식들도 비과세되었다. 상장주식도 직간접적으로 25%의 지분을 갖는 주요 대주주 소유분일 경우 비과세되었는데,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가업기업이 스톡홀름증권거래소에 상장하려 할 의욕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스웨덴 내 주요대기업 대주주들에 대한 순부유세 미부과는 가장 큰 형평성 논란의 대상이었다.

과세대상 자산들에 대한 과세평가는 시장가격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특정 자산에 대한 특례가 존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들은 과세기준일 종가의 80% 수준에서, 그리고 부동산은 시장가격의 75% 수준에서 과세표준금액으로 삼는데, 이렇게 일관성 없는 평가준칙에 대해, 동일한 순부 가액을 갖은 납세자들이 상이한 자산형태로 투자하여 자산을 구성한 행태에 대하여 차등과세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었고 특히, 주식시장 투자자산에 대한 평가준칙이 크게 문제시되었다.

대주주 소유지분이 아닌 한 스톡홀름증권거래소 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의 80% 수준으로 과세평가되는 반면 비상장주식(O-list)은 비과세하는 차등과세 처리방식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임의적이고 불공평하게 받아들여졌다. 증권거래소에의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투자자에 대한 과세대우 문제 때문에 비상장 상태를 유지하려는 기업들도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몇몇 상장회사들에는 이것이 상장폐지를 통해 비상장회사로 전환하려는 유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형태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순부유세법에 특별규정이 도입되었는데, 1997년 5월 22일 법개정 당시 이미 증권거래소 상장회사였으면 그 이후 상장폐지하여 O-list에 포함되더라도 순부유세 과세대상 주식이 된다는 규정이다. 그 결과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법개정 이전에 상장회사 주식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과세대우가 달라졌다.

더 큰 차등과세의 문제는 스웨덴 내 최고 부자들이 대주주로서 증권거래소 상장주식을 소유한 지분들에 대해서 순부유세가 비과세되는 데에서

III. 외국에서의 부유세 시행 경험 43

발생하며, 이는 불공평성의 극치라고 비판받았다.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도 자가거주 목적이면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타인을 위한 임대주택이면 사업용자산이므로 비과세되는 순부유세 과세대상 문제도 큰 비판을 받았다.

스웨덴의 순부유세가 핵심(투자)자산 또는 자본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개인소득에 대한 추가과세라는 기본원칙에 비추어 본다면 순부유세는 경상소득으로 납부되어야 했다. 그 결과 조세감면법은 '순부유세와 소득세 합계액이 연간 근로소득 및 자본소득의 60%를 초과하면 조세감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부유세의 구조는 투자자에게 현재의 자본소득을 발생시키기보다는 자본이득 형태로 미래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방식의 자본투자에 대해 세금우대를 한 셈이 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순부유세를 폐지한 핀란드와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노르웨이의 순부유세도 스웨덴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비록 모든 과세대상 자산들에 대한 과세평가를 시장가격에 기초하도록 원칙을 세웠지만 특별예외법 규정들이 존재하여 일관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부동산은 통상 시가보다 과소평가되며,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들에 대해서도 시장가격의 일정 비율(예, 핀란드는 70%, 노르웨이는 75%) 수준으로 과소평가된다. 핀란드의 경우 비상장주식은 해당 기업의 자본금 및 영업이익을 기초로 주당가액이 과세평가되는데 상장주식에 대한 70% 과표비율보다 더 낮은 과세평가율을 보이게 된다. 만일 개인투자자가 가족구성원들과 함께 어떤 특정 기업의 10%를 소유하는 대주주라면 불과 30%만의 과세평가율을 적용하고 있고, 노르웨이는 비상장주식을 회사의 장부가액의 30% 수준에서 순부유세 과세평가하고 있다.

다. 스웨덴 순부유세의 개편논의들

스웨덴에서는 담세능력론(ability-to-pay-tax)을 갖고 순부유세를 합리화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견해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첫째, 순부가 됐건 아니면 소비능력 또는 상속증여 같은 담세능력척도들이 되었건, 후자들은 이미 과세되고 있으므로 순부에 대한 부유세 과세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이다.

둘째, 담세능력론은 법안을 입안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일종의 지침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원칙에 기초해서 적정 세부담수준을 도출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순부유세의 세부담 수준은 조세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소득에 대한 일종의 획일적 보완과세기능론에 기초하여 살펴봐도 세액과 자본소득 간에는 어떤 합리적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셋째, 순부유세의 부과로 인해 해외로의 자본 유출 위험이 증가했다는 비판은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 유럽 내 주변국가들이 순부유세 폐지 추세를 밟아 왔으므로 더욱 존치하기 어려워지는 쪽으로 힘이 실리게 된다. 세제의 간편·단순화논리 차원에서조차 비판받는 상황이었다. 마지막으로 부과대상 자산들에 대한 시가 대비 과세평가액의 균일성(uniformity) 문제도 독일에서처럼 심각하게 제기되었는데, 이는 개인 재산과 사업용 자산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고 후자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세부담의 공평성을 저해하게 되어 부의 재분배라는 원래 의도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문제 때문이었다.

2002년 순부유세 검토위원회가 구성되어 과세대상 포함자산의 공평성과 과세평가의 균일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2003년 말 최종보고서가 완성된 후 2007년 폐지되었다. 최종검토보고서에서는 1.5% 수준의 순부유세 세율은 국제적 기준에서 보아 높다는 인식하에 과세베이스를 확대하고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안이 제시되었다. 스웨덴의 순부유세는 80억SEK인데, 이는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정도라서 세수효과나 세입예산상에 대한 고려는 개편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공평한 세부담과 자산에 대한 차등과세에 따른 왜곡 제거가 가장 큰 개편 원칙으로 제시되었다.

3. 프랑스 순부유세인 ‘사회통합적 자산세’의 현황

가. 개요

프랑스는 유일하게 1982년 사회당의 집권으로 처음으로 부유세(Impôt

sur les Grandes Fortunes: IGF)를 도입한 이래 사회당과 보수연합 간의 정권교체에 따라 Chirac 총리가 들어서면서 1987년에 폐지되었다가, 1989년 Mitterrand 대통령 후기 시절 '사회통합적 자산세(Impô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 ISF)'(이하 '사회통합세'라 칭함)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부활된 역사를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최고액자산가들이 높은 세부담을 지는 것이 형평성을 높이고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하다는 정치철학을 대변하는 조세이다¹¹⁾.

사회통합세(ISF)는 프랑스혁명의 기본 이념인 '평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조세이지만, 불공평성 때문에 비난받는 세금이기도 하다. ISF가 도입된 시기는 '최저생계비보조금(subsidized minimum mainstream income: RMI)이 부각되던 바로 그 시기였으며, ISF의 세수총액은 최저생계비보조금 프로그램의 소요예산과 거의 같아서, 마치 프랑스 내 최고 부자들이 제일 열악한 입장에 있는 계층들을 구원하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부유세가 있었던 유럽 내 선진 경제국들의 경우에도 소득 및 부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부자들의 해외도피를 야기했다는 점들이 프랑스 내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한 상원의원의 추정치에 의하면 2006년 한해에만 ISF 때문에 843명의 부자들이 프랑스를 떠났으며 28억유로달러의 국부손실이 있었다고 주장되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주택가격 상승으로 당시 순부가 72만유로달러를 넘게 된 납세의무자가 2004년에는 33만 5천여명에 달해 8년 사이 87%나 급증하자 집권당 및 정부측에서도 결코 부자가 아닌 계층에도 ISF가 부과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검토 작업이 진행되었다. 프랑스 주변국가인 벨기에와 스위스로 부자들이 끊임없이 도피한다는 우려도 많았으나, 세부담 완화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 납세자범위와 신고의무

세법상 프랑스 내 거주 개인 중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산의 공

11) 아일랜드도 1975년부터 부유세를 채택하였으나 정부가 교체된 후인 1987년에 폐지하여 정권의 조세철학에 따라 세목의 채택·폐지를 겪은 국가임.

정시장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한 순부가 130만유로달러(한화 18억 7,200만원)를 초과할 경우 사회통합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2011년 추가경정예산법안의 통과로 2011년부터는 면세점이 이전의 80만유로달러(한화 11억 5,200만원)에서 인상되었다.

자진신고납부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신고서 작성시 배우자, 동거파트너 등 공동신고자와 미성년 부양자녀들이 법적으로 소유한 자산들을 합산범위로 하므로 프랑스 사회통합세의 과세단위는 가구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8월 6일부터는 과거 최소 5년간 세법상 비거주자였다가 거주자가 되어 거주상태를 지속하는 개인들에 한해서만 향후 5년간만 프랑스 국내 자산들만 합산하는 혜택이 부여될 뿐, 해외에 소유한 자산들도 포함하여 총소유자산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프랑스 세법상 거주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5일까지, 프랑스 내 재산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EU 거주자는 매년 7월 15일까지, 그 외의 납세의무자는 8월 15일까지 ISF를 신고해야 한다.

〈표 Ⅲ-5〉 프랑스 ISF 과표구간별 세율

(단위: %, 유로달러)

순자산가액	초과누진세율(2011년)	차등정률세율(2012년)
80만 ~ 130만	0.55	0
130만 ~ 257만	0.75	0.25
257만 ~ 300만	1.00	
300만 ~ 404만	1.30	0.50
404만 ~ 771만		
771만 ~ 1,679만		
1,679만 초과	1.80	

[부도 1]의 2012년 ISF 신고서(Form No.2725) 양식을 살펴보면 공동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소, 가족구성내역(배우자 등 동거관계, 미성년피부

III. 외국에서의 부유세 시행 경험 47

양가족), 직업 및 직위, 소유권서약, 과세표준결정(순자산가액=총자산-부채), 세액계산, 세액공제, 세부담상한적요 등의 순서로 납세의무자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인적공제의 경우 가구원 1인당 300유로달러씩 공제되는데 부부가 이혼하여 공동양육권을 갖고 있는 경우 미성년자녀 1인당 150유로달러가 공제된다¹⁶⁾.

다. 과세대상 자산

개인이 소유하는 자산이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소유지분 정도에 따른 사업용 자산, 100년 이상의 골동품, 서화 및 미술품, 조립사업용 자산, 무기명채권, 연금 및 퇴직관련 금융상품, 사고 및 질병관련 손해보상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자산주택 소유자 중 직접 거주하는 주거주택(principal residence)의 자산가액 중 30%를 공제한 가액이 합산되므로 거주주택에 대한 배려가 도입되었다. 조세조약에 의해 프랑스인이 소유한 덴마크, 룩셈부르크, 이집트, 핀란드, 네덜란드, 체코 등 외국 소재 부동산도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구(home furniture) 자산은 총자산액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었다.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3종의 별첨목록 Annexe S1, S2, S3에는 각각 부동산(Immeubles Bâties et Non Bâties), 증권 및 동산(Droits Sociaux etc.), 부채 등 기타공제(Passif et Autres Déductions) 유형별로 평가액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부도 2]~ [부도 4] 참조).

라. 세수규모

ISF의 세수는 2007년 44.2억유로달러로 전년 대비 19%가 증가했는데 프랑스 총조세수입의 1.5%를 차지한다. ISF 납세가구의 절반 정도는 매년 납세액이 2천유로달러(한화 288만원) 미만이다.

16) 부록의 [부도1]부터 [부도3]까지는 프랑스 재정부 내 국세청정보 사이트(www.impots.gouv.fr)에서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아 출력한 것임.

다. 순부유세의 세부담 상한

프랑스의 순부유세인 사회통합적 자산세제에는 개인이 소유한 한 시점에서 순부의 가액에 대해 매년 과세하는 특성상 세금을 납부할 현금 확보 능력(liquidity problem)이 납세자의 소득으로부터 있는가를 배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 2007년 사르코지 대통령의 세법 개정으로, 특정 연도의 사회통합적 자산세 납세의무자는 해당세액에 개인소득세, 사회보장세, 주거주주택에 대한 지방재산세 납부세액을 합친 총세액이 그 전년도 연간 소득의 50%를 넘을 수 없다는 세부담 상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때 연간 소득은 정률비례세율로 분리과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도 포함하여 계산된다. 일단 이들 개별 세액을 세정당국에 납부한 후에 환급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2010년 귀속분 소득에 기초한 2011년 사회통합적 자산세까지는 환급신청을 통해 세부담 상한제도를 운영했으나 2012년에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부담 상한을 감안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세부담 상한장치는 2013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프랑스 순부유세인 사회통합적 자산세의 2012년 해설자료는 「Impô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 2012」를 <부록 1>에 영문으로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바. ISF로부터의 정책적 시사점

프랑스에서는 2007년 52만 8천여 명의 ISF 납세자가 43.7억유로달러를 납부하여 5년 사이에 납세의무자 수가 85%나 급증하고 전년 대비 세수가 20% 가까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 원인으로, 첫째 증권 등 금융자산과 부동산의 시장가격 동반 상승으로 ISF 부과기준금액 초과자가 급격히 증가되었음이 지적된다. 둘째, 주된 납세자들의 고령화에 따라 부채가 감소하여 순부가 늘어난 요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에 따른 자산가액 증가 등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프랑스 순부유세의 연도별 납세의무자 수 및 납부세액의 급격한 변화는 2009년에서 2010년에도 또 한번 발생하는데 2010년의 경우 전년 대비 세수가 25% 가까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는 주택 등 자

III. 외국에서의 부유세 시행 경험 49

산시장 가격이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회복됨에 따라 납세대상에 대한 예측이 매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였다.

대체로 프랑스 ISF 과세대상자들은 3가지 부류의 납세자 유형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 번째 납세자 유형은 매년 2천유로달러 미만의 ISF를 납부하는 가구들로서 이들은 납세자 가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83만유로달러(한화 12억원)의 순부를 소유한 데 대해 매년 평균 440유로달러(한화 63만 여원)를 내는 계층이다. 두 번째 납세자 그룹은 190만유로달러(한화 27억 3,600만원)의 순부를 보유하며 연간 8,100유로달러(한화 1,166만 4천원) 정도의 ISF 납부세액을 내는 계층이다. 셋째 그룹은 최고부자 계층으로 ISF 납세자의 1.2%에 불과한 극소수로 1천만유로달러(한화 144억원) 상당의 순부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프랑스 ISF에는 Bouclier Fiscal(Tax Shield)라고 하여 연도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나 개인소득세, 사회통합적 자산세, 지방재산세 합계액이 전년도 연간소득의 일정 비율(예: 2006년 경우 50%)을 초과할 수 없다는 장치를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부담 상한을 납부세액과 연간소득에 연계시켜 설정함으로써 '단순히 자산을 소유했다는 사실에만 근거하여 자산보유세를 부과할 경우' 납부세액 마련에 애로를 겪는 계층들에 대한 배려를 함으로써 조세순응도를 높였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어떤 특정한 조세에 대한 국민정서 및 납세자들의 조세순응도는 해당 조세의 명칭이 매우 중요하고, 또 해당 조세수입이 사용되는 용도 및 목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도 조세전문가들은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프랑스의 순부유세는 처음에는 최고부자세(Impôt sur les Grandes Fortunes: IGF)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사회통합적 자산세(Impô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 ISF)'로 명칭 변경된 후 세수의 사용이 최저생계비보조금과 연계되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는 아무리 평등이념이 프랑스 사회에 중요한 가치임을 프랑스 혁명 이후 전 국민들이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계층간 갈등이 존재할 수 있는 사회의 통합을 위해 열악한 경제적 위치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해 지출하는 프로그램과 연계될 경우 해당 조세에 대한 반감이 적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후 반복된 계층간 갈등에서도 관찰된 문제인데, '부동산 부자'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는 식의 투기꾼 비난보다는 주택자산 소유를 통해 늘어난 경제적 여유에 대해 최저생활계층에 지원되는 지출프로그램 재원 마련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다.

IV. 부유세로서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평가

1. 종합부동산세의 성격

‘종합부동산세는 무엇인가?’ 라는 조세의 본질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부동산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제한적인 조부유세(gross wealth tax)’라고 표현할 수 있다¹⁷⁾.

먼저 부동산이라는 자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부채, 예를 들어 주택구입자금대출(mortgage)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를 공제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순부유세(net wealth tax)가 아니라 조부유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중앙정부가 국세로 부과하면서 대상유형별로 나누어 인별합산하고 납세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등과세(예: 1세대 1주택자 등)하므로 인세(personal tax)적 성격을 갖는다. 또 과세대상 자산의 가액에 기초하여 합산하므로 종가세(ad valorem)라는 특징도 갖는다.

종부세를 규정한 법률이나 입법논의들에서 거론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그리고 부동산 가격안정 도모’와 같은 명시적 도입 목적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의 성과를 판단하는 문제는 후술하기로 하고, 부유세의 한 형태로서 종합부동산세의 의미를 판단할 때 ‘부동산으로부터의 자본이득 및 자본소득에 대한 소득세 보완적 추가과세’ 성격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자. 혹자는 소유부동산 가액의 상승은 미실현 이득이지만 세 부담 능력에 대한 일종의 대리변수(proxy)로 보아 추정과세(presumptive taxation)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2001년 하반기 이후 2007년 초까지 부동

17) 이러한 성격 규명은 종합토지세에 대한 Ro, Younghoon(2001)에서 출발하며, 토지뿐만 아니라 주택도 과세대상에 포함된 2004년 이후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검토한 수많은 글들에서 발견됨.

산 가격이 많이 상승한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보유세 부담을 종부세 도입으로 증가시켜 양도세를 보완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종부세 부담 후 처분시에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없게 된다¹⁸⁾.

2. 종합부동산세의 시행 경험

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형평성 논의 및 세부담 검토

한 가구의 (순)부에 대한 보유세인 (순)부유세에 대한 논의를 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 시행 경험을 먼저 살펴보는 이유는, 어느 나라나 주택소유가구비율이나 주택자산이 그 나라 민간가계의 부(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금액구성비율 모두 주요(dominant) 자산구성 항목으로서 갖는 중요성 때문이다¹⁹⁾. 우리나라의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와 주택만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상업용(영업용)부동산도 건축물을 제외한 부속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과세하므로 이러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토지분과 건물분 과세평가를 어떻게 구분하여 정확하게 하는가에 따라 순수 토지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의 3개 유형별로 별도의 과세표준, 공제규정, 세율체계를

18) 가격 상승이 많았던 부동산들을 주 대상으로 보유세 부담을 증가하는 방식으로 미실현이득에 대해 과세하고자 했던 과거의 시도는 1990년대 초 토지 초과이득세에서 찾을 수 있는데 토초세는 기본적으로는 미실현자본이득세를 보유단계에서 부과하는 것이었음.

19) 프랑스 국립경제통계연구원(INSEE: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은 매년 가계자산분포 변화추이를 여러 지표를 통해 발표하고 있으며, 부의 집중도 변화요인들을 분석하고 있음. 스페인의 부유세 부과 자료를 통해 살펴본 최고소득층의 부 집중도를 분석한 Alvaredo and Saez(2009) 및 Duran and Esteller(2010)의 연구에서도 스페인 가구들의 소유자산 중 평균 65%가 주택자산이었고, 최고소득계층 1%가 소유한 부의 비중은 15~2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함.

IV. 부유세로서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평가 53

갖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3개 부동산 유형에 대해 차등과세를 하고 있는 셈이다. 세수는 2007년 2조 4,142억원으로 최고치에 달한 이후 지속적으로 급격하게 하락하여 2010년의 경우 1조 862억원으로 내국세 대비 세수비중이 1% 미만인 조세이다. 종합합산토지분 중부세 납세자 5만 5천여명이 4,713억원을, 별도합산토지분 중부세 납세자 5,816명이 3,735억원을 납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납세자 대부분은 주택분 중부세 납세자로 25만 여명이 2,414억원을 납부하고 있다.

〈표 IV-1〉은 2005년 최초연도 과세분부터 2010년 과세분까지의 주택분 중부세의 신고인원과 결정세액을 납세의무자의 주택소유갯수별로 세분화한 과세현황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했던 2006년에서 2008년 기간 중 마지막 해인 2008년은 현재판결로 위헌사항들을 반영하여 크게 부담을 완화했다. 따라서 2006년 주택분 중부세는 23.5만 여명에게 5,222억원을 2007년에는 38만 여명에게 1조 2,611억원을 과세하여 대상자 수 및 결정세액이 급증하게 된다. 주택소유갯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1주택 및 2주택소유 가구가 2006년 납세자의 60%이며 결정세액의 51%이던 것이 2007년에는 납세자의 70%에 달하고 결정세액의 60%에 달할 정도로 이들 주택소유 계층에 세부담이 집중되게 된다. 2005년 도입 이후 결정세액 기준으로 2주택소유 주택분 중부세 납부가구가 가장 많던 것이 2008년에는 주택분 중부세 납부가구 30만여 가구 중 60%에 달하는 18.2만 1주택소유 가구에 가장 많은 3,055억원이 부과되어 평균 167만원이 과세되었다. 주택시장가격 최고 정점 시점 기준으로 과세평가된 주택자산 단순합산가액을 기초로, 주택소유 및 이용현황, 그리고 납부할 소득이 있는지에 대한 배려 없이 세계 금융위기 발발 시점에 과세되어 조세저항이 매우 컸다.

왜냐 하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주택자산가액만 합산하여 별도의 국세보유세인 주택분 중부세를 과세하든, 주택자산을 포함한 가구의 총자산총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후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일부공제를 허용하는 순부유세를 과세하든, 주택자산에 대한 자산보유세 부과(capital levy)의 분배 및 세수효과에 대한 관심은 공통적이기 때문이다. 순부유세

〈표 IV-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보유주택수별 과세현황 추이

(단위: 명, %, 백만원)

보유 주택	2005년 ¹⁾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신고 인원	결정 세액	신고 인원	결정 세액	신고 인원	결정 세액	신고 인원	결정 세액	신고 인원	결정 세액	신고 인원	결정 세액	신고 인원	결정 세액	신고 인원	결정 세액		
전체	36,441 (100.0)	39,118	235,317 (100.0)	522,238	381,636 (100.0)	1,261,102	307,152 (100.0)	844,860	161,901 (100.0)	194,590	200,009 (100.0)	241,358						
1호	9,250 (25.4)	5,628	70,214 (29.8)	109,052	152,969 (40.1)	358,371	182,490 (59.4)	305,490	67,391 (41.6)	36,635	87,344 (43.7)	49,764						
2호	10,445 (28.7)	9,123	71,225 (30.3)	159,627	110,652 (29.0)	394,613	70,242 (22.9)	249,408	58,178 (35.9)	65,485	71,154 (35.6)	83,941						
3호	3,311 (9.1)	3,882	27,808 (11.8)	76,680	37,978 (10.0)	173,784	16,061 (5.2)	63,899	10,485 (6.5)	15,738	12,327 (6.2)	19,473						
4호	1,603 (4.4)	1,948	14,241 (6.1)	38,502	18,566 (4.9)	81,476	9,217 (3.0)	29,978	6,416 (4.0)	8,154	7,475 (3.7)	9,902						
5호	1,141 (3.1)	1,450	8,760 (3.7)	21,109	11,206 (2.9)	44,115	5,896 (1.9)	19,201	4,122 (2.5)	5,264	4,767 (2.4)	6,364						
6~10호	10,691 (29.3)	17,087	22,235 (9.4)	45,699	27,001 (7.1)	86,480	14,081 (4.6)	38,751	9,479 (5.9)	11,867	10,614 (5.3)	13,565						
11호 이상	-	-	20,834 (8.9)	71,569	23,264 (6.1)	122,263	9,165 (3.0)	138,133	5,830 (3.6)	51,447	6,328 (3.2)	58,349						

주: 1) 2005년에는 6호 이상까지만 분류.

1. 다가구 주택은 1가구를 1호로 산출.

2. () 안은 신고인원 비중.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IV. 부유세로서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평가 55

를 오랜 기간 시행했던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등의 나라들에서 순부유세의 부의 집중억제효과를 자료를 통해 실증분석하는 정책연구가 지속되었던 것도 그러한 배경하에서였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에는 ‘고액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을 높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인다’라고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사용하는 형평성의 개념에 따라서 형평성 제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과거 개별주택 물건별 시가 대비 세부담 형평성 문제는, 주택분 종부세를 도입하지 않고 주택분 재산세의 (토지·건물)통합평가 및 과세제도로의 전환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과세평가행정 (assessment administration)의 질에 달려 있는데 2011년 10월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11년 실거래가격 대비 단독주택, 공동주택, 토지의 평균공시가격 비율은 각각 58.8%, 72.7%, 57.1%로 나타난다.

이에 따른 가구별 세부담의 형평성을 살펴보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유형을 주택과 토지로 크게 나눈 후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으로 세분한 후 각각의 유형에 대해 인별합산한 후 각각의 상이한 누진세율체계를 적용함에 있어서, 적어도 주택분 종부세의 인별합산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은 단독주택 소유자와 공동주택 소유자 간 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성 문제로 명백하게 드러난다. 특히 ‘공정시장가격 적용비율’ 제도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2008년 말 이후에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간 적용비율은 80%로 동일하게 유지하여 운영되고 있다. 주택부자 또는 땅부자일수록 주택보유세와 토지보유세의 실효세율이 높아지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이 형평하다는 단순논리는 종부세의 과세대상 유형 내에서 해당 누진세율체계 때문에 만족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토지와 주택, 그리고 토지 내에서도 종합합산, 별도합산 간 6억원, 5억원, 50억원 기준금액 및 적용세율의 차이에 따른 차등과세는 형평성 차원에서 설명 근거가 부족하다.

경제적 처지나 형편(economic position)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척도(measure)로서 사용되는 ‘경제인(가구)의 소득’ 대비 수직적 형평성 또는 누진도는 소득분포의 분위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조세의 실효세율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²⁰⁾. 인이나 가구의 소득 및 (부동산) 자산의 결합분포, 그리고 이들의 소득세액 및 (부동산) 자산보유세액이 파악됨에 따라 소득 대비 세부담 형평성을 논의할 수 있다. 쉽게 표현하여 연봉 3억원의 고소득자이면서 10억원의 부동산 자산가가 부담하는 부동산 보유세액이 연봉 3천만원이면서 10억원의 부동산 보유자와 보유세 부담이 같은 것이 형평한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달라져야 형평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소득분위별 부동산 보유세 부담분포를 <표 IV-2>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2010년 귀속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가계금융조사 자료는 매년 1만여 가구를 표본으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소득 등을 그 종류별로 상세히 조사하면서 주택의 소유 및 점유현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²¹⁾. 반면 조세와 관련된 정보는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데, 2010년 귀속분의 경우 비소비지출로 세금 및 과징금,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료, 경조비, 가구간 이전, 비영리단체 이전 5개 항목으로 구분 조사되고 있으나 이용 가능한 자료는 5개를 합한 비소비지출 총액이다. 2011년 귀속분의 경우는 다소 사정이 나아져서 소득세, 재산세, 등등으로 구분하여 응답자가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세목별 (또는 조세유형별) 납부금액이 조사되어 통계청 내부자료로는 존재하나, 외부에 제공되는 개별원시 자료에는 합계액만 수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1년 가계금융조사상의 10,517 표본가구들 중 부동산(특히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재산세 및 증부세 등 보유세 부담액을 세법상의 세액산출규정에 따라 추정하기로 한다. 소득분위는 5분위로 가중치를 감안하여 분류한 후 해당 분위 내에 속한 2천여 가구들을 대상으로 부과되리라고 추정되는 부동산관련 조세들을 계산한 후 각종 세부담 및 합계를 자산총액, 순자산, 경상소득과 대비하여 수록하고 있다.

20) 어떤 세금의 누진성(progressivity)은 수직적 형평성과 완전히 동일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가정들하에서 누진적 세율구조를 갖게 되면 수직적 형평성을 대체로 만족시키게 됨.

21) 가계금융조사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2010년 귀속분 가계금융조사상의 민간 가계부문 소득분위별 자산건전성에 대한 분석은 노영훈(2011)을 참고 바람.

IV. 부유세로서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평가 57

동 조사는 표본가구 파일뿐만 아니라 가구에 속한 가구원들의 주택소유 내역들도 인별 파일로 존재하므로 다주택소유 여부 현 거주주택의 임대등 점유상황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한 것이 <표 IV-2>과 <표 IV-3>이다. 먼저 가계금융조사는 매년 2월 28일을 기준시점으로 1만여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다. 주택자산 보유 현황과 거주주택 유형뿐만 아니라 개별가구의 대차대조표상의 상세한 자산·부채내역이 존재한다. 먼저 표본가구인 10,517가구의 모집단 대비 대표성을 살펴보자. 2010년 귀속분 가계금융조사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에 기초하여 표본추출되었으므로 <표 IV-2>상의 2005년 센서스 통계량들과 유사했던 반면, 2011년 귀속분 가계금융조사는 2010년 11월의 인구주택총조사 모집단에서 표본추출되어 2010년 센서스상의 주택소유 및 점유관련 통계량들과 비교하여 주택자산소유 및 자가거주 가구 추출비율이 소폭 높게 나타난다. 표본 내 주택소유 가구는 6,694가구로 그 비율은 63.6%인데 모집단에서는 61.3%, 자가거주가구 비율은 56.9%인데 모집단에서는 54.2%이다. 1세대 1주택 자가거주가구는 5,116가구로 표본가구 중 48.6%를 차지하는데 모집단에서는 그 비율이 45.8%이다.

한편 타지에 주택을 소유한 모집단 내 268.2만가구는 잠재적 임대사업자가구들로서 이들의 현재 거주주택이 ① 자가인 가구(owner-occupier) 144.3만가구(8.3%)와 ② 임차가구인 124만가구(7.15%)로 나뉘어진다. 2011년 가계금융조사에서는 864가구(8.2%)와 714가구(6.8%)인 것으로 관찰되어 임차가구의 타지주택소유 비율은 다소 떨어지지만 자가거주가구 중 타지주택소유 가구는 모집단 수치에 매우 근접한다. 이들 수치들은 2010년 귀속분 가계금융조사상의 12%(자가)와 5.7%(임차가구)와 비교해서는 훨씬 모집단 수치에 근접하고 있다[<부표 2> 참조]. 전자에 해당하는 가구유형은 속칭 '다주택소유 가구'이면서 이 중 하나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나머지를 임대하는 가구들이고, 후자는 현재 거주하는 임차주택에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주거서비스를 해결하면서 타지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임대하여 자신의 주거서비스 소비 문제와 주택자산투자 의사결정을 분리하여 해결하고 있는 가구들이다.

2010년 귀속분 가계금융조사 표본가구 1만가구에서 주택자산을 소유한 6,425가구들이 소유한 주택자산가액은 평균 1억 4,809만원으로 평균자산총액 2억 7,684만원 대비 53.5%이었다. 이 중 거주주택으로 1억 1,569만원을, 그리고 타지에 소유한 주택자산으로 3,240만원을 소유했다[〈부표 4〉, 〈부표 5〉 참조]. 1년 후인 2011년 귀속분 가계금융조사 표본 10,517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자산총액 2억 9,765만원 중 주택자산가액은 1억 5,391만원으로 51.7%로 1.8%p 하락했는데, 주택소유 가구 비율이 64.25%에서 63.65%로 0.6%p 하락폭과 대비하여 불 때 주택시장 가격의 하락에 따른 평가액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거주주택자산 비중은 2.1%p 하락한 반면 타지소유주택자산 가액 비중은 0.3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표 IV-4〉과 〈부표 5〉 참고).

따라서, 자신의 거주주택을 임차하여 주거서비스를 해결하면서, 주택을 자산구성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 타지에 소유하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가구들이 늘어나는 시장변화 현상에 주목하고 이들 가구들에 대한 경제적 위치(economic position)를 파악한 후 주택 관련 각종 세제에 있어서의 형평성차원의 차등대우(preferential taxation) 문제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표 IV-2〉 센서스 점유형태별 타지주택 소유 비율

(단위: 천가구, %, %p)

점유 유형	2005년 센서스			2011년 가계금융조사			2010년 센서스			증감 (B-A)
	타지주택소유		비율 (A)	타지주택소유		비율	타지주택소유		비율 (B)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일반가구	15,887	1,794	11.3	10,517	1,578	15.0	17,339	2,682	15.5	4.2
자 가	8,828	1,047	11.9	5,980	864	14.4	9,390	1,443	15.4	3.5
전 세	3,557	505	14.2	2,092	485	23.2	3,766	827	21.9	7.7
월 세	2,728	149	5.4	1,674	133	7.9	3,490	297	8.5	3.1
사글세	284	14	5.0	181	6	3.3	230	17	7.4	2.4
무 상	490	79	16.2	590	90	15.3	464	99	21.3	5.1

주: 2011년 가계금융조사의 가구 수 단위는 '천가구'가 아닌 '가구'.

IV. 부유세로서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평가 59

〈표 IV-3〉는 2011년 가계금융조사 표본가구 10,517가구를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이들 그룹별 경제적 처지 및 상황을 소득 및 가계재무건전성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 정리한 표이다. 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거주주택이 자기집인지 임차주택인지의 여부는 가구라는 경제주체가 주거서비스 및 주택자산 투자와 관련하여 내린 의사결정의 최종결과물인데, 가구의 경제적 처지를 대표적으로 반영하는 자산·부채, 소득·지출 측면에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주택에 대한 보유세, 즉 지방재산세 및 주택분 종부세의 형평성 논의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기 때문이다.

〈표 IV-3〉 2011년 가계금융조사 표본가구의 주택 소유 및 점유 현황

(단위: 가구)

점유유형	소유현황 거주주택만 보유	비거주 주택 보유 가구					계
		계	1채	2채	3채	4채	
자가점유 (Owner-Occupied HH)	5,116	864	792	56	11	5	5,980 ¹⁾
			649				714 ²⁾
임 차	전세	-	438	40	4	3	485
	보증금 있는 월세	-	123	10	0	0	133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	5	1	0	0	6
	기타 (무상주택, 무상사택 등)	-	83	6	1	0	90
주택소유 가구 계	5,116	1,578	1,441	113	16	8	6,694
무주택소유 임차가구							3,823
총계							10,517

- 주: 1) 거주주택을 보유한 5,980가구는 거주주택만 소유한 5,116가구와 거주주택 이외에도 비거주 타지 소재주택을 소유한 864가구로 구분됨.
 2)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차하면서 타지에 주택을 보유한 가구들(485+133+6+90)의 합계.
 1. 2채 이상 다주택소유 가구는 929 : 자가거주주택과 타지주택을 소유한 가구 864가구에 거주주택은 임차하면서 타지에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65가구의 합계.
 2. 3채 이상 다주택소유 가구는 80가구(56+11+5+4+3+1), 4채 이상 다주택 소유 가구는 19가구(11+5+3), 5채 이상 다주택소유 가구는 8가구(5+3).

〈표 IV-4〉 2011년 기계금융조사 소득 5분위별 자산 분포

(단위: 가구, 만원,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표본수	평균	표본수	평균	표본수	평균	표본수	평균	표본수	평균	표본수	평균
자산총액	10,517	29,764.8	2,072	10,845.8	2,082	16,129.5	2,061	22,813.1	2,090	33,732.1	2,212	65,280.9
부동산평가액	10,517	21,906.7	2,072	8,691.4	2,082	12,233.7	2,061	16,413.0	2,090	24,817.9	2,212	47,361.3
거주주택+타지주택	10,517	15,391.4	2,072	6,434.8	2,082	9,169.0	2,061	12,334.0	2,090	18,249.4	2,212	30,759.8
거주주택	10,517	11,812.4	2,072	5,615.8	2,082	7,474.8	2,061	9,650.1	2,090	14,273.4	2,212	22,041.2
타지주택	10,517	3,579.1	2,072	819.1	2,082	1,694.2	2,061	2,684.0	2,090	3,976.0	2,212	8,718.6
기타부동산	10,517	6,515.3	2,072	2,256.5	2,082	3,064.7	2,061	4,078.9	2,090	6,568.5	2,212	16,601.5
기타실물자산	10,517	954.9	2,072	153.0	2,082	438.4	2,061	770.6	2,090	1,157.8	2,212	2,253.7
금융자산	10,517	6,903.3	2,072	2,001.4	2,082	3,457.4	2,061	5,629.5	2,090	7,756.4	2,212	15,665.9
저축액	10,517	5,023.1	2,072	1,204.4	2,082	2,146.5	2,061	3,753.3	2,090	5,507.9	2,212	12,498.6
전월세보증금	10,517	1,880.2	2,072	796.9	2,082	1,310.9	2,061	1,876.2	2,090	2,248.6	2,212	3,167.3
부채총액	10,517	5,204.8	2,072	1,444.7	2,082	2,748.4	2,061	3,850.5	2,090	5,953.0	2,212	12,022.8
금융부채	10,517	3,597.0	2,072	1,042.0	2,082	1,888.7	2,061	2,696.8	2,090	4,196.8	2,212	8,157.9
임대보증금	10,517	1,607.8	2,072	402.7	2,082	859.7	2,061	1,153.7	2,090	1,756.3	2,212	3,864.9
순자산액	10,517	24,560.1	2,072	9,401.1	2,082	13,381.1	2,061	18,962.6	2,090	27,779.1	2,212	53,258.1
경상소득	10,517	4,011.8	2,072	630.3	2,082	1,826.4	2,061	3,112.9	2,090	4,782.5	2,212	9,703.0

IV. 부유세로서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평가 61

- (Ⅰ그룹) 거주주택만 소유한 5,116가구의 '1세대1주택자' 가구
- (Ⅱ그룹) 자가점유 다주택소유 가구 864가구(다주택소유 자가거주가구)
- (Ⅲ그룹) 타지주택소유 임차가구 714가구
- (Ⅲ'그룹) 타지1주택소유 임차가구 649가구
- (Ⅳ그룹) 무주택소유 임차가구 3,823가구

결국 자가점유냐 임차가구냐에 따라 (Ⅰ그룹)+(Ⅱ그룹)과 (Ⅲ그룹)+(Ⅳ그룹)으로 나누어지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Ⅰ그룹)+(Ⅱ그룹)+(Ⅲ그룹)과 (Ⅳ그룹)으로 나누어지고, 임대주택소유(또는 임대사업) 여부에 따라 (Ⅱ그룹)+(Ⅲ그룹)과 (Ⅰ그룹)+(Ⅳ그룹)으로 나누어진다.

거주주택 주택소유 가구인 6,694 표본가구들에 대한 지방세로서의 재산세와, 재산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 본세에 추가되는 부가세(sur-tax)들을 세법규정에 따라 계산한 결과는 <표 IV-5>상의 '재산세계'에 수록되어 있다.

이들 주택소유 가구 중 주택에 대한 지방세 재산세에 추가하여 주택종부세를 납부하게 되는 대상 가구의 범위를 다음과 같은 기준에서 추정해보자. 원래 종합부동산세는 최초 도입연도인 2005년 후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세대별 합산과세되다가 2008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인별합산으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아래의 가구별 주택분 종부세의 세부담 분석은 1세대1주택 소유 가구를 제외하고는 세대원별 주택자산 보유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가계금융조사 원시자료를 갖고는 세대원별 주택종부세 부과 여부 및 세부담액을 엄밀하게 추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먼저 1세대1주택 소유 가구의 경우 주택소유 가구 중 자가점유 1세대1주택가구(Ⅰ그룹)인 5,116가구와 타지1주택소유 임차가구(Ⅲ'그룹)인 1,441가구를 대상으로 응답가구들이 답한 '주택의 현재 시장가격'에 80% 비율을 적용한 값을 주택공시가격이라고 가정하여²²⁾ 인별 주택자산 합산가액을 구한다. 주택분 종부세 기준금액이 9억원이므로 <부표 7>상의

22) 2011년 10월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공시가격비율은 부동산 유형별로 차이가 나는데, 공동주택은 72.7% 단독주택은 58.8%의 실거래가액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라고 보고됨, 차등공시가격비율을 적용하였을 때 주택분 종부세 납부 가구 수는 179가구로 줄어들지만 이에 따라 보유세 실효세부담은 소폭 감소함.

5단계 누진 주택분 종부세율표를 적용하는 등 세액결정 과정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를 계산하였다. 다주택소유 가구인 II그룹 소속 864가구와 III그룹에서 III'그룹을 제외한 타지 다주택소유 가구 65가구에 대해서는, 가구소유 주택들의 '현재 시장가격'에 80% 비율을 적용한 가액들을 전국 합산하여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종부세 과세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가정한다(〈표 IV-3〉 참고).

그 결과 주택종부세 납부가가 255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총표본 10,517가구 중 납세가구비율은 2.5%에 달한다. 1년 전이지만 2010년 귀속분 주택종부세 납부자는 20만명으로 한 가구 내 복수의 주택종부세 납부자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부표 2〉상의 2010년 센서스상의 1,734만가구 대비 1.2% 비율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물론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액 대비 비율이 공동주택이 72.7%이고 단독주택이 58.8%라는 정부 발표에 맞추어 80%를 하향조정하게 되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추정가구 비율을 낮출 수도 있지만, 향후 소득 5분위별 부담분포 분석을 위해서는 소득분위별로 적정한 관찰가구 수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대로 진행하기로 한다.

2011년 가계금융조사 표본가구들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리라 예상되는 255가구들에 대한 소득분위별 주택보유세의 부담분포는 〈표 IV-5〉와 같다.

대체로 주택소유자 중 지방세로서의 재산세 등(재산세+지방교육세+재산과세특례)에 추가하여 주택분 종부세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로서 334.3만원을 그리고 국세(종부세 및 농특세)로 114만원을 평균적으로 납부하게 되어 총보유세 합계액은 448.3만원이다. 이들 주택종부세 납부자들의 주택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은 0.32%이며, 소득분위별로 0.3%(소득1, 2분위), 0.33%(소득 3, 4분위), 0.32%(소득 5분위)의 분포를 보여 별로 차이가 없음이 나타난다.

이 결과의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대조할 수 있는 자료는 2008년 10월 10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서 소개된 2007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가구 38만가구로부터 10,779가구를 표본추출하여 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

IV. 부유세로서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평가 63

률의 분포통계가 유일하다²³⁾.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득을 4천만원, 6천만원, 1억원, 3억원, 5억원을 구분점으로 한 6개구간으로 나누었을 때 1만여 주택분 중부세 납부가구들이 이들 소득구간에 속한 비율은 34.8%, 9.7%, 15.9%, 27.1%, 5.8%, 6.7% 이었고, 이들 소득그룹별 '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각각 46.2%, 15.6%, 9.86%, 5.5%, 2.87%, 1.27%로 나타났다. 즉, 2007년 주택분 중부세 납부가구의 34.8%가 연간가구소득 4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들의 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비율이 46.2%에 달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가계금융조사 미시자료는 임의적인 소득구간을 정하기보다 전체 표본가구를 소득5분위 그룹으로 나눈 결과 대략 2천여명들이 각 소득분위에 속하고, 소득5분위 구간을 구분하는 구분점들은 1,200만원, 2,423만원, 3,840만원, 6,000만원이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와 같이 소득구간을 나누어 주택분 중부세를 납부하리라고 추정되는 255가구의 인원분포를 보면 기재부 6개구간 내 소속비율이 52가구(20.39%), 49가구(19.2%), 72가구(28.2%), 75가구(29.4%), 6가구(2.35%), 1가구(0.39%)로 고소득 가구가 과소반영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본 연구의 소득5분위(최고소득 20%) 계층은 연간소득 6천만원 이상으로 이들 가구들의 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비율은 4.23%였고, 기재부 분포에서는 6천만원 이상 4개 소득구간에 대해 각각 9.86%, 5.53%, 2.87%, 1.27%이었다.

순자산 대비 주택보유세의 부담비율도 소득1분위에서 0.38%, 2분위에서 0.39%, 그리고 3분위에서 0.4%로 높아졌다가 4분위에서 0.38%, 5분위에서 0.32%로 하락한다. 이 중 물세인 주택재산세를 제외한 주택중부세만을 보아도 소득3분위까지 상승하다가 상위소득분위로 갈수록 하락함을 보이는데 이는 주택자산가액을 순자산에 대한 대리변수(proxy)로서 파악하기 때문에 과세하기 곤란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한 가구의 주택소유 자산가액보다 경제적 처지를 보다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순자산(=총자산-부채)과 대비할 때의 세부담이 고소득계층으로 올라갈수록 역U자

23)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개인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의 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률 통계분석자료 관련」, 2008. 10. 10.

형 패턴을 보여 중간소득계층에 주택보유세 부담이 제일 높음을 보여준다. 또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주택보유세의 경상소득 대비 납부능력을 나타내는 경상소득 대비 보유세 비율도 최저소득계층의 93.8%를 제외하고도 2분위와 3분위에서 각각 20.4%와 20%에 달해 상위소득계층의 8.7%, 4.23%보다 과중함을 보여준다.

김경환 등(2012)도 가계금융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68 종부세 납부가구와 6,962 재산세 등 납부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관련과세, 종부세 관련과세, 그리고 그 합계인 전체 보유세 실효세율을 계산한 바 있는데 각각 0.28%, 0.06%, 그리고 0.35%로 제시되었다. 동 연구는 “가구소득 대비 재산관련 과세는 1.82% 종부세 관련과세는 0.03% 전체 보유세는 가구소득의 1.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하면서, 1,200만원, 2,500만원, 4,000만원, 6,000만원을 소득구간 구분점으로 하는 소득계층별 소득 대비 보유세비율이 4.55%, 2.07%, 1.45%, 1.11%, 1%로 낮아져서 재산세 관련과세는 역진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제시한다.

본 연구도 <표 IV-6>상의 하단에 소개한 경상소득 대비 재산세 등의 비율이 5.51%, 2.15%, 1.41%, 1.12%, 0.89%로 하락하면서 전체에 대해서는 1.98%인 결과와 유사하게 역진성을 나타내지만, 차이점은 본 연구에서는 임의적인 소득구간 금액을 상정하지 않고 소득5분위로 소득계층을 나누었다는 점이다. 종부세 납부가구에 국한하여 주택종부세 등의 경상소득 대비 비율을 계산하면 <표 IV-6> 하단의 23.7%, 4.82%, 5.79%, 1.78%, 1.09%로 나타낸다. 후술하는 Suits 지수를 [그림 IV-2] 상의 Lorenz 곡선으로 설명할 소득 기준 누진적임이 드러난다. 다만, 몇몇 구간에서 낙타등(bump)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251 주택분 종부세 납부가구를 소득10분위로 나눌 경우 특정 소득분위에서 2~3개 가구의 보고소득 특이성(outlier)이 효과를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가구로 추정되는 255가구에 국한하지 않고 주택소유 6,694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가액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표 IV-6>에서 나타나듯이 0.19%이다.

IV. 부유세료서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평가 65

<표 IV-5> 2011년 기계금융조사 주택종부세 납부가구 소득분위별 세부담 분포(공시가격비율 80%, 기준치 적용)

(단위: 가구, 만원, %)

	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표본수	가중평균	표본수	평균								
			8	141.15	14	114.06	23	188.04	52	134.06	158	142.86
주택 재산세	255	143.75	8	141.15	14	114.06	23	188.04	52	134.06	158	142.86
지방교육세	255	28.75	8	28.23	14	22.81	23	37.61	52	26.81	158	28.57
재산세과세특례	255	84.52	8	81.37	14	76.17	23	97.73	52	79.94	158	84.89
지역자원시설세	255	77.30	8	71.53	14	62.17	23	98.60	52	86.98	158	72.40
재산세+지방교육세+재산세 과세특례+지역자원시설세	255	334.32	8	322.28	14	275.21	23	421.98	52	327.80	158	328.73
증부세	255	95.00	8	68.25	14	68.02	23	137.70	52	72.42	158	99.61
농특세	255	19.00	8	13.65	14	13.60	23	27.54	52	14.48	158	19.92
증부세+농특세	255	114.00	8	81.90	14	81.62	23	165.23	52	86.91	158	119.53
보유세 전체	255	448.32	8	404.18	14	356.83	23	587.21	52	414.70	158	448.26
주택가액 대비 재산세	255	0.25	8	0.25	14	0.24	23	0.26	52	0.26	158	0.25
주택가액 대비 증부세	255	0.07	8	0.05	14	0.07	23	0.08	52	0.06	158	0.07
주택가액 대비 보유세	255	0.32	8	0.30	14	0.30	23	0.33	52	0.33	158	0.32
순자산 대비 증부세	255	0.08	8	0.07	14	0.09	23	0.09	52	0.07	158	0.07
순자산 대비 보유세	255	0.35	8	0.38	14	0.39	23	0.40	52	0.38	158	0.32
경상소득 대비 재산세	251	6.78	4	70.08	14	15.53	23	14.08	52	6.92	158	3.14
경상소득 대비 증부세	251	2.28	4	23.72	14	4.82	23	5.79	52	1.78	158	1.09
경상소득 대비 보유세	251	9.06	4	93.80	14	20.35	23	19.87	52	8.70	158	4.23

〈표 IV-6〉 2011년 가계금융조사가구의 소득분위별 주택 보유세 부담 분포(공시가격비율 80%, 가중치 적용)

(단위: 가구, 만원,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표본수	가중평균	표본수	평균	표본수	평균	표본수	평균	표본수	평균	표본수	평균
주택 재산세	6,694	18.51	1,070	8.10	1,066	12.44	1,229	15.04	1,488	18.63	1,841	31.02
지방교육세	6,694	3.70	1,070	1.62	1,066	2.49	1,229	3.01	1,488	3.73	1,841	6.20
재산세과세특례	6,694	16.41	1,070	8.46	1,066	12.20	1,229	13.98	1,488	17.18	1,841	24.98
지역자원시설세	6,642	13.74	1,035	7.77	1,054	10.68	1,225	11.73	1,488	14.18	1,840	20.20
재산세+지방교육세+재산세 과세특례+지역자원시설세	6,694	52.26	1,070	25.68	1,066	37.69	1,229	43.74	1,488	53.71	1,841	82.39
증부세	255	95.00	8	68.25	14	68.02	23	137.70	52	72.42	158	99.61
농특세	255	19.00	8	13.65	14	13.60	23	27.54	52	14.48	158	19.92
증부세+농특세	255	114.00	8	81.90	14	81.62	23	165.23	52	86.91	158	119.53
보유세 전체	6,694	55.86	1,070	26.16	1,066	38.61	1,229	46.43	1,488	56.18	1,841	91.18
주택가액 대비 재산세	6,694	0.18	1,070	0.18	1,066	0.18	1,229	0.18	1,488	0.18	1,841	0.19
주택가액 대비 증부세	255	0.07	8	0.05	14	0.07	23	0.08	52	0.06	158	0.07
주택가액 대비 보유세	6,694	0.19	1,070	0.18	1,066	0.18	1,229	0.18	1,488	0.19	1,841	0.20
순자산 대비 증부세	255	0.08	8	0.07	14	0.09	23	0.09	52	0.07	158	0.07
순자산 대비 보유세	6,694	0.17	1,070	0.15	1,066	0.15	1,229	0.18	1,488	0.20	1,841	0.15
경상소득 대비 재산세	6,675	1.98	1,051	5.51	1,066	2.15	1,229	1.41	1,488	1.12	1,841	0.89
경상소득 대비 증부세	251	2.28	4	23.72	14	4.82	23	5.79	52	1.78	158	1.09
경상소득 대비 보유세	6,675	2.05	1,051	5.58	1,066	2.20	1,229	1.51	1,488	1.17	1,841	0.97

IV. 부유세로서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평가 67

어떤 조세의 역진성 정의는 보통 소득세의 경우 소득계층별 평균소득 세율이 고소득계층으로 갈수록 떨어지거나, 자산보유세의 경우 자산분위별 평균자산세율이 고자산계층으로 갈수록 떨어질 경우로 내려진다²⁴⁾.

본고에서는 소득과 자산의 교차(결합)분포로부터 소득분위별 자산보유세 실효세율 분포를 통해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소득이 올라갈수록 중부세나 순부유세의 부동산 및 순자산 대비 실효세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는 이외에도 Suits 지수를 통해 자산에 대한 과세인 재산세 및 중부세, 그리고 순부유세 등이 역진적인지 누진적인지를 판단해 보고자 한다.

Suits(1977)는 특정 개별조세들 또는 한 나라의 전체 조세체계(tax system as a whole)가 누진적인지 역진적인지 아니면 비율적(proportional)인지의 정도를 지수로 개발하여 제시하였는데, 미국 내 대표적 조세들인 개인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매상소비세, 사회보장세들에 대해 1966년과 1970년 자료를 이용하여 Suits 지수를 계산하였다. 기본적인 공식은 다음의 식 (1), 식 (2)와 [그림 IV-1]로 정의되는데 우리가 특정변수(예, 소득, 자산)의 분포 집중도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Lorenz 곡선에 기초한 지니계수 계산과 유사한 방식을 사용한다. 식 (2)에서 정의되듯이 L 은 그림 [그림 IV-1]의 횡축을 나타내는 누적소득 100분위 분포 y 에 속하는 가계나 개인 분위까지 부담하는 x 라는 조세의 누적납세비율을 종축으로 표시한 Lorenz 곡선 아래의 면적을 나타낸다. 이는 기본적으로 (세전) 소득 대비 특정 조세 세부담의 누진·비율·역진성을 계산한 지수 수치로, 대각선과 Lorenz 곡선 사이의 면적 S 가 대각선 아래의 면적 K 대비 비율이므로 최저소득분위계층이 x 조세 세부담 전액을 부담하는 최고역진적인 경우의 -1 값과 최고소득분위계층이 x 조세 세부담 전액을 부담하는 최고누진적인 경우의 +1 값 사이의 값을 갖는다. 소득에 비례하여 해당 조세부담액이 결정되면 0의 값을 갖게 된다.

24) 일부 연구에서는 소득 대비 부동산 보유세부담의 비율이 상위소득계층으로 갈수록 하락하는 현상을 두고 '소득에 대해 역진적인 구조를 보인다'고 표현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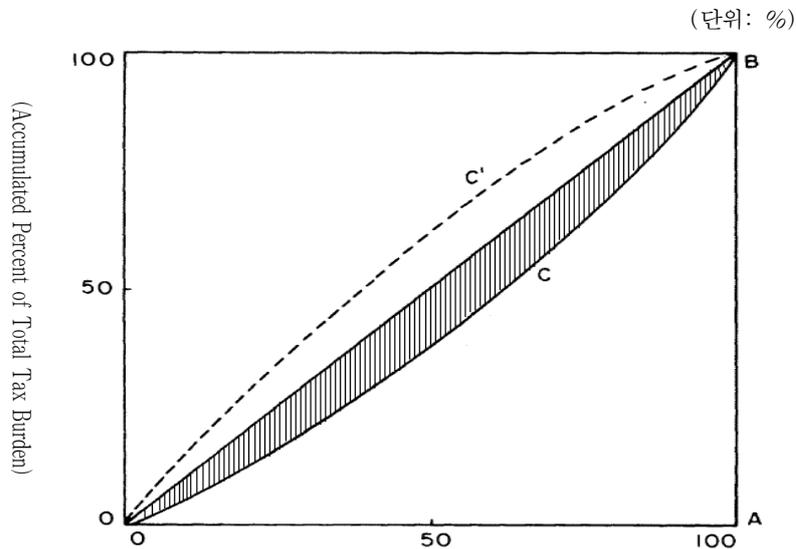
$$S_x = 1 - (L_x/K) \quad \text{식 (1)}$$

$$= 1 - (1/K) \int_0^{100} T_x(y) dy$$

$$L_x = \int_0^{100} T_x(y) dy \quad \text{식 (2)}$$

$$\approx \sum_{i=1}^{10} (1/2)[T_x(y_i) + T_x(y_{i-1})](y_i - y_{i-1})$$

[그림 IV-1] Lorenz 곡선과 Suits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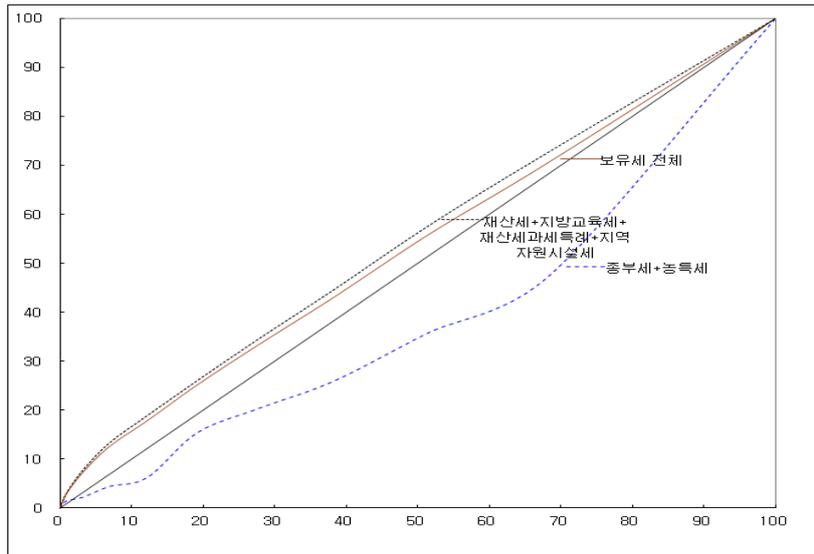
누진소득비율(Accumulated Percent of Total Income)

주: K =대각선 아래 OAB 면적, L =C곡선 아래 OABC 면적

식 (2)에서도 나타나듯이 Lorenz 곡선의 아래 면적을 계산하기 위한 적분의 근사법(approximation)으로 분위를 5분위, 10분위, 20분위, 100분위로 세분화할수록 분포의 막대그래프 구간폭이 좁아지면서 곡선 아래 면적에 근접하게 되므로 본 연구의 Suits 지수값 산정을 위해서는 10분위 소득분포를 사용하였으며, 가계 경상소득 10분위별 각종 보유세부담 및 향후 설명할 순부유세 대안별 추정 세부담 분포는 부록의 <부표 6>, <부표 7>과 같다.

[그림 IV-2] 우리나라 주택관련 보유세들의 Lorenz 곡선
(2011년 가계금융조사자료)

(단위: %)



우리나라의 현행 주택보유 관련 재산세 및 각종 부가세들, 그리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특세 등 부가세들에 대한 Lorenz 곡선은 [그림 IV-2]
와 같다. Suits 지수값을 계산한 결과는 각각 -0.10, 0.21이다. Suits 지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개별조세의 Suits 지수값들을 가계소
득 대비 해당 조세 세부담액인 평균세율을 가중치로 하여 종합하면 -0.07
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현행 주택관련 총보유세 세부담은 경상소득 기준으
로 누진적이지 않음이 나타난다. 이는 미국 등 여러나라의 지방재산세 실
증분석 결과와 우리나라의 기존연구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결과
인데, 경상소득으로 파악한 저소득분위 계층에서 상당한 주택자산소유 편
차가 발생하여 소득이 증가할수록 주택자산가액도 증가하는 소득과 주택
자산 간 상관관계는 뚜렷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러한 실증결과를 기초로 주택보유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개편되어야 한
다는 당위론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나. 주택중부세의 주택임대소득 보완과세 기준에서의 적정성 판단

주택중부세 납부가구들만을 대상으로, 과연 주택중부세의 기능을 주택을 임대하였을 경우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외형적) 추계과세로서 성격을 규명했을 때 적절한 부담수준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는 주택의 고가 여부, 주택소유횟수, 그리고 월세 또는 전세 보증금 수취 여부, 그리고 전세보증금 합계액의 기준금액 초과 여부에 따라 결정되지만, 일단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기로 하자. 주택중부세 납부가구들 중 비거주주택소유 가구들만을 추출하여, 주택공시가액의 4% 정도를 필요경비공제 후의 과세임대소득으로 보면 현행 소득세 세율체계(6~35%)에 적용할 때 추가적인 소득세액은 소득 대비 0.24~1.4%의 세부담을 지도록 설계되는 것이 취지에 맞게 된다. 그러나, 주택중부세 납부가가 재산세 이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중부세 납세자의 보유세 평균실효세율이 0.32% 이고 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비율은 6.7%이므로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즉, 주택중부세의 기능을 임대소득세 보완적 추가외형과세로 국한하여 부담수준의 적정성을 판단해도 현행 수준은 높다는 판단이다.

3. 부유세 대안별 세수 및 분배효과

먼저, 각종 대안들에 대한 세수 및 분배효과를 미시추정(micro-simulation) 하기 전에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제 II 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최상위 순부 소유계층이 본 실증연구의 기초인 가계금융조사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2010년부터 시작한 가계금융조사는 가계의 자산에 대한 모집단 분포를 파악한 후에 그로부터 추출한 표본이 아니므로 최상위 부자계층이 상당히 과소반영(under-representation)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일회적 순자산세 부과와 세수 및 분배효과를 독일사회경제가구패널자료(SOEP)를 이용하여 연구한 Bach(2011)는 이러한 truncation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내 최고 부자 300명에 대한 자산자료를 200만유로달러를 초과하는 최상위분포(upper tail)가 포와송(Poisson) 밀도함수를 따를 것으로 가정하여 추가하였다.

IV. 부유세로서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평가 71

본 연구는 상속세 개인신고자료를 역추정하거나 우리나라 최고 부자들의 자산소유 현황에 대한 추가자료를 활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세수 및 분배 효과 측면에서 최상위구간의 과소반영에 따른 과소추정이 분명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부채를 공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순부(Net Wealth)에 대한 부유세와 크게 다르다. 만일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과거 시행하였던 각국의 순부유세 모델 중 공통분모라고 할 수 있는 ① 개인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부에 대한 과세, ② 일정 순자산금액을 초과하여 소유한 과세대상 범위설정(예: 9억원), ③ 자가거주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예: 30%) 또는 일정 금액 공제, ④ 연간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는 방식의 세액상한규정(예: 50%)을 가상적으로 상정하여 몇 가지 한국형 순부유세 대안들을 상정하여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안들별로 2011년 가계금융자산조사상의 10,517 표본가구들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그 세수 및 분배효과를 기존의 주택분 중부세 및 농특세 세 부담과 대비하여 보았을 때 현행 주택분 중부세 현상유지와 새로운 대안들 간의 장단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단 손쉽게 순부유세의 과세대상 기준금액을 가구소유 총자산에서 부채액을 공제한 순자산액으로 9억원을 설정한 후 15억원과 30억원으로 높이는 경우를 상정한다. 자가점유주택, 즉 주택소유자 중 자기 소유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들에 대해서 주택평가액의 30%를 공제한 70%에 대해서만 총자산합산에 포함시키는 안을 생각하는 이유는 프랑스의 ISF에서 채택했던 방식이기 때문이다.

〈표 IV-7〉은 2011년 가계금융조사 표본가구들을 대상으로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및 실물자산까지 포함한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순부(순자산)를 계산한 후, 이를 과세표준으로 다양한 기준금액, 공제제도, 세율체계를 상정하여 도출한 납세자비율, 추정세수액, 소득분위별 세부담을 정리하고 있다. 순자산 9억원 초과대상가구(순부유세 I), 순자산 9억원 초과대상가구 중 자가점유주택에 대해서는 70%의 과세평가액만 포함하는 경우(순부유세 I'), 순자산 15억원 초과대상가구(순부유세 II), 순자

산 30억원 초과 대상가구(순부유세 Ⅲ)에 대해 1%의 정률세율을 부과하는 경우와 9억원 초과 순부 소유자에 대한 3단계 초과누진세율과세(순부유세 Ⅳ)를 부과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자가점유주택에 대해서는 30% 평가액감면을 하는 경우이다.

1%의 정률세율 이외의 1.5%나 0.75%라는 정률세율을 가정할 경우는 대상가구의 수는 동일하면서 추정세액만 50% 증가 또는 25%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순부유세 I안의 경우 과세대상가구 수는 557가구(전체 가구로 환산하면 91.8만가구)에 대한 평균세액 801만원 과세는, 기존의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가구로 추정되는 255가구에 대한 평균 114만원보다 매우 높게 나타난다. 순자산 대비 실효세율 비율도 주택종부세 포함 보유세에 대한 0.32% 보다 0.5%로 상승한다. 세수는 7조 3,568억원으로 추정된다. 소득분위별 세부담 분포를 살펴보면, 순자산 대비 종부세 등 실효세율 분포보다 고소득계층으로 올라갈수록 높아져서 누진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물론 순부를 과세대상으로 1%의 정률세율을 적용하였을 뿐인데도 제3소득계층을 제외하고²⁵⁾ 순자산 대비 실효세율은 0.24%에서 0.34%로 증가한다. 경상소득 대비 세부담액이 소득 1, 2, 3분위에서 과도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부각된다.

순부유세 I'안은 9억원 순자산을 기준금액(threshold)으로 사용하지만 자가점유주택가액에 대해서는 30% 공제를 해 주는 방안이다. 대상가구 수는 427가구(전체가구 70만가구)로 23% 정도 줄어들고 세수도 15% 줄어든 6조 2,193억원으로 추정된다. 소득분위별 순자산 대비 순부유세 실효세율은 0.25%에서 0.34%로 증가하나, 1, 2, 3소득분위 계층의 연간경상소

25) 본 연구에서 사용한 2011년 귀속분 가계금융조사상의 표본가구를 소득분위별로 구분하였을 때 제3소득분위에 속한 3개 가구의 경우 경상소득 2,500만원, 3,000만원, 3,200만원이면서 순자산액은 50.1억원, 43억원, 64.7억원으로 매우 특이한 관찰치들임. 이들을 이상관찰치(outliers)로 제외시키지 않고 포함시킴에 따라 종부세납세추정 가구 255가구들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순부유세 대안별 분석에서도 제3소득분위에 속하는 표본가구 수들이 적을수록 이들 가구들의 영향이 크게 나타남.

IV. 부유세로서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평가 73

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I안에 비해 완화되었으나 51%, 24%, 29%에 달해 세부담 상한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8〉은 순부유세의 대안별 세수추계액을 나타내고 있는데,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안의 경우에도 기준금액을 9억원으로 설정한 대안 I과 동일한 과세대상가구 범위로 나타나며, 다만 납세자가구에 대해 추정세액은 7조 3,433억원으로 1% 정률세율인 경우와 대동소이하다. 그 이유는, 9억~15억원 구간의 0.75%, 15억~30억원 구간의 1%, 30억원 초과 구간의 1.5%에 해당하는 3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 대안 IV가 9억원 초과에 대한 1% 정률세율을 적용하는 대안 I과 15억원 초과에 대한 1% 정률세율을 적용하는 대안 II의 중간인데 9억~15억원 구간의 0.75% 저세율적용에 따른 세수감소 정도 못지않게 30억원 초과에 대한 1.5% 고세율적용의 효과도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대안 IV와 같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할 경우 소득분위별 세부담분포는 순자산 대비 실효세율 측면에서 제3소득분위를 제외하고는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0.19%에서 0.31%로 누진성이 강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²⁶⁾.

[그림 IV-3]은 앞에서 설명한 Suits 지수를 통한 조세의 누진·비율·역진성 분포를 이상에서 설명한 순부유세 대안별로 살펴본 것인데, 현행의 종부세 등 조세부담보다 보다 누진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Suits 지수값도 0.30, 0.38, 0.50으로 증가하여 순부유세가 소득 기준 분배효과가 기존의 주택분 종부세보다는 더 누진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26) 전술한 제3소득분위 내의 3개 관찰치를 제거할 경우 순자산 대비 실효세율이 0.27로 하락함.

〈표 IV-7〉 순부유세 대안별 시뮬레이션 결과

(단위: 가구, 만원, %)

구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대상 가구수	전체표 본대비 비중	평균	대상 가구수	평균	대상 가구수	평균	대상 가구수	평균	대상 가구수	평균	대상 가구수	평균
I. 순자산9억원 초과	557	5.3	801.1	19	365.0	34	377.5	50	917.3	98	667.8	356	889.0
	557		0.34	19	0.24	34	0.24	50	0.40	98	0.33	356	0.34
	553		11.97	15	44.70	34	22.06	50	29.83	98	13.38	356	6.53
I'. 순자산 - 9억원 - 자가거주 주택 가액 30%	427	4.1	883.4	11	418.2	24	391.7	44	880.0	70	772.9	278	977.7
	427		0.33	11	0.25	24	0.22	44	0.37	70	0.35	278	0.34
	424		12.56	8	51.44	24	23.61	44	28.56	70	15.42	278	6.89
I''. 순자산 - 9억원 - 자가거주 주택 가액 30%(소득고려)	427	4.1	780.0	11	178.1	24	304.4	44	678.5	70	695.7	278	887.8
	427		0.32	11	0.11	24	0.19	44	0.33	70	0.33	278	0.33
	424		10.50	8	28.32	24	17.77	44	21.84	70	13.96	278	6.42
II. 순자산15억원 초과	230	2.2	1,128.6	4	430.1	7	511.9	25	898.2	41	738.9	153	1,352.9
	230		0.31	4	0.22	7	0.22	25	0.29	41	0.25	153	0.34
	230		13.83	4	46.75	7	32.06	25	29.25	41	14.41	153	8.67

정
률
세
율
(1%)

IV. 부유세면세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평가 75

〈표 IV-7〉 계속

구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대상 가구수	전체표 본대비 비중	대상 가구수	평균	대상 가구수	평균	대상 가구수	평균	대상 가구수	평균	대상 가구수	평균
	(단위: 가구, 만원, %)											
III. 순자산30억원 초과	49	0.5	-	-	-	-	3	2,267.1	4	1,231.5	42	1,970.2
- 순자산 대비 실효세율	49		-	0.26	-	-	3	0.41	4	0.25	42	0.25
- 경상소득 대비 세부담	49		-	16.56	-	-	3	76.78	4	22.33	42	10.11
IV. 순자산 - 9억원	557	5.3	19	799.6	34	307.8	50	894.2	98	614.7	356	916.9
- 순자산 대비 실효세율	557		19	0.30	34	0.19	50	0.35	98	0.28	356	0.31
- 경상소득 대비 세부담	553		15	11.13	34	18.09	50	29.20	98	12.21	356	6.37
IV'. 순자산 - 9억원 - 자가거주 주택 기액 30%	427	4.1	11	877.0	24	321.4	44	832.8	70	709.1	278	1,003.0
- 순자산 대비 실효세율	427		11	0.29	24	0.18	44	0.32	70	0.30	278	0.30
- 경상소득 대비 세부담	424		8	11.59	24	19.50	44	27.01	70	14.02	278	6.68
IV''. 순자산 - 9억원 - 자가거주 주택 기액 30%(소득고려)	427	4.1	11	716.1	24	252.4	44	582.8	70	599.8	278	834.9
- 순자산 대비 실효세율	427		11	0.27	24	0.15	44	0.28	70	0.27	278	0.29
- 경상소득 대비 세부담	424		8	9.23	24	14.85	44	18.76	70	11.99	278	5.83

주: 1. 3단계 초과누진세율 과표구간 및 세율은 9억~15억원, 15억원, 30억원, 30억원 초과에 대해 각각 0.75%, 1%, 1.5%임.

초과누진세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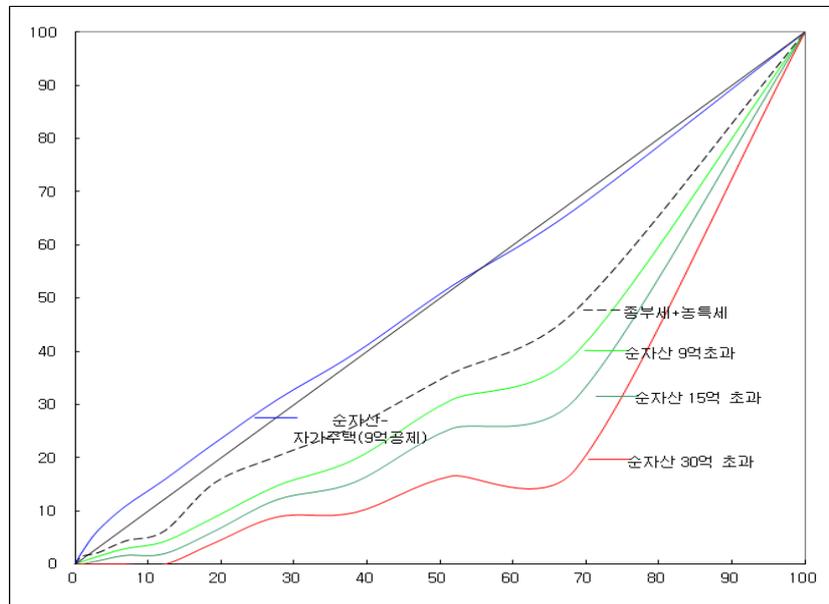
〈표 IV-8〉 순부유세 대안별 세수추계액

(단위: 가구 수, 만원)

	전체가구 환산	추계액
순자산 9억원 초과 (대안 I)	918,328.2	735,679,425.9
순자산 9억원 초과 (자가거주주택 가액 30% I')	703,997.0	621,928,851.4
순자산 - 9억원 (자가거주주택 가액 30% I'' 소득고려)	703,997.0	549,152,460.1
순자산 15억원 초과 (대안 II)	379,202.0	427,971,129.1
순자산 30억원 초과 (대안 III)	80,786.5	153,873,249.1
순자산 - 9억 (대안 IV)	918,328.2	734,330,123.0
순자산 - 9억 (자가거주주택 가액 30% IV')	703,997.0	617,388,502.5
순자산 - 9억 (자가거주주택 가액 30% IV'' 소득고려)	703,997.0	504,153,752.4

[그림 IV-3] 순부유세 대안별 Lorenz 곡선 및 분배효과
(2011년 가계금융조사)

(단위: %)



V. 결론

세계 금융위기에 이어 2010년부터 유럽 등 재정위기 국가들에서 공공 부문 부채위기가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과거 '최적조세이론'이 제시했던 '0의 한계세율' 제안이 옳은 것이었는가에 대한 반론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과연 노동(근로)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을 어떻게 설계하고, 자본소득은 어떻게 과세해야 하는가에 대해 '최적조세이론' 관점에서 새로운 연구들이 부각되고 있다²⁷⁾. 고소득자들에 대한 개인소득세 최고한계세율을 높이거나 자본이득에 대한 우대세율 혜택을 축소하자는 세계개혁 방향이 미국, 영국 등을 중심으로 큰 호응을 받는 다른 한편에서는 '부'라는 저량 그 자체에 대한 부유세의 부활 또는 신설을 통해 세수증대적 세계개혁 움직임이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과거 순부유세를 오랜 기간 운영했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채택했던 순부유세의 제도적 특성들을 확인하고 기존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형태로 우리나라에서의 도입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먼저 부유세는 투기억제의 수단도 아니고, 부자를 못살게 굴기 위한 세금도 아니었음이 확인된다. <표 III-4>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면세점을 그다지 높지 않게 설정할 경우 중산층도 부유세를 낼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는 것이 유럽 국가들의 현 부유세 제도의 실상이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나 스위스의 경우 4인가족 기준 평균가구소득의 50~73% 수준으로 까지 부유세 면세점을 낮게 설정할 경우 납세의무자의 범위는 매우 넓게 나타난다. 따라서, 부유세 도입의 타당성은 현행 조세체계하에서 발생·실현되고 있는 자본이득(배당·이자·임대 등), 자산소득 그리고 재산보유에 대한 각종 조세에 대한 공평성 및 비효율성 측면의 문제점에 대한

27) Diamond & Saez(2011) "The Case for a Progressive Tax," CESifo WP.

인식에서부터 판단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누진세율구조가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총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이 15%에 불과한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낮은 납세자비율²⁸⁾에 기인하며 이에 따라 개인소득세의 소득재분배효과가 낮게 나타난다. 즉, 세전소득분포의 지니계수에 비해 세후(가처분)소득분포의 지니계수가 별로 낮아지지 않는다(예, 2009년 경우 0.32952 → 0.31923). 우리나라 개인소득세제를 큰 틀에서 세계개편하지 못할 경우 소득세보완론적(순)부유세를 도입하는 접근방법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더욱이 복지와 같이 특정분야 정부지출 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세로서 부유세 도입을 검토한다거나, 국가채무나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세입증대 목적으로 부유세를 신설하려 한다면,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자산 등 과세베이스(tax base) 범위는 상당히 넓게 설정될 수밖에 없는데, 2000년대 중반 프랑스에서 나타났듯이 특정 자산시장의 가격급등으로 시가평가가액이 늘어나 과세대상 인원이 급격히 늘어나 선거때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되기도 한다.

‘특정한 지출용도를 위한 재원조달수단(funding source)’을 제외한다면, 부유세 부과를 통해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가? ‘부의 재분배’ 대 ‘소득의 재분배’ 중 어느 것인가? 만일 후자가 목표라면 그리고 (몇 차례의 경제위기 이후의) 세전 및 세후 소득의 격차가 보다 악화되었고 이것이 현행 조세들의 소득재분배 기능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부유세 검토는 조세개혁(tax reform)을 위한 정책논의로서 적절한 시의성과 대안성을 가질 수 있다. 즉, ① 재산에 대한 공적 과세평가체계의 획기적인 개선, ② 부동산시장에서의 실지거래가액 확보, ③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개편, ④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⑤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의 정상화 등 재산관련 조세제도 및 행정 전반에 대한 개편 노력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기존의 틀 내에서 모색된 접근방법들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28) 2009년 기준 종합소득세의 과세자비율은 71.7%, 근로소득세의 과세자비율은 59.8%로 많이 상승하였으나, 2005년 이루어진 대폭적인 소득공제 확대의 영향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의 부 및 자산의 소유분포 현황 및 변화추이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교정하기 위해 부유세를 부과한다는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부유세 부과를 통해 부의 분포구조를 직접적으로 교정하는 데 따른 헌법상 재산권 문제나 해외 자산도피와 같은 조세회피 문제 등을 극복해야 한다. 또한 과세기술적인 문제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사안으로 부유세라는 '정기적 보유단계 재산과세'가 갖는 기본적인 한계인 재산평가(valuation) 및 납부세액 확보(liquidity) 문제에 대해 해답이 전제되어야 한다. 만일 우리나라가 부유세 시행국들의 자진 신고납부 방식을 따른다면, 이는 마치 우리나라의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를 부유세 납세의무자의 범위로까지 확대하는 상황과 마찬가지로인 셈이 된다²⁹⁾. 부유세를 도입하여 운영하다가 1990년대 이후에 폐지한 4개국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과세대상 자산의 평가균일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지와 국제자본주의(global capital market)하에서 증대된 자본의 이동성을 자국의 국제경쟁력과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일 것이다.

또한 바람직한 소득세는 '잠재적 소비'(=실제소득+순자산가치 증가분)를, 소비세는 실제소비액을, 부유세(wealth tax)는 누적된 저축합계액(가치)을 즉, 누적된 잠재적 소비능력에서 누적된 실제소비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 부의 원본잠식이 없는 '가치증가분'의 누적액과 실제소득 중 소비하지 않고 저축한 누적저축액의 합계가 한 시점에서의 순부(net wealth)라면, 부유세 도입은 최소한 개인소득세, 자본이득세, 저축에 대한 개인소득세로서의 과세대우, 그리고 상속·증여세 및 일반 지방재산세들에 대한 과세 문제와 동시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부유세의 신규 도입 및 이에 따른 기존 세제의 개편 문제는 한 나라의 전체적인 조세체계 내에서 개인의 부와 이로부터 창출되는 소득, 그리고 소

29) 우리나라에서 신고납부주의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는 종합소득세의 총납세의 무자 수는 2002년 경우 416만명이나 그 절반 정도인 49.2%에 해당하는 204만명 정도가 신고대상 과세인원이고, 이 중 92만명 정도만이 기장에 의한 신고이므로, 유럽식 부유세 부과를 위해 신고납부능력이 축적된 납세자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은 편임.

득으로부터 축적되는 부의 변화라는 순환과정에 대해 어떠한 과세적 관점을 갖느냐, 그리고 어떤 형태의 부 및 소득에 대한 과세가 우리나라의 조세 목적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과세베이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에 기초하여 기존 조세인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세 재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모두 손보게 되는 세제개혁적 측면에서 추진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부유세 부과를 위한 세정인프라가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세원관리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고려사항이다. 과세당국에 포착되는 주요 가계자산 중 토지는 인별소유 상황이 1991년 토지공개념 세제 구축 이후 20년 가까이, 그리고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후 5년여 동안 축적되어 포괄범위가 넓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자산도 단독주택 및 상업용 수익건물의 부속토지의 과소평가 문제 등 타 부동산들과 평가 균일성(assessment uniformity) 측면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은 실정이다. 고가 서화 및 골동품 등에 대한 현행의 기타소득을 통한 자본이득과세는 여전히 거래시장을 통한 시가 파악이나 소유 현황이 불모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금융자산의 경우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지 20년에 이르지만 배우자나 자녀명의를 통한 분산소유가 일반화되어 있고, 금융자산의 소유실태 및 분포에 대한 모집단 정보도 미비한 상황이다.

부유세는 납세의무자의 국내 및 해외에 소유한 자산들도 포함하게 되는데, 내국거주자의 해외부동산 및 해외금융자산 소유 현황 파악 또한 외환당국이나 국세청에 이미 노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2003년부터 투자목적용 취득이 허용된 이후 미화 300만달러로까지 확대되어 분기별로 외환송금정보가 한국은행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는 건들에 국한해서만 파악될 뿐, 구입자금용 해외송금이 과세당국에 노출되지 않는 '환치기'를 통한 취득부동산들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한 거주자가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도 2011년 6월부터 도입되었으나, 신고실적을 살펴볼 때 과거 미신고 해외원천소득을 새로이 신고한 건수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산반출

과정이 불투명했던 납세자들에 대한 양성화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일반국민과 유권자들의 소득 및 부의 평등도에 대한 실제와 인식 간의 차이³⁰⁾, 현행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세부담 분포에 대한 학계의 실증적 연구나 바람직한 수준에 대한 이론적 연구, 그리고 사회구성원 간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분배적 조세정책이 추구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정치적 수용성 측면에서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유세의 도입은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조세로 그 성격을 설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많은 기초연구가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2005년 도입되어 2차례 이상의 주요 개정을 거친 종합부동산세 중 주택분 중부세는 '만들어지는 부동산'인 주택에 대한 외형과세가 민간주택자본형성에 미치는 경제적 비효율성 효과 때문에 개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30) Alesina 등(2003)은 한 나라의 조세체도가 얼마나 재분배기능을 중시하느냐는 소득이나 부의 불균등분포의 실상(reality)보다는 인식(perception)에 좌우된다고 함. 그 결과 조세의 재분배기능에 대한 요구는 그 사회에 속한 구성원들이 '느끼는(perceived)' 소득불공평 정도에 달려 있다는 것임. 유럽 국가들이 보다 강한 소득재분배정책을 위하여 보다 누진적인 조세체도를 갖게 된 것은 그들 국가의 국민들이 소득분포가 운이나 정경유착 등에 의해 불공평하게 나타난 것으로 느끼기 때문이고, 반면 미국에서의 재분배정책이 과거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이유는 미국민들은 소득격차가 개인별 노력과 능력의 결과라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임. 즉, 국민들이 공평성 및 형평성을 선호하는 것은 나라별로 큰 차이가 없지만 현상에 대한 인식이 결국 조세제도 및 공공정책에 대한 상이한 요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임.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개인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의 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률 통계분석자료 관련」, 보도참고자료, 2008. 10. 10.
- 김경환·김준형·조무상, 「우리나라 재산보유세 부담수준의 분석」, 2012년 한국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12. 9. 8.
- 노영훈, 「부유세와 소득 및 자산관련 조세개혁방안」, 『재정포럼』, No. 191, 한국조세연구원, 2012. 5.
- _____, 『글로벌 금융위기와 주택시장: 조세·재정정책적 함의』, 연구보고서 11-04, 한국조세연구원, 2011.
- _____, 『종합부동산세의 쟁점사항과 향후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업무회의 발표자료, 2005. 1. 28.
- _____, 『토지세강화정책의 경제적 효과 : 종합토지세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04-11, 한국조세연구원, 2004.
- _____,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 비교연구』, 정책보고서 02-12, 한국조세연구원, 2002.
- _____, 「종합토지세의 시행경험과 평가」, 『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1999.
- _____, 「순부유세와 그 조세정책적 의의」, 『재정포럼』, No. 6, 한국조세연구원, 1996. 12.
- _____, 「다주택보유 재산세 강화에 따른 세부담 측정 및 예상효과 분석」, 『재정금융연구』, 제2권 제1호, 한국조세연구원, 1995. 6, pp. 1027~1057.
- 노영훈·김현숙, 『소득과 주택자산 소유분포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05-06, 한국조세연구원, 2005. 12.
- 이성욱·현진권, 「토지와세 공시지가 전환에 따른 토지관련 지방세제 개편방향」, 『토지·주택관련 지방세제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지

방세계 공청회 자료, 1993. 12, pp. 7~49.

- Alesina, Alberto, and George-Marios Angeletos, "Fairness and Redistribution : U.S. versus Europe," *NBER Working Paper* No. 9502, 2003.
- Alvaredo, F. and E. Saez, "Income and Wealth Concentration in Spain in a Historical and Fiscal Perspective," *Journal of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Vol. 7, 2009, pp. 1140~1167.
- Bach, Stefan, Martin Beznoska and Viktor Steiner, *A Wealth Tax on the Rich to Bring down Public Debt?*, Berlin, Germany, 2011.
- Banting, Keith G., "The Politics of Wealth Taxes", *Canadian Public Policy*, Vol. 17, No. 3, 1991, pp. 351~367.
- Bird, Richard M., "The Taxation of Personal Wealth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Canadian Public Policy*, Vol. 17, No. 3, 1991, pp. 322~334.
- Brown, Rebert D., "A Primer on the Implementation of Wealth Taxes", *Canadian Public Policy*, Vol. 17, No. 3, 1991, pp. 335~350.
- Burbidge, John, "The Allocative and Efficiency Effects of Wealth Taxes", *Canadian Public Policy*, Vol. 17, No. 3, 1991, pp. 264~278.
- Câmara Francisco de Sousa da and Nuno de Oliveira Garcia, "Portugal Approves First Stage of Wealth Tax Reform", *Tax notes international*, 2003.
- Diamond, Peter A., and E. Saez, "The Case for a Progressive Tax: From Basic Research to Policy Recommendations", *CESifo Working Papers* No. 3548, 2011.
- Davies, James B., "The Distributive Effects of Wealth Taxes", *Canadian Public Policy*, Vol. 17, No. 3, 1991, pp. 279~308.
- Durán-Cabré, José MA and Alejandro Esteller-Moré, "Tax Data For

- Wealth Concentration Analysis: An Application To Spanish Wealth Tax”, *Review of Income & Wealth*, Vol. 56, No. 3, 2010, pp. 620~631.
- Glennerster, Howard, *A Wealth Tax Abandoned: The role of the UK Treasury 1974-6*, London school of social economics, 2011.
- IBFD, *European Tax Handbook*, 각 연도.
- _____, *Taxation of Individuals in Europe* 2011, 2011.
- Institute de l'entreprise, *Wealth Tax in Europe : Why the Decline?*, Paris, France, 2004.
- Kessler, Denis and Pierre Pestieau, “The Taxation of wealth in the EEC: Facts and Trends”, *Canadian Public Policy*, Vol. 17, No. 3, 1991, pp. 309~321.
- Klevmarken, Anders N., “On the Wealth Dynamics of Swedish Families 1984-1998,” Working Paper, Upsala University, 2001.
- Lindholm, Richard W., “The Constitutionality of a Federal Net Wealth Tax: A Socioeconomic Analysis of a Strategy Aimed at Ending the Under-Taxation of Land,”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Vol. 43 No. 4, 1984, pp. 451~454.
- Ministè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 “Impô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 2012”, 2012.
- Mintz, Jack M. and Jams E. Fesando, “Wealth Taxation in Canada: An Introduction,” *Canadian Public Policy*, Vol. 17, No. 3, 1991, pp. 227~236.
- Mintz, Jack M., “The Role of Wealth Taxation in the Overall Tax System,” *Canadian Public Policy*, Vol. 17, No. 3, 1991, pp. 237~247.
- OECD, *Revenue Statistics of OECD Member Countries*, 각 연도.
- _____, OECD.Stat Extracts(<http://stats.oecd.org/index.aspx>).
- Ristea, Luminita and Adina Trandafir, “Wealth Tax Within Europe

In The Context Of A Possible Implementation in Romania-The Existing Wealth Tax its Decline in Europe,” *Annals of the University Petrosani, Economics*, Vol. 10, No. 2, 2010, pp. 299~306.

Ro, Younghoon, “Land Value Taxation in South Korea,” *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 Working Paper* WP01YR1, 2001.

Silfverberg, Christer, *The Swedish Net Wealth Tax - Main Features and Problems*, Stockholm institute for Scandinavian law, 2009.

Suits, Daniel B., “Measurement of Tax Progressivit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7, No. 4(Sep. 1977), pp. 747~752.

Tikka, Kari, *Progressivity: A Waning or Disappearing Feature in Income Taxation?* International Studies in Taxation: Law and Economics, Liber Amicorum Lief Muten, Series on International Taxation No. 21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Gjems-Onstrad, Ole, *Beyond Progression - Taxation of the Very Rich*, Tax Reform in the Nordic Countries, 1973~1993 Jubilee Publication from the Nordic Council for Tax Research, Publication Series(NSFS) No. 30, 1993.

〈부록〉

〈부표 1〉 개인소득세의 총조세수입 대비 비율의 국제비교(2008년 기준)

(단위: %)

	1980	1985	1990	1995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뉴질랜드	61.6	60.5	48.0	45.0	43.1	43.1	41.9	41.0	41.1	40.7	42.1	41.9
미국	39.1	37.8	37.1	35.8	41.9	37.8	35.3	34.2	35.1	36.5	38.1	37.9
캐나다	34.1	35.2	40.8	37.5	36.8	35.3	34.6	35.0	35.6	36.3	37.4	37.3
호주	44.0	45.2	43.0	40.6	37.8	38.4	38.5	40.2	39.8	37.4	36.7	36.6
일본	24.3	24.7	27.8	22.4	21.1	18.4	17.5	17.8	18.3	18.5	19.6	32.6
영국	29.4	26.0	29.3	28.7	29.3	29.8	28.7	28.6	28.6	28.6	30.1	29.9
독일	29.6	28.7	27.6	27.5	25.3	25.1	23.9	22.8	23.3	24.5	25.1	26.8
프랑스	11.6	11.5	10.7	11.4	18.0	17.3	17.5	17.0	17.3	17.5	17.1	17.4
한국	11.5	13.4	21.1	19.2	14.6	12.8	12.7	13.6	13.3	15.2	16.7	15.0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각 연도.

〈부표 2〉 2010년 가계금융조사와 센서스상의 점유형태별 주택소유 비교

(단위: 천가구, %, %p)

연도 점유유형	2005년 센서스			2010년 가계금융조사			2010년 센서스			증감 (B-A)
	타지주택소유		비율 (A)	타지주택소유		비율	타지주택소유		비율 (B)	
	가수	비율		가수	비율		가수	비율		
일반가구	15,887	1,794	11.3	10,000	1,270	12.7	17,339	2,682	15.5	4.2
자 가	8,828	1,047	11.9	5,843	704	12.0	9,390	1,443	15.4	3.5
전 세	3,557	505	14.2	2,045	419	20.5	3,766	827	21.9	7.7
월 세	2,728	149	5.4	1,476	88	6.0	3,490	297	8.5	3.1
사글세	284	14	5.0	192	6	3.1	230	17	7.4	2.4
무 상	490	79	16.2	444	53	11.9	464	99	21.3	5.1

주: 2010년 가계금융조사의 가구수 단위는 '천가구'가 아닌 '가구'

〈부표 3〉 소득 및 순자산 불평등도 변화

	2006년 가계자산조사	2010년 가계금융조사	2011년 가계금융조사
경상소득	0.36819	0.44323	0.45899
순자산	0.65229	0.65448	0.64361

〈부표 4〉 2010년 가계금융조사 표본가구의 주택 소유 및 점유 현황

(단위: 가구)

점유유형	소유현황	거주 주택만 보유	비거주 주택 보유 가구					계	
			계	1채	2채	3채	4채		5채
자가점유 (Owner-Occupied HH)		5,101	738	677	49	8	2	2	5,839 ¹⁾
임 차				544					586 ²⁾
	전세	-		401	29	1	0	0	431
	보증금 있는 월세	-		89	2	1	0	0	92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		5	1	0	0	0	6
	기타 (무상주택, 무상사택 등)	-		49	7	1	0	0	57
주택소유 가구 계		5,101	1,324	1,221	88	11	2	2	6,425
무주택소유 임차가구									3,575
총계									10,000

주: 1) 거주주택을 소유한 5,839 자가거주 가구는, 거주주택만 소유한 5,101가구와 거주주택 이외에도 비거주 타지 소재 주택을 소유한 738가구로 구분됨.

2) 현재 거주하는 주택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차하면서 타지에 주택을 보유한 586가구를 소유주택 채수별로 구분함.

1. 2채 이상 다주택소유 780 가구는 자가거주주택을 포함한 타지주택소유가구 738가구에 임차가구이면서 타지에 2채 이상의 비거주주택을 소유한 가구들인 42가구의 합계임.

2. 3채 이상 다주택소유 가구는 64가구(=61+1+1+1), 4채 이상 다주택소유 가구는 12가구(=8+2+2), 5채 이상 다주택소유 가구는 4가구(=2+2), 6채 이상 다주택소유 가구는 2가구(거주주택 포함)임.

〈부표 5〉 2010년 기계금융조사 소득 5분위별 자산 분포

(단위: 가구, 만원, %)

	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표본 수	평균	표본 수	평균	표본 수	평균	표본 수	평균	표본 수	평균	표본 수	평균
자산총액	10,000	27,684.1	1,942	11,138.4	1,955	15,089.2	1,972	19,856.7	1,981	29,092.5	2,150	63,228.7
부동산평가액	10,000	21,017.8	1,942	9,283.7	1,955	11,769.5	1,972	14,595.0	1,981	21,371.0	2,150	48,058.5
거주주택+타지주택	10,000	14,809.3	1,942	6,428.3	1,955	8,400.4	1,972	11,498.6	1,981	16,210.7	2,150	31,501.2
거주주택	10,000	11,569.1	1,942	5,606.0	1,955	7,287.2	1,972	9,283.3	1,981	12,700.6	2,150	22,964.0
타지주택	10,000	3,240.1	1,942	822.3	1,955	1,113.2	1,972	2,215.3	1,981	3,510.2	2,150	8,537.2
기타부동산	10,000	6,208.6	1,942	2,855.4	1,955	3,369.1	1,972	3,096.4	1,981	5,160.3	2,150	16,557.3
기타실물자산	10,000	780.3	1,942	108.3	1,955	344.2	1,972	613.3	1,981	882.6	2,150	1,952.9
금융자산	10,000	5,885.9	1,942	1,746.4	1,955	2,975.5	1,972	4,648.4	1,981	6,838.9	2,150	13,217.3
저축액	10,000	4,143.1	1,942	1,085.2	1,955	1,775.5	1,972	2,873.7	1,981	4,507.8	2,150	10,470.7
전월세보증금	10,000	1,742.8	1,942	661.2	1,955	1,200.0	1,972	1,774.7	1,981	2,331.1	2,150	2,746.7
부채총액	10,000	4,618.3	1,942	1,209.6	1,955	2,221.0	1,972	3,359.5	1,981	4,786.7	2,150	11,511.8
금융부채	10,000	3,150.6	1,942	819.0	1,955	1,506.8	1,972	2,222.9	1,981	3,261.2	2,150	7,941.3
임대보증금	10,000	1,467.7	1,942	390.6	1,955	714.2	1,972	1,136.6	1,981	1,525.5	2,150	3,570.6
순자산액	10,000	23,065.8	1,942	9,928.8	1,955	12,868.2	1,972	16,497.2	1,981	24,305.8	2,150	51,716.9
경상소득	10,000	3,772.9	1,942	679.2	1,955	1,812.2	1,972	3,000.1	1,981	4,546.9	2,150	8,824.2

〈부표 6〉 소득 10분위별 누적 소득과 누적 보유세 부담액(2011)

	경상소득	재산세+지방교육세 +재산세과세특례+ 지역자원시설세	증부세+농특세	보유세 전체	순자산 9억원 초과	순자산 15억원 초과	순자산 30억원 초과	순자산-자기주택 (9억원 공제)
1분위	648,505,304.00	13,577,234.86	597,518.86	14,174,753.71	4,543,798.43	277,008.51	0.00	83,704,874.50
2분위	1,556,496,528.00	20,056,148.11	273,035.71	20,329,183.82	9,126,401.75	2,998,736.61	0.00	151,800,618.00
3분위	2,629,272,995.00	24,740,840.59	881,974.18	25,622,814.77	13,450,906.26	5,091,450.57	0.00	168,320,642.00
4분위	3,765,219,837.00	24,792,510.58	748,433.55	25,540,944.12	12,330,187.07	1,650,086.43	0.00	185,338,283.00
5분위	4,852,083,787.00	31,050,864.38	3,612,756.51	34,663,620.90	41,560,169.92	21,224,868.84	7,230,008.41	255,561,852.00
6분위	6,040,700,966.00	37,498,963.62	1,975,857.17	39,474,820.79	54,454,187.28	29,380,309.46	8,537,972.40	302,662,625.00
7분위	7,465,576,468.00	44,573,926.93	2,253,405.44	46,827,332.37	45,262,163.18	16,471,602.03	1,466,188.22	322,233,831.00
8분위	9,269,469,177.00	57,246,981.41	3,918,988.42	61,165,969.83	101,679,444.00	49,906,043.55	12,120,140.76	465,621,045.00
9분위	11,929,546,379.00	66,880,153.97	4,712,057.10	71,592,211.08	79,417,740.32	27,827,515.62	2,332,384.69	537,480,438.00
10분위	22,047,043,878.00	118,576,240.00	20,765,043.37	139,341,283.00	551,763,545.00	342,692,297.00	145,144,464.00	1,228,631,186.00
전체	70,203,915,320.00	438,993,864.00	39,739,070.30	478,732,935.00	913,588,543.00	497,519,919.00	176,831,159.00	3,701,355,393.00

(단위: 만원)

〈부표 7〉 소득 10분위별 누적 소득과 누적 보유세 부담비율(2011)

(단위: %)

	경상소득	재산세+지방교육세+ 재산세과세특례+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 농특세	보유세 전체	순자산 9억원 초과	순자산 15억원 초과	순자산 30억원 초과	순자산- 자기주택 (9억원 공제)	분위
1분위	0.92	3.09	1.50	2.96	0.50	0.06	0.00	2.26	10.00
2분위	3.14	7.66	2.19	7.21	1.50	0.66	0.00	6.36	20.00
3분위	6.89	13.30	4.41	12.56	2.97	1.68	0.00	10.91	30.00
4분위	12.25	18.94	6.29	17.89	4.32	2.01	0.00	15.92	40.00
5분위	19.16	26.02	15.38	25.14	8.87	6.28	4.09	22.82	50.00
6분위	27.77	34.56	20.36	33.38	14.83	12.18	8.92	31.00	60.00
7분위	38.40	44.71	26.03	43.16	19.78	15.50	9.75	39.70	70.00
8분위	51.60	57.75	35.89	55.94	30.91	25.53	16.60	52.28	80.00
9분위	68.60	72.99	47.75	70.89	39.60	31.12	17.92	66.81	90.00
10분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Suits 지수(S_x)		-0.10	0.21	-0.07	0.30	0.38	0.50	-0.02	

VOTRE SITUATION DE FAMILLE

Célibataire.....	C	<input type="checkbox"/>	Concubins.....	N	<input type="checkbox"/>	Changement en 2011											
Marlés.....	M	<input type="checkbox"/>	Divorcé(e)/séparé(e).....	D	<input type="checkbox"/>	Date du mariage.....	<table border="1"><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Pacsés(es).....	O	<input type="checkbox"/>	Veuf(ve).....	V	<input type="checkbox"/>	Date du Pacs ou de sa rupture.....	<table border="1"><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Date de divorce/séparation.....	<table border="1"><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Date du décès.....	<table border="1"><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IDENTIFICATION DES ENFANTS MINEURS

Identité des enfants mineurs dont vous-même, ou votre conjoint, partenaire lié(e) par un Pacs ou concubin(e), êtes l'administrateur légal.

Nom Prénom Date de naissance

PROFESSION ET QUALITÉ

Vous

Votre époux(se), partenaire de Pacs ou concubin(e)

DÉCLARATION DE VOS BIENS

Pour procéder à la déclaration des biens, remplissez, en fonction des éléments de votre patrimoine, les différentes annexes prévues à cet effet. Si vous disposez d'un patrimoine taxable d'une valeur supérieure ou égale à 3 000 000 € et si vous possédez, à titre individuel ou dans le cadre d'une société,

des biens qualifiés de professionnels (cf. notice), exonérés et exclus du patrimoine taxable, remplissez le cadre ci-dessous en fonction des conditions d'exonération (1^o ou 2^o) et éventuellement l'annexe 3-1 (colonnes 9 à 12).

RENSEIGNEMENTS RELATIFS À LA QUALIFICATION DE VOS BIENS PROFESSIONNELS EXONÉRÉS

1 | EXONÉRATION LIÉE À LA SEULE CONDITION D'EXERCICE D'UNE ACTIVITÉ PROFESSIONNELLE À TITRE PRINCIPAL

Vous exercez cette activité :

— dans une entreprise individuelle..... — dans une société de personnes.....

— en tant que gérant majoritaire dans une SARL ou gérant dans une

société en commandite par actions (art. 62 du CGI) la rémunération des

fonctions exercées doit représenter plus de la moitié des revenus professionnels.....

Dénomination, adresse et activité de l'entreprise ou de la société ou des sociétés ayant des activités soit similaires, soit connexes et complémentaires

2 | EXONÉRATION LIÉE À LA FONCTION ET À LA POSSESSION DE DROITS SOCIAUX

(Gérant majoritaire statutaire, Président, Directeur général, Directeur général délégué, Président du conseil de surveillance ou membre du directoire d'une société par actions)

Dénomination, adresse et activité de la société ou des sociétés ayant des activités soit similaires, soit connexes et complémentaires

Fonction exercée la rémunération doit représenter plus de la moitié des revenus professionnels

Pourcentage du capital détenu dans la société par le redevable et les membres de son groupe familial

Directement Par l'intermédiaire d'une société interposée

Redevable Groupe familial Redevable Groupe familial

DÉTERMINATION DE LA BASE IMPOSABLE	
<small>Le symbole ☐ signifie que vous devez joindre vos justificatifs</small>	
1 ACTIF BRUT	
IMMEUBLES BÂTIS	
Annexe 1 : nombre de feuillets	☐
Résidence principale	AB ☐
Autres immeubles	AC ☐
IMMEUBLES NON BÂTIS, PARTS DE GROUPEMENTS FORESTIERS OU FONCIERS	
Annexe 2 : nombre de feuillets	☐
Bois, forêts et parts de groupements forestiers ☐	BC ☐ × 25% = BD ☐
Biens ruraux loués à long terme	BE ☐
• dont montant dans la limite de 101 897 €	☐ × 25% = BF ☐
• dont montant pour la fraction supérieure à 101 897 €	☐ × 50% = BG ☐
Parts de Groupements Fonciers Agricoles et de Groupements Agricoles Fonciers	BH ☐
• dont montant dans la limite de 101 897 €	☐ × 25% = BI ☐
• dont montant pour la fraction supérieure à 101 897 €	☐ × 50% = BJ ☐
Autres biens	BK ☐
DROITS SOCIAUX – VALEURS MOBILIÈRES – LIQUIDITÉS – AUTRES MEUBLES	
Annexes 3-1 et 3-2 : nombre de feuillets	☐
Parts ou actions détenues par les salariés et mandataires sociaux ☐	CL ☐ × 25% = CM ☐
Parts ou actions de sociétés avec engagement de conservation de 6 ans minimum ☐	CB ☐ × 25% = CC ☐
Droits sociaux de sociétés dans lesquelles vous exercez une fonction ou une activité	CD ☐
Autres valeurs mobilières	CE ☐
Liquidités	CF ☐
Autres biens meubles (dont contrats d'assurance-vie ☐)	CO ☐ ☐ = CG ☐
Montant des exonérations afférentes aux droits et titres ci-dessous :	
• Droits sociaux détenus à la suite d'un rachat d'entreprise par les salariés	CH ☐
• Droits sociaux détenus par le foyer fiscal dans une société interposée	CI ☐
• Droits sociaux constituant plus de 50% du patrimoine	CJ ☐
• Titres ou parts de FIP, FCPI ou FCPR reçus en contrepartie de la souscription au capital d'une PME	CK ☐
TOTAL DES IMMEUBLES ET DES BIENS MEUBLES	AB + AC + BD + BF + BG + BI + BJ + BK + CM + CC à CG = DE ☐
Forfait mobilier <i>Si les meubles meublants ont déjà été déclarés et intégrés à la ligne CG, inscrire « 0 », sinon, inscrire DE × 5 %</i>	EF ☐
TOTAL DE L'ACTIF BRUT	DE + EF = FG ☐
2 PASSIF ET AUTRES DÉDUCTIONS	
Annexe 4 : nombre de feuillets	☐
TOTAL DU PASSIF ET AUTRES DÉDUCTIONS ☐	GH ☐
3 ACTIF NET IMPOSABLE	
BASE IMPOSABLE	FG - GH = HI ☐

CALCUL DE VOTRE IMPÔT		
Amondissez chaque ligne à l'euro le plus proche		
1 : MONTANT DE L'IMPÔT AVANT RÉDUCTIONS		
– Cas général : impôt avant décade HI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 0,50% = HU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Si votre patrimoine est compris entre 3 000 000 € et 3 200 000 €		
vous bénéficiez de la décade suivante D = 120 000 – (7,5 × HJ) = HK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 Cas particulier : non-résidents dont le patrimoine est compris entre 1 300 000 € et 3 000 000 €,		
impôt avant décade HI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 0,25% = HO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Si votre patrimoine est compris entre 1 300 000 € et 1 400 000 €		
vous bénéficiez de la décade suivante D = 24 500 – (7 × HO) = HU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MONTANT DE L'IMPÔT AVANT RÉDUCTIONS HJ – HK ou HO – HU = LM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2 : RÉDUCTIONS <small>Le plafond global annuel des réductions cumulées pour investissements dans les PME et pour dons ne peut excéder 45 000 €.</small>		
Pour personnes à charge		
– Nombre de personnes	MN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 300 € = MP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 Nombre d'enfants en résidence alternée	MO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 150 € = MQ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Pour investissements dans les PME <input type="checkbox"/>		
– Directs dans une société	NE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 50% = MU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 Par sociétés interposées holdings	NF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 50% = MW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 Par le biais de FIP	MX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 50% = MY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 Par le biais de FCPI	NA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 50% = NB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Pour dons à certains organismes d'intérêt général établis en France <input type="checkbox"/>	NC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 75% = ND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Pour dons à certains organismes d'intérêt général établis dans un État européen <input type="checkbox"/>	NG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 75% = NH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MONTANT DE L'ISF APRÈS RÉDUCTIONS LM – MP – MQ – MU – MW – MY – NB – ND – NH = NP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3 : IMPUTATION DE L'IMPÔT SUR LA FORTUNE ACQUITTÉ HORS DE FRANCE		
Annexe 5 : nombre de feuillets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TOTAL DU MONTANT ACQUITTÉ HORS DE FRANCE RS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4 : MONTANT NET À PAYER DE VOTRE ISF NP ou (NP – RS) = ST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PAIEMENT DE VOTRE IMPÔT		
Imputation du droit à restitution (bouclier fiscal) TI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SOLDE DE L'ISF RESTANT À PAYER ST ou ST – TI = TR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MODE DE PAIEMENT DE VOTRE SOLDE D'ISF		
– Mode de paiement choisi : Chèque bancaire <input type="checkbox"/> Virement direct Banque de France <input type="checkbox"/> Autre <input type="checkbox"/>		
– Établissez le chèque bancaire à l'ordre du TRÉSOR PUBLIC sans autre indication		
CADRE RÉSERVÉ À L'ADMINISTRATION		
Date de réception et cachet du service	PRISE EN RECETTE Droits Pénalités N° Date	PRISE EN CHARGE Droits Pénalités N° Date

1. 2012년 프랑스 부유세(ISF) 해설

SOLIDARITY TAX ON CAPITAL

Notice to declare your ISF 2012 For taxable net worth greater than or equal to 3,000,000

It does not replace the official documentation of the administration

NEW 2012

The solidarity tax on wealth (ISF) was reformed in 2012:

- The tax threshold is set at € 1.3 million;
- The scale is modified with only two tax brackets and taxation of all assets from first euro;
- The cap is removed;
- The declaration is simplified for most taxpayers.

> Your taxable net worth is between € 1,300,000 and € 3,000,000, you are liable to wealth tax rate of 0.25%.

You report the amount of your assets and your net taxable tax cuts on your tax income¹, online or on paper, in the framework of the ISF return additional (2042 C) without joining annexes or documents.

You do more to complete a specific EWB.

To help you assess your taxable net worth, you can use the help sheet attached to this notice.

You will receive a notice of the end of August with the amount of tax you pay for ISF September 17, 2012.

> Your taxable net wealth is greater than or equal to € 3,000,000: you are liable to wealth tax rate of 0.50%.

You ISF filing your statement (No. 2725) with normal or simplified its annexes and supporting documents, accompanied by payment.

The deadline for filing your tax and its payment is 15 June 2012.

> If your taxable net worth is less than € 1.3 million, you are not liable to wealth tax and you have no statement to testify.

* * *

This manual gives you all the necessary details to report and pay your ISF 2012 when your net worth taxable is greater than or equal to 3 000 000 €. If your taxable net worth is between € 1,300,000 and € 3,000,000, you can download the declaration and the corresponding instructions and find all necessary information and documents

impots.gouv.fr on or get them from your local public finances.

1. Unless you do not live in France and have no income from French sources

The charter of the taxpay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axpayer and the tax administration based on the principles of simplicity, fairness and respect.

DECLARATION THAT APPLY TO YOU

IF YOUR NET WORTH IS TAXABLE OR ABOVE € 3,000,000 or you are non-resident and liable only ISF France, regardless the amount of your assets YOU FILE A DECLARATION OF ISF			
Y O U REPRESENT FOR THE FIRST TIME	Post a normal declaration (2725) and its annexes 1-5.		
YOU HAVE RECEIVED A STATEMEN T	You have received a statement EWB simplified (SK 2725) and its Additional simplified S1, S2 and S3.	In 2011, you do not pay tax wealth out of France, and on 1 January 2012, you have no property of the list below.	Complete and file EWB simplified declaration (2725 SK) you received and its annexes S1, S2 and S3
		In 2011, you have acquired a property the list below	Do not use the statement simplified EWB (2725 SK) but you received file a declaration of ISF Normal (2725) and its annexes 1-5.
		In 2011, you paid tax on capital outside France.	
	You have received a statement normal ISF (2725 K) and Annexes 1 to 5.	Complete and file this statement and its annexes.	

IF YOUR NET WORTH IS TAXABLE OR ABOVE € 1,300,000 AND LESS THAN € 3,000,000:
YOU ACKNOWLEDGE YOUR ISF WITH YOUR TAX RETURN

You declare your ISF with your tax return even if you * have received a declaration of ISF.

* Unless you are a non-resident without income from French sources and accountable only to the ISF in France: in this case, see below.

HOW TO COMPLETE STATEMENT?

TIPS

- You can download the normal declaration (2725) and its annexes or impots.gouv.fr you get from your center public finances.
- You received a pre-printed statement: In this case, you can use fillable form available on impots.gouv.fr or to use software specific. Do not forget to join the first page of your return at the pre-printed filing your return.

You will also find impots.gouv.fr assistance in completing your return:

- Two methodological sheets to assess your property;
- A model of engagement if the option to preferential treatment provided for wood and forests shares of forestry groups (2725-NOT-A);
- The table of coefficients for updating amounts collected for the repair of injury (2725-NOT-B);
- Table of discounting annuities unindexed (2725-C-NOT);
- Tables discounted annuities immediate fixed coverage (2725-NOT-D);
- Guide the evaluation of companies and corporate securities.

LIST OF GOODS FOR WHICH YOU MUST USE A STATEMENT NORMAL (NO2725 OR 2725K)

- Woods and forests and shares of forestry groups;
- rural property rented by long-term lease;
- share of agricultural land groups (GFA) or groupings agricultural land (GAF) non-farmers;
- units or shares with a commitment to conservation minimum of 6 years;
- units or shares in their company by employees and officers;
- social rights of qualified business property exempt:
 - Rights held following a buyout by employees
 - Rights held by the tax home in a company interposed,
 - Rights constituting more than 50% of assets;
- Shares or units of investment funds (FIP), mutual funds in innovation (FCIC) and commus fund investment risk (venture capital) exempt received in exchange for subscription to the capital of SMEs.

THE EXPLANATION THAT APPLY TO YOU AND YOUR reporting requirements

THE EXPLANATORY NOTES	statement and notes to fill
page	NET ASSETS TAXABLE* ABOVE OR EQUAL TO €3,000,000
	DECLARATION NORMAL
	DECLARATION SIMPLIFIED
Marital status, address, marital status	DECLARATION 2725 or 2725 K
Profession, professional property	DECLARATION 2725 or 2725 K
Taxable net assets	DECLARATION 2725 or 2725 K
EXEMPT PROPERTY	
business property	
Property necessary for the profession	
Social rights shares or equity	
rural property	
Other exempt property	
Antiques and collectibles	
Collection vehicles	
Royalties	
Annuities and allowances	
financial investments	
TAXABLE PROPERTY	
buildings built	APPENDIX S1
Undeveloped land	APPENDIX S1
Woods and forests and forestry groups share	APPENDIX 1
Rural property rented by long term lease	APPENDIX 2
Shares of GFA and GAF	APPENDIX 2

THE EXPLANATORY NOTES		statement and notes to fill
	page	NET ASSETS TAXABLE* ABOVE OR EQUAL TO €3,000,000
		DECLARATION
		SIMPLIFIED
social rights	13	APPENDIX S2
And other social securities	13	APPENDIX S2
cash	13	APPENDIX S2
Other movables	13	APPENDIX S2
Units or shares of companies subject a commitment to retain minimum of 6 years	14	
Shares held by employees and officers or retired	14	
deductible debt	17	APPENDIX S3
Special charge debt	17	APPENDIX S3
Non-deductible debt	17	APPENDIX S3
Theoretical calculation of the ISF	17	APPENDIX S3
CALCULATING THE AMOUNT OF TAX	18	DECLARATION 2725 SK
Wealth tax paid outside France	19	

* Or whatever the amount of your assets if you are non-resident and liable to wealth tax in France.

2725 Declaration SK: simplified declaration pre-identified

2725 K declaration: Declaration normal pre-identified

Declaration 2725: normal declaration

■ Filings (references given)

DECLARATION 2725 or 2725 K
APPENDIX 5

DECLARATION
NORMAL

APPENDIX 3-1
APPENDIX 3-1
APPENDIX 3-1
APPENDIX 3-1
APPENDIX 3-1
APPENDIX 3-2

APPENDIX 4
APPENDIX 4
APPENDIX 4
APPENDIX 4

DECLARATION 2725 or 2725 K

APPENDIX 5

WHO MUST MAKE A DECLARATION?

INDIVIDUALS ...

Each household is a single statement all property belonging to his members.

- The household income, within the meaning of the ISF, appointed by the term "taxpayer" in the instructions and reporting, can be:
 - a single person is single, widowed, divorced, separated;
 - spouses living under the same roof (regardless is the matrimonial regime);
 - partners bound by a civil solidarity pact(PACS);
 - a couple living in cohabitation

>> Cohabitation is a de facto union, characterized a municipality with a life stability and continuity between two persons of opposite sex or the same sex, living as a couple. >>

Are taxed separately:

- the spouses separate property and not living under the same roof;
- the spouse pending separation or divorce and allowed to have homes separated.

In all cases, the focus includes tax minor children (s) liable (s) has (have) the legal administration of property.

RESIDENTS IN FRANCE ... (FOR PROPERTY LOCATED IN FRANCE AND ABROAD) OR OUT OF FRANCE (FOR PROPERTY LOCATED IN FRANCE) ...

You are considered to have your tax domicile in France (mainland and overseas), regardless of your nationality, if:

- you have in France your home or location of your principal residence;
- you exercise a professional activity in France, employed or not, other than incidentally;
- you have in France the center of your economic interests;
- Agent State overseas, you are not subject in this country personnel tax on all your income.

THE OWNERS AND ... 1st January 2012 A NET ASSETS TAXABLE VALUE GREATER THAN OR EQUAL TO NET 1.3 million.

All taxable real and personal property, rights and assets belonging to the debtor, his spouse, his partner bound by a PACS or one partner, and their minor children when taxable persons have the legal administration of their property.

Details

You can subscribe the declaration on behalf of a taxpayer you are:

- The legal representative (guardian, curator ...)
- The agent;
- The heir (see special time, below).

In this case, you must attach documentary evidence of your status.

Individuals residing abroad

- Whatever their nationality - who transfer their tax residence in France, under certain conditions, may be taxed only on their property in France.

WHERE AND WHEN SHOULD YOU DO IF YOUR DECLARATION IS YOUR WEALTH NET TAXABLE OR ABOVE € 3,000,000?

PUBLIC FINANCE CENTER ...

- **If you have received a statement pre-labeled with your home (print n° 2727 SK or 2725 K)**

Send a copy before June 15, 2012 at the center of public finances (tax service for individuals or tax center) shown on your tax return, even if you have changed your address.

- **If you deposit a declaration for the first time (print n° 2725)**

Send a copy before June 15, 2012 in the service of personal income tax (or tax center) on which your home at 1 January 2012 (or that of the person on whose behalf you sign the declaration).

- **If you are a resident of the Principality of Monaco**

Whether you are or not domiciled in France for tax, you must send your return by 16 July 2012: Service tax individuals Menton 7, rue Victor Hugo, 06507 Menton Cedex

- **If your home is located outside France**

You must send your return before 31 August 2012 to the tax on non-resident:

10 Centre Street - TSA 10010 93465 NOISY-LE-GRAND Cedex

Email: @ sip.nonresidents dgfip.finances.gouv.fr

... WITH YOUR PAYMENT

- Payment can be made by check payable to the Treasury or by direct transfer to the Bank of France.
- You can pay the tax rebate works of art and collectibles or buildings in the intervention areas Conservatory coastal areas and lake shores or buildings in kind wood, forests or natural areas can be incorporated into the forest area of the state, under certain conditions.
- The payment by installments or deferred, or Treasury securities or sovereign debt is not allowed.

ANSWERS TO QUESTIONS THAT YOU

ANSWERS TO QUESTIONS THAT YOU ASK WHEN DO I PLACE MY STATEMENT FOR 2012 ISF?

The deadline for filing and payment is 15 June 2012.

I HAVE RECEIVED A STATEMENT ISF WHILE MY NET TAXABLE PROPERTY IS LESS THAN € 1.3 million. WHAT TO DO?

Branch finances sent you a report based on information available to it from your statement EWB 2011.

If your taxable net assets at January 1, 2012 is less than € 1.3 million, you are not liable to wealth tax and you have no declaration of ISF filing.

I HAVE RECEIVED A STATEMENT ISF WHILE MY NET ASSETS TAXABLE VALUE BETWEEN AND € 1,300,000 3,000,000. WHAT TO DO?

Branch finances sent you a statement ISF based on information available to it from your statement EWB 2011. If your taxable net assets at 1 January 2012 is between € 1,300,000 and € 3,000,000, you must declare your income with your ISF *.

You can declare your ISF online at the same time as your income and thus benefit from the additional time depending on the area of your principal residence.

You can also download a return additional C 2042 and its instructions on impots.gouv.fr or get them from your local public finances.

You must file this statement only, without any schedule or justification. The help sheet attached to the manual is intended to assist you in calculating your taxable income.

You do not have to return it to the tax authorities. It is advisable to use and keep them for later application administration.

I HAVE NOT RECEIVED STATEMENT ISF AND I AM LIABLE FOR ISF. WHAT TO DO?

If your taxable net worth is between € 1,300,000 and € 3,000,000, you report your income with your ISF. You can register online or download a return additional C 2042 and its instructions on impots.gouv.fr or get them from your local public finances.

If your taxable net wealth is greater than or equal to € 3,000,000, you can download a declaration of ISF normal (printed 2725) and its annexes on impots.gouv.fr or get them from your local finance ubliques. The deadline for filing and payment is 15 June 2012.

IN 2012, I BENEFIT FROM RIGHT TO REPAYMENT OF MY DIRECT TAXATION AS A FUNCTION OF INCOME. WHAT SHOULD I DO?

You are liable for the ISF and you have a right to restitution of direct taxes based on income for 2012.

You must allocate your tax debt on your amount of ISF due 15 June 2012 (reverse charge procedure). In this case, fill the box 5TI your statement and attach ISF during the filing and payment of ISF, printed No. 2041 DRBF. This form is available on impots.gouv.fr or from your local public finances.

I NOT RESIDENT IN FRANCE AND I DO NOT REMOVE STATEMENT OF INCOME 2042 N IN FRANCE. NET TAXABLE FOR MY HERITAGE PROPERTY LOCATED IN FRANCE IS INSIDE TO EXCEED € 1,3 million. WHAT TO DO?

You owe ISF France.

You must file an ISF normal or simplified (2725 or 2725 S), its Annexes and possibly your documents with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non-resident individuals no later than August 31, 2012 along with your payment.

I LIVES IN FRANCE, I AM AN ADULT AND ATTACHED TO MY PARENTS HOME TAX TAX ON INCOME AND I AM LIABLE FOR ISF. WHAT TO DO?

If your taxable net worth is between € 1,300,000 and € 3,000,000, you must file a tax return with additional 2042 C and specify your ISF under "ISF additional information" that, for income tax, you are attached to your tax home parents. You do not have to declare your ISF filing your parents.

If your taxable net wealth is greater than or equal to € 3,000,000, you must file an ISF 2725 Normal service with personal income tax (or tax center) of your home.

HOW TO COMPLETE DECLARATION

MARITAL STATUS

Your identity is wholly or partially pre-printed in the header and in the "Your marital status."

In this context, correct inaccurate statements or information provided register that have not been printed.

On (the) partner (s) must also register their civil status.

If your return is not pre-printed (Model No. 2725), indicate your marital status in the corresponding adopting the same order as your income tax return for 2011, without reversing the identity of persons listed in the left column and the right.

The (la) or PACS partner (the) partner (s) must also register their civil status.

ADDRESS

If the pre-printed address in the header is not your home on January 1, 2012, enter the correct address in the "Sender".

If your return is not pre-printed (Model No. 2725), enter your address on 1 January 2012 in the corresponding frame. If you moved in 2011, also include your address on 1 January 2011.

IDENTITY AND ADDRESS OF REPORTING IF IT IS NOT LIABLE

Check the box corresponding to your situation and explain your identity and address under "Identity and address of the declarant if it is not liable."

If your return is not pre-printed (Model No. 2725), check the box

corresponding to your situation and explain your identity and your address in the corresponding frame.

MARITAL STATUS

Your family situation is pre-printed in the "Your family situation."

If the situation described is inaccurate (marriage, civil partnership, divorce, break Pacs, separation, death in 2011), check in the box on page 2 for your marital status as of 1 January 2012.

If your return is not pre-printed (model 2725), check the box corresponding to your situation at 1 January 2012 and if necessary bring the details requested.

SIGNATURE

This statement must include your signature and that:

- Your spouse (e), if you are married (e);
- Your partner if you are related (e) by a PACS;
- Your partner (s), if you live in concubinage.

Where the declarant is not liable, it must be signed by the legal representative, heir or representative.

IDENTIFICATION OF MINOR CHILDREN

Specify under "Identification of minors" on page 2, the identity of the minor children including yourself or your spouse (e) partner or partner (s) are the legal administrator.

PROFESSION AND QUALITY

You must mention in the "Profession and quality," page 2, profession, quality and your spouse (e) partner or partner (s).

DISCLAIMER THE ONLY CONDITION RELATED TO EXERCISE AS A PRINCIPAL OCCUPATION (1, PAGE 2)

Check the box corresponding to your situation and specify the details as well as the activity of the business or company.

DISCLAIMER RELATED TO THE PUBLIC AND SOCIAL RIGHTS POSSESSION (2, PAGE 2)

Specify coordinates the activity of the society and the function performed as principal.

Fill in the appropriate columns and facing the coordinates of the society the percentage of shares held by each participant.

DETERMINATION OF NET ASSETS TAXABLE

YOU COMPLETE A SIMPLE STATEMENT (N° 2725 SK)

After postponing the amounts of Appendices S1 and S2 on page 3 of the declaration, apply if the furniture package from 5% to the line EF, where movables are not assessed in line CG Appendix S2. Totalize then lines DE and EF FG online.

See the amount of Appendix S3 on the line GH declaration on page 3. Then determine the taxable HI line that you used to calculate the amount of tax payable.

YOU COMPLETE A STATEMENT NORMAL (N° 2725 K OR N° 2725)

After postponing the amounts of Schedules 1 to 3-2 on page 3 of the declaration, apply if the furniture package from 5% to the line EF, where movables are not evaluated in the CG line of Schedule 3 -1. Totalize then lines DE and EF FG online.

Enter the amount of Schedule 4 to the line GH declaration on page 3.
Then determine the taxable HI line that you used to calculate the
amount of tax payable.

EXEMPT PROPERTY

PROPERTY PROFESSIONALS

PROPERTY NEEDED FOR THE YEAR AS PRINCIPAL IN THE FORM INDIVIDUAL OF A PROFESSION INDUSTRIAL, COMMERCIAL, CRAFT, AGRICULTURAL OR LIBERAL

These goods are exempt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1. The property must be used as part of an industrial, commercial, craft, agricultural or liberal. The activity in question must correspond to the actual exercise of a profession (exercise, on a regular and constant activity likely to get to the one who has the means to meet the needs of existence) .
2. This activity should be performed by the property owner or his spouse or his partner Pacs or her partner.
3. The activity must be the main occupation of the debtor, that is to say, it is the essence of economic activities. Securities of other companies can be considered as part of its core business, without it is necessary that the activities of these companies are similar or related and complementary.
4. The goods must be necessary for the exercise of this profession.

Details

- property leased or made available to a third party can not, in principle, be qualified property professionals for their owner, unless the leases may, themselves, be regarded as characterizing the performance of professional commercial (eg professional renters of cars, boats, televisions ...).

However, the nature of good professional is recognized when the rental or available to the property (buildings, businesses, shares in property companies), made directly by the owner or by a company which holds rights, not not in fact deprive the owner of the opportunity to use his property for the sole purpose of his occupational activity as a principal. These goods are qualified professionals that share rights held by the debtor in the operating company.

- residential premises rented furnished are considered business property if the owner:
 - Withdraws more than € 23,000 in annual revenue and more than 50% of professional income tax household within the meaning of the ISF under the categories of wages and salaries, business profits, agricultural profits, non-commercial profits, income the managers and partners referred to in Article 62 of the Tax Code;
 - And has its principal activity and is registered in the commercial register as such.

SOCIAL RIGHTS:

UNITS OR SHARES OF COMPANIES

Some units or shares of companies engaged in industrial, commercial, craft, agricultural or liberal, have the character of professional property if the owner exercises his professional duties in the company as principal. Business property must meet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Exercise of a professional activity as the main

1. The functions actually performed must:
 - For members of partnerships not subject to income tax (CIT), constitute the bulk of their economic activities;
 - For members of companies subject to corporation tax, be one of the

management functions listed in the law (SARL or manager of a company limited by shares, general partner of a partnership, or president Director

General, Deputy Director General, Chairman of the supervisory board or board member of SA) and have provided the debtor in respect of the previous year plus 50% of earned income subject to income tax.

2. Only the fraction of shares corresponding to the elements of the social heritage necessary for the exercise of its activity the company is considered to be a professional.

3. Securities must belong to the taxpayer (even held by a member who does not carry on business). The exemption may apply even if the functions are performed not by the owner of the shares, but by a member of the household tax.

Regarding the share of partnerships and shares held by persons referred to in Article 62 of the General Tax Code (statutory manager majority SARL submitted to the IS, managing partner of SCA associated with company names subject to corporation tax) for which no minimum holding in the capital is required, making the only condition for the exercise of a professional activity as the main qualification enough good professional.

Holdings a percentage of capital

Minority managers statutory SARL IS and subject to the SA leaders (president or CEO of a conventional SA, Chairman of the supervisory board or board member in a SA Management Board) must hold at least 25% voting rights of the company.

In the event of a capital increase, this condition is not required if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 The 25% threshold has been met during the five years preceding the transaction;
- As a result of the capital increase, the taxpayer holds at least 12,5% of the voting rights in the company;
- The debtor must have made a pact with other partners or shareholders representing at least 25% of the voting rights and exercising a power of orientation on society.

To assess the 25% threshold, it is made of the mass of the securities company in which the taxpayer carries on its functions and are eligible inmates:

- by itself:
 - the family group that consists of the debtor and:
 - Spouse, partner bound by a PACS or her cohabitant,
 - His ascendants, descendants, brothers and sisters,
 - Parents, children and siblings of the spouse, partner or cohabitant:
 - through an interposed entity (are considered securities held by the same family group in one or more interposed companies, within a single level of intervention, with a participation in society which the debtor shall perform his duties).

Details

- If the detention threshold of 25% is not reached, securities held directly by the minority manager of an LLC, the CEO, the CEO, the Chairman of the Supervisory Board or Management Board members of SA (or home tax within the meaning of ISF) can be considered

professionals if they represent more than 50% of the gross assets of the debtor including shares or units involved.

- Interests held by the same liable in several companies, which taken separately meet the requirements (functions performed and owned) are considered as a good professional single exempt if the condition on the normal return is filled in each structure and not globally.

- Of special provisions can qualified property professionals, under certain conditions, the securities of companies whose assets facilitators is mainly composed of financial holdings in other companies (holding company).

- Securities acquired by the salaries through a takeover of a company by employees are exempt under professional property within the limit of 150,000.

This exemption ceases to apply when the company created for redemption no longer benefits from the tax credit under section 220 quater or quarter of the CGI or the employee ceases his main occupation in the acquired company.

Debt, if any, for the acquisition of such securities is deductible from gross assets in the same proportion as the value of shares or units subject to tax.

- Taxpayers who put an end to their professional duties may consider business assets, within certain limits and conditions, the bare ownership of securities that is the subject of family transmission.

RURAL PROPERTY

Rural property give a long-term lease

They are qualified property professionals when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fulfilled:

- the property must be given to long-term lease in accordance with Articles L 416-1 to L 416-6, L 416-8 and L 416-9 of the Rural Code or transferable lease in accordance with Articles L 418-1 to 418-5 of the same code L;
- the lease term must be at least 18 years of age
- The lease must be made to a member of the family (spouse of the donor, their ascendants or descendants or their spouses, or their brothers or sisters);
- the leased property must be used by the contractor in the performance of its main occupation.

Moreover, if the rural property leased to long term meet the conditions listed above and are rented or made available to a company or their right to lease is made to a company, they can also be qualified property professionals if, in addition:

- The corporation is a company mainly agricultural purpose;
- The company is controlled more than 50% by the lessor, his spouse, ascendants or descendants or their spouses, their brothers or sisters;
- In case of provision, the conditions laid down in Article L 411-37 of

the Rural Code are met:

- In case of intake of the right to lease the conditions laid down in Article L 411-38 of the Rural Code are met.

The exemption applies when the lessor in the amount of the participation of members of the family in the recipient, which must be exert their main activity.

Groups share Agricultural Land(GFA) and Agricultural Land Groups(GAF) non-farmers

They are qualified property professionals when:

- leases granted by the group and their licensees mee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885 of the P Tax Code (long term lease as provided by Articles L 416-1 to L 416-6, L 416 - 8 and L 416-9 of the Rural Code and transferable lease as provided by Articles L 418-1 to L 418-5 of the Code):
- the status of the group liable to prohibit land exploitation-farmed agricultural funds and assets constituting the group are rented by long-term lease for a minimum of 18 years;
- the shares are held by the taxpayer for at least two years on January 1 of the tax year.

But no time is required if the debtor was a party to the contract and constitution of the grouping has made contributions of property or property rights for agricultural purpose or has made these contributions in an increase in capital ;

- the lease is granted by the group to the unitholder's spouse, ascendants or descendants or their spouses, or their brothers or sisters:

- the leased property must be used by the contractor in the performance of its main occupation.

Moreover, when the rural property leased to long term may be qualified property professionals according to the conditions described under "Rural Properties leased to long term" above and they are rented or made available to a company or their right to lease is made to a company, the shares of GFA or GAF relating to these rural property can also be qualified property professionals if the conditions listed above are met and if:

- The corporation is a company mainly agricultural purpose;
- the company is controlled more than 50% by the shareholder, his spouse, ascendants or descendants or their spouses, brothers and sisters, all constituting the family group;
- In case of provision, the conditions laid down in Article L 411-37 of the Rural Code are met;
- In case of intake of the right to lease the conditions laid down in Article L 411-38 of the Rural Code are met.

The exemption applies when the holder of shares of GFA or GAF, up to the participation of group members in the family recipient, who must exercise their core business.

Details

The rural property and shares GFA or GAF if they do not meet these conditions may be partially exempt under the private wealth.

OTHER PROPERTY EXEMPT

OBJECTS AND ANTIQUES

The antiques more than 100 years of age (including household furniture), works of art or collection:

- Carpets and tapestries woven by hand or run the needle;
- Pictures, paintings and drawings made by hand;
- Engravings, prints, lithographs;
- Original statues and sculptures, enamels and ceramics originals;
- Stamps and the like;
- Collectibles (with an interest in geological, botanical, mineralogical, historical, archaeological, palaeontological, ethnographic, numismatic).

Qualification Collectible may arise in particular the importance of the price of the object in question, which should be substantially higher than the value of a similar property for common use.

Thus, objects less than one hundred years of age, therefore, can not be classified as antiques, but have nevertheless a real artistic or cultural interest and are stated as such on the market for art (furniture "Art Nouveau" or "Art Deco", for example), can benefit from the exemption (see 7 S-BOI 9-08).

This exemption also applies to antiques, art or collection held through civil societies owners of a historic monument under certain conditions:

- Be constituted as civil society only between lineal relatives or between brothers and sisters, their spouses and, if necessary, the children of these different people;
- Realize taxable income in the category of land revenue;
- Hold full ownership and management of historic buildings and, where appropriate, the furniture thereto;
- Enter into an agreement with the Ministers of Culture and Finance.

The ISF exemption applies only to the extent of the portion of the net value of the shares representing these objects: the fraction of the value corresponding to the historic building remains subject to the ISF.

VEHICLE COLLECTION

Collection vehicles that present an undeniable historical or technical originality have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the automobile or motorcycle.

It can also be a race car or vehicle over 15 years, 25 years or 40 years under certain conditions.

COPYRIGHT

COPYRIGHT

- The rights of literary and artistic property which are not to be included in the taxable property of the author. This exemption also applies to the rights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video producers;
- the rights of industrial property were not to be included in the taxable assets of their inventor.

LIFE ANNUITIES AND ALLOWANCES

- The capitalization value of annuities made under an occupation (PERCO example) or PERP, with payment of premiums regularly spaced in their amount and periodicity for a period of at least fifteen years and whose entry into possession operates at the earliest from the date of liquidation of the pension payable to a compulsory ' insurance or

pension age set in application of Article L.351-1 of the Code of Social Security.

The exemption applies to the subscriber and spouse:

- the capitalization value of annuities and allowances paid in capital by the victim as compensation for personal injury (accident or illness). In the case of transmission by death, the value of capitalization is also excluded from the heritage of the surviving spouse. This exemption is extended to amounts received by the heirs of the victim, because of damage to the latter, provided that the repair coating an allowance nature.

Under the same conditions, these provisions also apply to amounts allocated to the orphans of victims of anti-Semitic persecution who died in exile:

- the capitalization value of annuities received as compensation for personal injury under a military disability pension.

INVESTMENTS

- Options to subscribe for or purchase shares (stock options) until the option is not exercised, as well as the rights to free shares (Articles L. 225-197-1 to L. 225-197-6 of the Commercial Code) as the shares are not acquired:

- securities received in exchange for direct subscriptions in kind or in cash to the initial capital or capital increases, of a company
 - Qualified SME under European Community (EC)
 - Exercising exclusively industrial, commercial, craft, agricultural or liberal, excluding management activities of movable and management

activities or rental of buildings,

- Having its place of management in a Member State of the European Community or another State party to the Agreement on the European Economic Area which has concluded with France a treaty with administrative assistance clause in the fight against fraud or tax evasion. In practice, it is the SMEs which have their headquarters in Iceland or Norway.

In case of contribution in kind, the assets transferred must be necessary to the exercise of the activity of the company and should not be real estate or securities:

- securities received in exchange for equity securities subscribing to cooperative societies, cooperative societies including production workers (SCOP)

- securities received in exchange for cash subscriptions to the capital of a holding company: the limit of the fraction of its assets Representative securities received in exchange for capital subscriptions SME community when:

- Its sole purpose is to hold investments in companies engaged in industrial, commercial, craft, agricultural or liberal, excluding management activities of movable and activities management or lease of real property,

- Place of management is located in a Member State of the European Community, Iceland or Norway:

- units of investment funds (FIP) whose value is composed of at least 20% of the shares received in exchange for capital subscriptions of companies:

- Carrying out their activities or legally constituted less than five years
- Qualified SMEs and engaged exclusively an industrial, commercial, craft or agricultural liberal
- Having their place of management in a Member State of the European Community, Iceland or Norway, whose securities are not listed on a French regulated market and the results are subject to income tax under the conditions of law;

- units of mutual funds in innovation (FCIC) and mutual fund investment risk (venture capital) whose value is composed of at least 40% of the shares received in exchange for capital subscriptions of companies responding the conditions listed in the previous paragraph;

- financial investments made in France by persons residing outside France. However, are not considered as investments

Financial stocks or shares in a company or corporation whose assets consist primarily of property or property rights located on French territory, and, in proportion to the ratio of the value of these assets to total assets of the company. Also, do not constitute financial investments, shares or rights of legal persons or organizations whose property allows nonresident owning directly or indirectly more than half of the securities or a legal person or organization holds a building in France.

THE TAXABLE PROPERTY

BUILDINGS BUILT

NATURE

Declare, provided they do not have the professional qualification of property exempt:

- Built property, regardless of their assignment (for industrial, commercial, craft, agricultural or professional or residential use) that the property is leased, the owner or reserve the enjoyment that it occupies as a principal residence;
- Buildings under construction;
- Real property rights (usufruct, right of use, right of the lessee of a building lease, etc.).
- Buildings or portions of buildings represented by shares of ownership of real estate companies (Article 1655 ter of the CGI).

This list is not exhaustive.

RIGHTS HELD IN THE BUILDING

If you do not have full ownership, represent the value of rights over property.

Indivision

Specify the value of the share corresponding your rights.

Usufruct

Even if you have only the usufruct of certain property, you must understand these assets in your estate for freehold value, up to the portion of the property subject to the usufruct.

Exceptions to the imposition of the usufructuary of the freehold value:

- you sold to a third party (other heir presumptive nominee or donee) the bare ownership of a property to retain only the usufruct:

- as a surviving spouse, you get:

- A usufruct in the absence of descending and ascending survival (s) of the predeceased spouse or because of the presence of one or more children of a first marriage has substituted a usufruct rights in full property of the spouse,
- The legal usufruct as provided for deaths occurring before July 1, 2002
- The usufruct right of exploitation of works

- you donated the bare ownership to the state, a county, a municipality or a union of municipalities (or one of their public institutions) in a public

national administrative or association or foundation of public utility.

In these three cases are to be reported separately usufruct and bare ownership by the usufructuary and the bare owner holding mandatory assessment, depending on the age of the usufructuary, resulting from the application the following scale:

Age of the usufructuary	Value of the usufruct	Value of the bare ownership
Less ...		
21 years old	90%	10%
31 years old	80%	20%
41 years old	70%	30%
51 years old	60%	40%

61 years old	50%	50%
71 years old	40%	60%
81 years old	30%	70%
91 years old	20%	80%
More ...	10%	90%

Right of use or habitation and housing law life of the surviving spouse existing at 1 January

Determine the taxable value on the same principles as the usufruct.

Right arising from the conclusion of a building lease

The lessor must disclose the market value of the land taking into account the existence of the lease.

The lessee is imposed on the market value of the lease rights conferred on such constructions.

DECLARED VALUE

The value is determined by the taxpayer under its responsibility. It can be searched by applying various methods below whose use should generally be combined. The real market value of the property is assessed at 1 January 2012. This is the price at which they might otherwise be traded on that date.

The evaluation is made:

- comparison (transaction prices of similar properties). The assessment is made "block", in relation to the size or the number of parts:

- by income. This method is used for the evaluation of tenements. His employment is subject to three conditions:

- The entire property is income-producing.

- These revenues are a normal character with respect to the local market,
- The capitalization rate used is clear from the analysis of the rental market:
 - by adjustment to a previous value.

Details

With regard to the value of the dwelling occupied as a primary residence by the owner, the real market value of the property is declared, net of an allowance of 30%.

In case of joint taxation and tax when the home within the meaning of the ISF has two residences, for example, for professional reasons, one can benefit from this housing allowance.

The following buildings, partially exempt from inheritance tax on their first free transfer, remain taxable TFR:

- Properties acquired new or future state of completion between 1 June 1993 and 31 December 1994, completed before 1 July 1994 and assigned to the main house for at least 5 years from the date of acquisition or that of the completion, whichever is later:
- Buildings completed before December 31, 1994 and acquired new between 1 August 1995 and 31 December 1995 if they have been assigned to the main house for a minimum period of 2 years from the date of acquisition:
- Residential buildings and garages acquired under the registration fees between 1 August 1995 and 31 December 1996, provided they have been leased for at least 9 years to a person who has made his home main.

MIXED

For goods partly professional and partly private (for example, an

apartment constituting a principal residence in which a profession is exercised), declare value unprofessional.

Complete the following items Annexes

NATURE

Indicate whether:

- An apartment in an apartment building (and its dependencies, if any: cellar, parking);
- Building a collective report;
- A detached house;
- A building of exceptional character mansion, castle, manor mill monument;
- A shop, office, workshop, hangar (and generally any local professional use does not constitute for you a good professional exempt);
- A pool, a tennis court ...

If you have a rural property with buildings of low value, estimate the overall and see:

- Annex on S1 if you file a declaration no SK 2725;
- On Schedule 2 if you file a declaration no 2725 or no 2725 K.

NATURE OF RIGHTS HELD

If you do not have full ownership, enter the nature of the rights held and declare the value of the property held

LOCATION LOCATION

Enter the address of the property. If it is a building located abroad, the country and also mention any other supplementary evidence.

FEATURES

Enter the total land area (ha., AC or m2) if it is a house or a building

of exceptional character.

MIXED

Specify the percentage or fraction of well considered unprofessional and therefore taxable.

BUILDING NO FRAMES

**AGRICULTURAL LAND, BUILDING, WOOD AND FOREST,
RURAL PROPERTY GIVEN TO LONG TERM LEASE, SHARE
GROUPS AND FOREST LAND**

NATURE

Report provided they do not have the character of professional property exempt:

- Building land;
- Crop land (grassland, orchard, vineyard ...);
- Fallow land, moors, ponds, marshes ...;
- Rural properties.

This list is not a character exhaustive.

Woods and forests and forestry groups share

Woods and forests and shares of forestry groups are exempt for three quarters of their value in the two conditions:

- produce a certificate valid for 10 years or, if a certificate has been issued for the goods in question under 3 years before 1 January 2012 on the occasion of a mutation gratuitously or for consideration, a certificate issued by the Departmental Directorate of Agriculture, which states that goods are likely planning or regular operation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the end of the tenth year after the issuance of the certificate to which it refers):

- produce a declaration on plain paper worth commitment normal operation for 30 years by yourself and your successors, established by yourself if it is woods and forests or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group if forest you Unitholder. This statement is taken when the goods concerned are worn for the first time the statement TFR.

To assist you in the preparation of this document, a model of engagement (2725-NOT-A) is available on impots.gouv.fr.

In all cases, the share of forestry investment companies do not benefit from this partial exemption.

Particular case

You have acquired for consideration shares of forestry groups. To benefit from the exemption of three quarters of their value, in addition to the above conditions, you must have acquired these shares at least two years before January 1 of the tax year.

The rural property rented long term and shares land agricultural groups(GFA) or agricultural land groups(GAF)

The rural property Leased and shares land groups who meet the requirements listed below are exempt:

- up to 3/4 when their total value, regardless of the number of leases of leased assets or shares does not exceed € 101,897;
- and half beyond this limit. The limit of € 101,897 applies separately to rural property and shares of GFA or GAF.

The rural property rented by long term lease

These goods are partially exempt if:

- They are given by long-term lease in accordance with Articles L 416-1 to L 416-6, L 416-8 and L 416-9 of the Rural Code or leased transferable in accordance with Articles L 418 -1 to L 418-5 of the same code;
- the lease term is at least 18 years regardless of the time of renewal of the lease at the expiration of 18 years;
- The descendants of the lessee are not contractually deprived of the power to benefit from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 transfer of the lease.

The share of land agricultural groups or agricultural land groups

Units groups (GFA or GAF) benefit from the exemption provided for them, if:

- Units are representative inputs consist of immovable property or rights to property and agricultural purpose if such property has been leased under the conditions referred to above;
- the status of the group land prohibit the operation of such property owner occupation;
- the shares are in your possession for at least 2 years on 1 January of the tax year.

But no time is required if you have been party to the contract and constitution of the group have made contributions of property or property rights for agricultural purpose or if you have made these

contributions in a capital increase.

You can include farms if you make an estimate "land housed" (where the price used per hectare includes the value of buildings and operating).

When the value of buildings is paramount, evaluate buildings with built buildings and land with undeveloped land.

Complete the following items Annexes

LOCATION SITUATION

If it is a building located abroad, the country and also mention any other supplementary evidence.

For shares of forestry groups, do not forget to specify the name, address and date of incorporation of each group involved, the number of shares held and the date of acquisition.

FEATURES

Indicate the total area under each article (ha., AC or m2).

Enter the date and duration of the lease for the rural property Leased and shares land groups.

MIXED NATURE OF RIGHTS HELD ON PROPERTY DECLARED VALUE

See page 11, "Buildings built."

SOCIAL, SECURITIES, CASH OTHER FURNITURE

You must declare the following property.

SOCIAL RIGHTS

These units or shares of companies in which you perform a function that can not be classified as professional exempt property.

Are also declared:

- Securities of real estate companies owned by non-residents. Now, the current account inflows are neutralized for the evaluation of the company's shares in a property owned by a nonresident;
- The shares or rights held directly or through interposed companies by non-resident legal persons or agencies owning buildings in France.

OTHER SOCIAL RIGHTS AND SECURITIES

Concerned units or shares of companies in which you do not exercise any function, bonds, mutual funds of placement (FCP), the shares of investment companies with variable capital (SICAV), shares and securities listed or unlisted, including those contained in the accounts of your long-term savings, subject to not be considered well as a professional exempt.

CASH

It is cash, current accounts, savings books, treasury bills and savings accounts, certificates of deposit, capitalization bonds and shares all of the same nature as they do not fall within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levy of 1.5% or 2% provided for in Articles 990 A to 990 C CGI.

Pay the balance or value on January 1 of the tax year.

OTHER PERSONAL PROPERTY

You must indicate, in particular:

- The goodwill and customer charges offices and more generally the assets necessary for the exercise of a profession, provided they do not have the character of both professional exempt;
- Receivables;
- Security deposits. They constitute a debt of the lessee to be included in his taxable if it is liable for the ISF. On the contrary, it is admitted,

without any conditions, that the lessor does not include in its taxable base security deposits received by him:

- Capitalization values of annuities made both between individuals as with institutional bodies;
- Capitalization values property rights in literary, artistic and industrial applications when held by a person other than the author or inventor (heirs, donees or purchasers);
- Valuables (jewelery, precious stones, coins, ingots, ...);
- Motor cars, motorcycles and bikes, yachts and motor yachts fixed outboard or sailing, airplanes;
- Racehorses or saddle;
- The furniture (for use and ornament of settlements).

If some goods are mixed or if you do not have full ownership, enter the taxable portion.

Special cases

- lump-sum awarded by way of compensation for damage body

If, as compensation for personal injury, you have received payment of an annuity (including capitalization value is exempt, cf. P. 9) or the payment of a lump sum benefit, you can, for compensate for the taxation of property acquired through reinvestment (which shall be declared according to their nature, the appropriate annexes) or the amount involved deposited into account (which

if must appear either on Appendix S2 or on Schedule 3-1 if you file a declaration SK 2725, 2725 or 2725 K), deduct the amount of compensation payments or capital received . This amount must be updated by applying coefficients available on impots.gouv.fr (2725-NOT-B).

The deduction required (equal to the amount of compensation present)

is made on Schedule S3 or Schedule 4 (if you file a statement with appendices) bearing, in the column "Nature, purpose and date of debt " the following:

"Discounted amount of compensation received as capital repair of an injury."

• **Life insurance contracts (insurance in case of death or life)**

- Insurance contracts redeemable: during the savings phase, these contracts should be included in the heritage accountable for their redemption value on January 1 of the tax year. In this regard are redeemable contracts especially life insurance contracts with a diversified provision of temporary unavailability called "eurodiversifiés contracts."

At maturity:

* If the insured receives a lump sum, it enters the taxable wealth:

* If the insured receives a pension, the capitalized value of the annuity is taxable as well as non-consumed fraction at 1 January of the amounts received under the annuity.

- Insurance contracts Irredeemable: Only premiums paid after the age of 70 in respect of contracts entered into non-redeemable as of November 20, 1991 were added to their nominal value, the heritage of one who has paid.

UNITS OR SHARES OF COMPANY SUBJECT TO A COMMITMENT

CONSERVATION OF 6 YEARS MINIMUM

These units or shares of a company engaged in industrial, commercial, craft, agricultural or professional exempt up to 75% if the following four conditions are met:

- These securities are subject to a collective agreement for at least 2 years taken by the partner for him and his successors for free:
- Commitment must be at least 20% of the voting rights and financial rights in the case of securities admitted to trading on the regulated market
or, failing that, at least 34% of the shares. These percentages must be met during the duration of the collective commitment to conservation:
- a partner, member engagement, has during the five years following the date of conclusion of this commitment in the company's main occupation or management positions covered by Article 885 bis of the CGI O in the form of the company:
- units or shares shall remain the property of the debtor for 6 years minimum to qualify for the partial exemption. In case of non-compliance with this shelf, the partial exemption is challenged on all this time. Beyond the period of 6 years, one is questioning the partial exemption for the year in which the initial conditions are no longer met.

This exemption also applies to share holdings in companies interposed within two levels of intervention, up to the fraction of their representative value of shares or units satisfying the above conditions.

The associated companies interposed eligible device partial exemption may give or donate securities during the engagement of conservation without the partial exemption is challenged by the transferor or the donor. In addition, the transferee or donee may receive partial exemption attached to the securities received if keeps

at least until the end of the period of 6 years.

The partners may also admit a new partner in the collective commitment provided that the commitment be extended for a minimum period of 2 years.

Details

In case of transfer of its shares by a partner committed collectively, the exemption is not questioning the other signatories, if they keep their shares until the end of the commitment and the rights attaching to such securities meet the threshold, according to the case, 20% or 34%. The assignee may also subscribe to a collective commitment to ensure that the percentage of rights is still respected and provided that the collective commitment be extended for a minimum of 2 years.

In other cases, the transfer of one of the securities held and entitled to preferential treatment causes a breakdown in the conservation and therefore the decay of the scheme.

PARTS OR SHARES HELD BY OFFICERS OR EMPLOYEES RETIREMENT

These units or shares of a company engaged in industrial, commercial, craft, agricultural or professional exempt to the extent of three quarters of their value when the owner performs his principal activity in the company as an employee or officer, or carries its main business when the company is a partnership subject to tax on income.

No minimum holding threshold securities is required, but those units or

shares shall remain the property of the taxpayer for a minimum period of six years after the first event for which the exemption is requested, on January 1.

This exemption also applies:

- The shares held for at least three years by employees and agents before asserting their right to retirement;
- The shares held by a taxpayer in several companies exercising his activity in every society, and that the companies involved have operations, or similar or related and complementary;
- Securities held in a company that has dependency relationships with the company or companies in which the accountable or exerts its functions or activities. Dependency relationships are known to exist between two companies when one holds directly or through an intermediary, the majority of the share capital of the other or actually carries the power of decision;
- Under certain conditions and within certain limits, the units of mutual funds or shares of investment companies with variable capital employee shareholding.

Details

The application of this exemption is exclusive of any other preferential treatment. This device can not be combined with include:

- The general exemption applies to business property (Article 885 bis of the CGI O);
- The specific arrangements for exemption under the securities which are the subject of a commitment to retain a minimum of six years (Article 885 bis of the CGI I).

In addition, the sale of one of the securities held and entitled to preferential treatment causes the downfall of this particular system.

ASSESSMENT METHOD OF CALCULATION AND ELEMENTS

social rights at securities

Listed securities

You can choose between two methods of evaluation:

- The last known price on 1 January 2012;
- The average over the last 30 before 1 January 2012.

When securities are listed on a securities account opened with a financial institution or an authorized intermediary, you can retain the value on the statement at December 31, 2011 that was addressed by the organization because since the estimates are based on the last known price on the date of the order.

These methods also apply to unlisted foreign securities in France but listed on foreign markets. The euro conversion takes place according to the rate of the currency in Paris at the relevant date.

Unlisted securities

Should determine a net worth reflecting as accurately as possible the real value of the company.

To this end, several methods can be combined and weighted, as appropriate, with each other (mathematical value, performance, productivity, the cash flow, for comparison).

Once this value, the unit value of the securities held by the partners can be calculated.

Securities

- For investment companies with variable capital (SICAV) and mutual

funds (FCP), the SICAV shares and fund units must be valued at their last known cash value at January 1, 2012, excluding any other method. This value is indicated on the statement provided by the depository.

- For savings plans, units or shares acquired in this context are evaluated according to the procedures applicable to securities listed or unlisted.

Other movables

Goodwill and customer

The assessment can be made:

- Comparison;
- By application of the scales based on a percentage of turnover and profit;
- By income.

Receivables

They are taxable at their nominal amount plus accrued interest on January 1, 2012 and interest accrued and not paid by that date.

Tangible

- Inventories of wines and spirits of an industrial, commercial or agricultural, are selected for their value.

- The household furniture, for use and ornament apartments, are normally measured either by:
 - The price of a public sale;
 - The estimate contained in an inventory drawn up by the notary or liable valid for three years;

- An overall assessment by a single digit, without needing to specify the nature and value of each item:
- The application of a flat rate of 5% to the total gross assets.
- The value of gems and jewelry consists of:
 - The net public sale occurred in 2010 or 2011;
 - Or the highest of the values to be estimated in an act (inventory ...), or a contract of insurance, if any, on property;
 - Or, failing that, the detailed statement of estimated or parties.

Fill in your ANNEXES OF THE FOLLOWING ELEMENTS:

Social rights

Specify for each item in the column 'Description' the coordinates data of the company, the number of shares Dete naked for shares of SCI non-transparent, the address of the building.

And other social securities

Enter the contact details of which are open to your friend (s) account (s) in securities (banks, investment service providers, public or ministerial officers ...).

You can wear on your statement as a single reference to the values enshrined comptetitres opened with a financial institution or an authorized intermediary, you must enclose the detailed statement of these securities at 31 December 2011 by the establishment content of the account.

Cash

Provide information institutions managing your cash (these agen bank, post office ...) and account numbers.

Life insurance contracts

Total the amount of your life insurance contracts and reported directly see the box on page 3 CO of your return.

This amount is included online CG.

UNITS OR SHARES OF COMPANY SUBJECT TO A COMMITMENT CONSERVATION OF 6 YEARS MINIMUM

Indicate for those units or shares, the details of the company under "Description."

In addition, certain documents must be included with the filing of schedules.

The person who wishes to benefit from the preferential treatment for the first time must provide:

- A copy of the undertaking recorded;
- A statement of the company whose securities are the subject of commitment, stating that the commitment is ongoing, indicating, in case of sale or donation of securities, the identity and address of the transferee or donees and the number of tracks transferred;
- A document indicating the identity of the partner who meets the third condition set out above;
- In the case of a double level of interposition, a certificate of the interposed company specifying the number of shares held in the Company signs the undertaking.

For subsequent years, in addition to the production of the certificate of the company whose securities are the subject of the commitment, the taxpayer must provide:

- A document showing the changes in the identity of the partner who fulfills the third condition laid down above;
- A copy of the amendments to the agreement;
- In the case of a double level of interposition, a certificate certifying that the interposed company participating in the signatory company commitment has remained unchanged.

In this case, the benefit of the exemption is subject to the condition that the shares are kept unchanged at each level of interposition for the duration of the commitment. However, in case of non-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 to maintain the level of participation in each intervention, as a result of a merger between companies interposed partial exemption is not jeopardized if the signatories retain securities received as consideration for the merger until the end of the commitment of conservation.

At the expiry of the collective agreement for the person liable must attach a certificate stating that he held the titles benefiting from preferential treatment in 2011.

PARTS OR SHARES HELD BY OFFICERS OR EMPLOYEES RETIREMENT

Indicate for those units or shares, the details of the company under "Description."

declaring certain property exempt

You must evaluate in columns 9 to 11 of Schedule 3-1, to qualify for

exemption, the following social rights, may be qualified property professionals:

- Acquired or entered into by an employee during the formation of a company created for the redemption of all or part of the capital of a company.

The exemption is limited to 150,000. Value exceeding this limit is taxable and must be worn in the "Social Rights", column 5:

- Held by the tax household in interposed company that has a stake in the company where the debtor carries out its functions.

The securities are exempt from the competition is their actual gross assets of the company corresponds to its stake in the company where the debtor carries out its functions when the 25% threshold is reached: Enter in column 10, the value of exempt units interposed societal ties used in determining the threshold of 25% owned by the taxpayer. The excess is taxable see column 5:

- Owned directly when their former value gives 50% of the gross value of taxable assets, including those units or shares:

Report, column 11, the total value of units or shares constituting more than 50% of your assets.

Column 12, evaluate the social rights or shares of FIP, or FCIC FCPR received in exchange for subscription to the capital of a small subject meet certain conditions (see p. 8).

NEW

Property rights or placed in a "trust" are taxable on or after 1 January 2012 in the heritage of the settlor or a beneficiary deemed settlor.

Given the rules of territoriality applicable and subject to international conventions, are taxed under the ISF:

- The assets in a trust whose settlor is resident for tax purposes in France, regardless of the location of such property;
- The goods (excluding financial investments referred to in Article 885 of the CGI L) located in France and placed in a trust whose settlor is not a tax resident of France.

LIABILITIES AND OTHER DEDUCTIONS

Are concerned:

- Liabilities, and certain non-professional, at your expense January 1 of the tax year in which you can justify the existence
- The discounted amount of compensation awarded in compensation injury.

DEBT DEDUCTIBLE

- Loans, overdrafts and accounts receivable;
- Debts to service providers or contractors;
- The income tax as you will YOURSELF calculated based on the last scale in force (of 2012 tax on the income of 2011), the property tax, contribution to public broadcasting backed tax housing, property taxes. You can, for convenience, to deduct the tax from the previous year and make an adjustment the following year;
- ISF theoretical due on 1 January 2012 (see cons).

SPECIAL DEBT CHARGES

- Debts for the purchase of exempt property or the value of such assets are deducted in priority to the value of such property;
- Debts for partially exempt property are deductible only in the same proportion as the value of the property subject to the tax. Thus, the debts for the acquisition of woods and forests exempt for three quarters of their value is deducted from the assets for the quarter of their value;
- Liabilities related to business assets by imputing to focus on such goods, fully exempt, you do not, in principle, to include the debts on your statement.

If, exceptionally, an excess of liabilities strike these properties, you can

mention the only condition attached to provide evidence about the existence, purpose and amount of the debt with not only the detailed composition of your business assets but also all the components of the calculation (gross asset value professional, compared to total debt professional to enumerate exhaustively) to release the amount of the surplus attributable to the value of your private property.

LIABILITIES NON-DEDUCTIBLE

Unless proved otherwise:

- Debts overdue more than three months to January 1;
- Debts incurred for the benefit of your heirs presumptive or persons deemed interposed on January 1;
- Debts affected by prescription under the civil law.

Mortgage debt secured by a registration expired for more than three months at the date of January 1 are never deductible.

AMOUNT OUTSTANDING

The amount of the deduction is not limited to debt capital but also includes, where applicable, interest accrued and unpaid on 1 January 2012 as well as the interest accrued since the last installment until 1 January 2012.

Calculation of the theoretical amount of ISF 2012

Your taxable net wealth is greater than or equal to 3,000,000 or, if you are non-resident and liable only to the ISF in France, regardless of the amount of your assets, make your statement to the line FG included, Page 3. At this point, determine out statement (from, for example, a copy of your return):

- your net "theoretical" or gross assets (line FG) said less liabilities excluding the amount of the ISF not yet calculated:

- calculations and "theoretical" as follows:

- The amount of the ISF (line LM);
- Reduction for dependents (lines MP and MQ);
- Reductions for investments in SMEs (lines MU, MW, MY and NB);
- Discounts for donations to certain organizations of general interest (ND online and NH);
- Possibly impute the amount of ISF paid outside France (line RS).

The total "theoretical" thus obtained is added to your liability.

If you file a declaration 2725 K or 2725, possibly impute the amount of wealth tax paid outside France (line RS).

The total "theoretical" thus obtained is added to your liability.

Fill in your appendices of the following:

NATURE, PURPOSE DATE OF DEBT

Indicate the date of the contract, act or judicial decision giving rise to the debt.

NAME AND ADDRESS OF CREDITOR

Specify the name and address of the creditor (the latter may be required to prove the existence of the debt), and for debts arising from authentic documents, the name and residence of the officer or the name of jurisdiction.

You must also include when filing your evidence supporting the existence of the object and the amount of debt you operate the deduction except, however, those on your taxes.

HOW TO CALCULATE YOUR TAX

AMOUNT OF TAX CHARGES BEFORE

ISF for 2012, the tax calculation is done using the very first euro, 0,50% on taxable net basis. You can get a discount if your net taxable base is between € 3,000,000 and € 3,200,000.

Particular case: You are a non-resident and liable to wealth tax in France AND your taxable net worth is between € 1,300,000 and 3,000,000.

Calculate your tax is done by applying from the first euro rate from 0,25% to your net basis. You can get a discount if your net taxable base is between € 1,3 million and € 1,4 million.

The total gross tax is to register online LM.

REDUCTIONS FOR DEPENDENTS

The amount of the tax determined line LM is reduced by an amount of € 300 per dependent.

Are considered dependents of the debtor:

- Its children under 18 or disabled;
- Under the same conditions, the children he has gathered his own home;
- Adult children pursuing their studies;
- As well as anyone taken care of by the taxpayer without the required degree of disability.

Conditions of age, disability, public housing appreciate the 1st January

2012. In addition, to qualify for the tax credit, they must have actually been counted by the taxpayer support of the ISF for the calculation of the income tax for 2011.

The sum of € 300 is divided by two when a child is deemed to equal load of the one and the other of his parents (in case of alternating residence).

REDUCTIONS FOR INVESTMENTS IN SMEs

In the annual aggregate limit of € 45,000, you can deduct from your taxes:

- 50% of the payments made under:
 - Direct subscriptions in a company with an initial capital or capital increases of SMEs, as well as, in particular, sales of equity interests in some cooperative companies (SCOP ...). These subscriptions may be made in cash or in kind, by supplying goods necessary for the exercise of the activity, with the exception of real estate assets and securities. The company receiving the payments must meet certain conditions. This reduction also applies in the same conditions, securities jointly owned by individuals:
 - Indirect cash subscriptions to the capital of a company satisfying certain conditions and whose sole purpose is to hold investments companies engaged in industrial, commercial, craft, agricultural or liberal. The amount of the payments to be taken into account under this reduction is reduced to the proportion of investments made by the company in the interests mentioned above in relation to its capital.
- This 50% reduction is limited to € 45,000 per year.

- 50% of the payments made in respect of cash subscriptions to shares

of Investment Funds Proximity (FIP), the share of mutual funds in innovation (FCIC).

This 50% reduction is limited to € 18,000.

These discounts apply to payments made after October 1,2011 the deadline for filing your tax.

They can not be combined with those provided for income tax.

Those securities or shares of FIP, FCIC must be retained until 31 December of the fifth year following the year of subscription.

Upon filing the statement, the following documents must be attached:

- Subscriptions for unlisted securities: the individual state provided by the company;

- For shares of FIP state funds provided by the individual and commitment to conservation signed by the debtor;

- Subscriptions for securities listed on non-regulated markets: the contract note issued by the institution holding the account, a copy of public information indicating the ratio of shares corresponding to newly issued securities, and where appropriate, the individual condition provided by the company. A description on plain paper must also be attached by the taxpayer indicating

the number of shares corresponding to the reduction charged.

During the next five years, the debtor beneficiary shall keep at the disposal of the tax administration the documents attesting to the custody of securities or units.

REDUCTIONS FOR DONATIONS TO CERTAIN BODIES OF INTEREST GENERAL

In the annual aggregate limit of € 50,000, you can deduct 75% of payments made in cash or by giving full ownership of securities of companies traded in favor of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or research or teaching artistic public or private, general interest, non-profit foundation recognized of public utility structures for integration through economic activity governed by the Labour Code (intermediary associations, business integration ...) university endowments, foundations partnership, the National Agency of Research, employer groups for integration and qualification (GEIQ), associations of public benefit for the purpose funding and support for creation and takeover of companies (Association for the Right to Economic Initiative (ADIE) and Entrepreneurship Network).

This reduction applies to payments made after October 1,2011 the deadline for filing your tax. It can not be combined with that provided for income tax.

The annual ceiling for gifts reduction remains at € 50,000. However, if you apply the benefits of the cumulative reduction for investment in SMEs and the reduction of the donation, the overall annual ceiling is set at € 45,000.

ALLOCATION OF TAX ON CAPITAL PAID OUT OF FRANCE

If you are concerned, being domiciled in France, you have the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situated abroad taxable in France and abroad under the wealth tax.

No charge may be made if the property has supported a wealth tax or capital abroad is not taken into account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French tax. The attributable amount of foreign tax limited to the portion of French tax attributable only to property located outside France. Register online RS the amount to be charged. If you file a Declaration No. 2725 or No. 2725 K, you must complete Appendix 5.

If you do not have at the time of purchase of the Declaration No. 2725 or No. 2725-K, the information and documents required to impute the tax paid abroad, you can apply later in Appendix 5 to support a claim for restitution addressed to the tax of individuals who received the statement.

NET AMOUNT PAYABLE

Calculate the amount of your tax liability and must wear the line ST.

PAYMENT OF YOUR ISF:

CHARGING THE RIGHT TO RETURN

You are liable for the ISF and you have a right to restitution of direct taxes based on income for 2012.

You must use the reverse charge procedure on the ISF. The balance of restitution not charged to your ISF 2012 is reportable exclusively on amounts due under the ISF years.

If you use this payment method, you must attach a printed DRBF No. 2041. You can download this form and explanatory notes on the GO No. 2041 impots.gouv.fr or get them from your local public finances

2. 종합부동산세 개요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재산세와 동일), 납기 : 12.1~12.15
- 과세대상(지방세법상 과세유형 구분 → 종부세법상 기준금액 초과)

〈부표 8〉 과세대상(지방세법상 과세유형 구분 → 종부세법상 기준금액 초과)

구 분	'05년	'06년~'08년	'09년~'11년
주 택	인별 9억 초과	인별 6억 초과	인별 6억 초과 (1세대1주택은 9억 초과)
종 합 토 지	인별 6억 초과	인별 3억 초과	인별 5억 초과
별 도 토 지	인별 40억 초과	인별 40억 초과	인별 80억 초과

※ '06~'07년은 당초 세대별 합산과세하였으나, '08.11.13 위헌결정으로 인별과세 전환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액 -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80%, 세부담상한 : 1.5배

- 세 율

〈부표 9〉 주택 종부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억원 이하	0.5%	-
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0.75%	150만원
12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1%	450만원
50억원 초과 ~ 94억원 이하	1.5%	2,950만원
94억원 초과	2%	7,650만원

〈부표 10〉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종부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5억원 이하	0.75%	-
15억원 초과 ~ 45억원 이하	1.5%	1,125만원
45억원 초과	2%	3,375만원

〈부표 11〉 별도합산토지(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종부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0억원 이하	0.5%	-
200억원 초과 ~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부표 12〉 세액계산절차

세액계산 흐름	항목별 상세설명
① 공시가격	①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	
② 과세기준금액 (공제금액)	② 주택은 6억원(1세대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으로 해당금액 이하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	
③ 공정시장 가액비율	③ 부동산가격 변동시 적절한 수준의 세금부담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비율로 올해부터는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 토지 모두 80%를 적용합니다.
=	
④ 과세표준	④ 직접적인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공시가격의 합계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부표 12〉 계속

세액계산 흐름	항목별 상세설명									
⑤ 세율(%)	⑤	주 택			중 합 합 산 토 지			별 도 합 산 토 지		
		과세 표준	세 율	누진공제	과세 표준	세 율	누진 공제	과세 표준	세 율	누진 공제
		6억원 이하	0.5	-	15억원 이하	0.75	-	200억원 이하	0.5	-
		12억원 이하	0.75	150 만원	45억원 이하	1.5	1,125 만원	400억원 이하	0.6	2,000 만원
		50억원 이하	1.0	450 만원	45억원 초과	2.0	3,375 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 만원
		94억원 이하	1.5	2,950 만원						
94억원 초과	2.0	7,650 만원								
⑥ 종합부동산 세액	⑥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⑦ 공제할 재산세액	⑦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차감합니다.									
⑧ 산출세액	⑧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⑨ 세액공제	⑨ 주택분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일정비율을 차감합니다(중복적용 가능). ·연령별 공제 : 60세 이상(10%), 65세 이상(20%), 70세 이상(30%) ·보유기간별 공제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⑩ 세부담상한진 종합부동산세액	⑩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⑪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⑪ 급격한 세금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액에서 지난해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⑫ 고지세액	⑫ 실제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종합부동산세의 변화

〈부표 13〉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포함)

'05년			'06~'08년			'09년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5.5억 이하	1%	-	3억 이하	1%	-	6억 이하	0.5%	-
5.5~45.5억 이하	2%	550만원	3~14억 이하	1.5%	150만원	6~12억 이하	0.75%	150만원
45.5억 초과	3%	5,100만원	14~94억 이하	2%	850만원	12~50억 이하	1%	450만원
			94억 초과	3%	1억250만원	50~94억 이하	1.5%	2,950만원
						94억 초과	2%	7,650만원

〈부표 14〉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05년			'06~'08년			'09년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7억 이하	1%	-	17억 이하	1%	-	15억 이하	0.75%	-
7~47억 이하	2%	700만원	17~97억 이하	2%	1,700만원	15~45억 이하	1.5%	1,125만원
47억 초과	4%	1억 100만원	97억 초과	4%	2억 1,100만원	45억 초과	1%	3,375만원

〈부표 15〉 별도합산토지(건축물 부속토지 등 사업용토지)

'05년			'06~'08년			'09년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80억 이하	0.6%	-	160억 이하	0.6%	-	200억 이하	0.5%	-
80~480억 이하	1%	3,200만원	160~960억 이하	1%	6,400만원	200~400억 이하	0.6%	2,000만원
480억 초과	1.6%	3억 2,000만원	960억 초과	1.6%	6억 4,000만원	400억 초과	0.7%	6,000만원

4. (구)종합부세법 위헌소송 헌법재판소 결정문 요약

사건번호: 2006헌바112

사건명: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송

선고날짜: 2008. 11. 13

종국결과: 위헌, 헌법불합치, 합헌

결정요약문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 및 제청신청인은 주택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2005년분 또는 2006년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납부 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절차에서 위 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또는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하고, 앞서 본 '구 종합부동산세법'과 합하여는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대하여 각각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이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중 세대별 합산 관련규정에 대해서만 이를 받아 들여 이 사건 2008헌가12 위헌심판 제청을 하고 나머지 제청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들이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이 사건 2006헌바112, 2007헌바71, 2008헌바62,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2007헌바88·94, 2008헌바3 헌법소원심판을 각각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사건(2006헌바112, 2007헌바71, 2008헌바62)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제12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3항 중 '또는 제2항'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4조 제1항 전단,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사건(2007헌바88·94, 2008헌바3, 2008헌가12)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8조 제1항, 제9조 제1, 2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3조 제1항, 제3항 중 '또는 제2항'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4조 제1, 2항 및 종합부동산세법(여기에서는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고, 2007. 1. 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 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억5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과세표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4억5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 (세율 및 세액)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제7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제외하며,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중 199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택분 종합부동

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과세표준〉 〈세율〉

5억5천만 원 이하 1,000분의 10

5억5천만 원 초과 45억5천만 원 이하 1,000분의 20

45억5천만 원 초과 1,000분의 30

제12조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4조 (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 중 12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과세표준〉 〈세율〉

7억 원 이하 1,000분의 10

7억 원 초과 47억 원 이하 1,000분의 20

47억 원 초과 1,000분의 40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

억 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 이하 1천분의 10

3억 원 초과 14억 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 원 초과 1천분의 30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 100분의 70

2. 2007년 : 100분의 80

3. 2008년 : 100분의 90

제12조 (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 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②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4조 (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7억 원 이하 1천분의 10

17억 원 초과 97억 원 이하 1천분의 20

97억 원 초과 1천분의 4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 100분의 70

2. 2007년 : 100분의 80

3. 2008년 : 100분의 90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7. 1. 11. 법

를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신고·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결정과 경정) ①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 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또는 제8조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임대주택의 소유자로서 동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받은 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당해 주택이 추후 동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추정사유가 발생한 때"라 한다)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및 추정사유가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정하여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종합부동산세 제도와 관련한 헌법적 쟁점

(1) 이중과세의 문제

재산세와 사이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자

치단체에서 재산세로 과세되는 부분과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는 부분이 서로 나뉘어져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소득세와 사이에서는 각각 그 과세의 목적 또는 과세 물건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소급입법 과세의 문제

구 종합부동산세법 부칙 제2조는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그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적용됨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시행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라고 하기는 어렵다.

(3)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및 원본잠식의 문제

종합부동산세는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으로서, 일부 수익세적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부과로 인하여 원본인 부동산가액의 일부가 잠식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위헌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자치재정권 침해의 문제

부동산 보유세를 국세로 할 것인지 지방세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에 해당되고, 입법정책상 종합부동산세법이 부동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여기에서도 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7. 1. 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부분(이하 '이 사건 국세 규정'이라 한다)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5) 헌법 제119조 위반의 문제

국가에 대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제119조 제2항이 보유세 부과 그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택 등에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그 자체를 헌법 제119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6) 헌법상 체계정당성 원리 위반의 문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는 별개의 독립된 국세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증과세 특례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나 다른 조세와의 관계에서도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입법 체계의 정당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7) 입법권 남용의 문제

조세 관련 법률이라 하여 정부가 제출하는 방식으로 입법하여야 한다는 헌법적인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 제40조에 의하면 입법권은 본래 국회에 속하는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이 비록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형식으로 입법되었다 하여 이를 들어 입법권의 남용이라 하기도 어렵다.

나. 세대별 합산과세와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반 여부

(1)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 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이하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혼인한 부부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에게 더 많은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혼인과 가족생활을 특별히 더 보호하도록 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특정한 조세 법률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면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2)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은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과세를 실현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수긍할 수 있으나, 가족 간의 증여를 통하여 재산의 소유 형태를 형성하였다고 하여

모두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정당한 증여의 의사에 따라 가족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도 국민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며,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고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의 재산까지 공유로 추정할 근거규정이 없고, 공유재산이라고 하여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할 당위성도 없으며, 부동산 가격의 양등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오로지 세제의 불비 때문에 발생하는 것만이 아니며, 이미 헌법재판소는 자산소득에 대하여 부부간 합산과세에 대하여 위헌 선언한바 있으므로 적절한 차별취급이라 할 수 없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상의 명의신탁 무효 조항이나 과징금 부과 조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 추정규정 등에 의해서도 조세회피의 방지라는 입법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으로 인한 조세부담의 증가라는 불이익은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조세회피의 방지 등 공익에 비하여 훨씬 크고, 조세회피의 방지와 경제생활 단위별 과세의 실현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공익은 입법정책상의 법익인데 반해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는 헌법적 가치라는 것을 고려할 때 법익균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여부

(1)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데 목표가 있고, 아울러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수긍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재산세 납세의무자나 인구, 세대 중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차지하는 비율, 1인당 또는 1세대당 평균세액, 세액 단계별 납세자 및 납세액의 분포, 부동산 가격 대비 조세부담률, 직전년도 총세액 부담액에 대한 150% 내지 300%

의 세액 상한의 설정 등에 비추어 보면, 종합부동산세법이 규정한 조세의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에게 남겨 놓는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이고, 위 가격 대비 부담률에 비추어 보면, 매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가액 전부를 조세 명목으로 무상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주택분 및 종합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정도는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는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그러나 주택의 경우에는 헌법 제35조 제3항에서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할 장소로 필수 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주택공급 정책의 수단을 통하여도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고액의 주택을 보유한 자를 정책 집행의 대상으로 삼아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수단의 선택은 보다 엄격한 헌법적 심사의 기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하고 있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전문 중 괄호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8조 제1항, 제9조 제1, 2항(이하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이라 한다)은,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중 적어도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일정한 기간 이상 이를 보유하거나 또는 그 보유기간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세 대상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조세지불 능력이 낮거나 사실상 거의 없는 자 등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그 보유의 동기나 기간, 조세 지불능력 등과 같이 정책적 과세의 필요성 및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황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의

예외를 두거나 과세표준 또는 세율을 조정하여 납세의무를 감면하는 등의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같은 주택 보유의 정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다른 일반 주택 보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일률적 또는 무차별적으로, 그것도 재산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율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다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주택 보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이와 달리,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하고 있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3항 중 '또는 제2항'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4조 제1항 전단,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본문 중 괄호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3조 제1항, 제3항 중 '또는 제2항'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4조 제1, 2항(이하 '이 사건 종합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이라 한다)은, 매년 종합합산 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반복적으로 부과되어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의 정도 및 주택과는 또 다른 토지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보유 및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꾀하며, 징수한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양여를 통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그 밖의 종합부동산세 부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

(1)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 위배 여부

①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부채를 고려함이 없이 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이 아니고, ② 토지와 주택의 사회적 기능이나 국민

경제의 측면, 특히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이 되는 생활공간인 점을 고려할 때, 토지와 주택을 다른 재산권과 달리 취급하더라도 합리성이 없다 할 수 없으며, ③ 종합부동산세법은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소유자별로 합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재산세의 일종이므로, 사회·경제적인 여건으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하여 이를 들어 수도권을 비수도권에 비하여 차별한다고 할 수는 없고, ④ 임대주택, 기숙사, 사원용 주택, 건설사업자의 미분양 주택 등은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주택의 공급에 기여하여 부동산의 가격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를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여부

주택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사실상 제약당할 여지가 있으나, 이는 위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주택 등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수반하는 반사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생존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종합부동산세법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분의 경우에는 6억 내지 9억 원, 종합합산 토지분의 경우에는 3억 내지 6억 원을 초과하여 보유자료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는바, 위 과세대상 주택 등의 가액에 비추어 보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생존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관련한 재산권 등 침해 여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특조법상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재산권의 제한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반영되어 과세표준이 감액 평가됨으로써 일반토

지와 비교할 때 감액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에 더하여 다른 일반토지와 같은 세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하여 다른 일반 토지에 비하여 특별히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마. 헌법불합치 결정과 잠정적용 명령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할 경우에는 주택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전혀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인 공백 상태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일정한 경우에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지 않은 것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 사건 위헌 결정의 취지와 달리 모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줌으로써,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을 존속시킬 때보다 단순위헌의 결정으로 인하여 더욱 헌법적 질서와 멀어지는 법적 상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고, 위헌적인 규정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합헌적으로 조정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고, 특히 일률적·장기적으로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법규정에 있어서는 입법자로 하여금 정책적 판단을 숙고할 수 있는 여유를 주어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위헌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다만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4.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김종대) 요지

가. 헌법불합치 부분에 대한 재판관 목영준의 일부 합헌의견

(1) 납세의무자의 주관적 요소에 따라 납세의무자 여부와 적용세율을 달리하는 것은 재산세의 성격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의 범위와 세율이 조세정책에 관한 입법자의 재량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 제7조 제1항(개정 법 제7조 제1항 전문 중 괄호 부분 제외) 및 세율에 관한 제9조 전단(개정 법 제9조 제1, 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그러나 주택의 장기보유자에 대한 조세부과는 '주택의 가격안정'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범위를 벗어날 뿐 아니라 이를 달성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므로, 법 제8조(개정 법 제8조 제1항, 과세표준)가 과세표준을 시가에 근접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면서도 과세표준의 상승폭 제한 또는 물가상승에 따른 보유공제 등 과세표준에 대한 조정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주택장기보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재판관 조대현의 합헌의견

(1) 종합부동산세의 본질은 국가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재산보유세이고, 부동산 투기억제나 부동산 가격안정을 근본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 부동산의 장기보유 여부나 보유목적의 투기성 여하에 따라 종합부동산의 과세 여부나 과세 범위를 달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주거목적으로 보유하는 1주택의 경우에 장기보유 여부나 다른 재산·소득의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제도는 세대별 부동산 보유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파악하는 조세정책적 결정이고, 세대원들의 소유명의 분산을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여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조세부담능력을 잘못 파악하였다거나 응능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헌법 제36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재판관 김종대의 합헌의견

(1) 세대별 합산과세방식에 관해 보건대, 주택은 그 소유권이야 개인별

로 귀속되겠지만, 그 사용은 세대를 이루어 사는 가족들의 공동주거로 쓰이는 특수성이 있다. 이 같은 과세목적물인 주택의 특성상 같은 세대를 구성한 구성원이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개인별로 과세 않고 이를 세대별로 합산과세 하겠다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할 뿐 아니라 과세단위에 관한 논리상의 결함도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예외조항에 관해 보건대, 주거목적의 1주택이라고 해도 고가의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그 주택가액에 상응하는 보유세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그 부담 정도 역시 선진제국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에 불과하고, 혹 납세의무자에 따라서는 극소수자에게만 부과시키는 과도한 세금이라고 느낄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는 종합부동산세와는 다른 세금인 양도소득세의 부과상 문제점에서 비롯된 면이 없지 않은 점과 종합부동산세의 입법목적에는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이외에 부동산 투기 및 과다보유의 억제 등을 통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주택보유자에 대하여 보유기간이나 조세지불능력을 고려한 과세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지 않았다고 하여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5.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2. 8. 29.과 2005. 5. 26. 자산소득에 대하여 부부간 합산과세를 하던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및 구 소득세법(1974. 12. 24. 법률 제2705호로 전문개정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혼인한 부부를 사실혼 관계의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정당화 되지 아니하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결정(2001헌바82, 2004헌가6)을 선고한 바 있다.

6.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그 동안 국가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어 왔던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그 중 세대별 합산 과세방법은 헌법재판소가 과거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단순위헌을 선언한 것이고, 한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정도는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지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중 적어도 주거 목적으로 1주택 장기보유자 등 일정한 경우에까지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지 아니하고 일률적 또는 무차별적으로, 그것도 재산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율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다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 입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범위를 그러한 주택 보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잠정적용의 헌법불합치 선언을 한 것이다.

<국문요약>

부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부유세의 조세정책적 의미

노영훈

본 연구는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미국의 재정절벽 및 국가부채 축소 논의에서 구체화되는 소득 및 자산불평등도 심화와 이에 대한 조세개혁 논의에서 빠짐없이 제기되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와 순부유세 도입 주장들을 우리나라 상황에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순부유세의 원형적 모습(proto-type)을 유럽 내 시행국들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정리한 결과, 순부유세가 개인소득세의 누진세제 및 세무행정적 보완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도입되었음을 밝힌다. 순부유세는 가계나 개인을 과세단위로 부과하면서 부과대상 자산범위를 부동산 이외에 금융자산 및 기타 실물자산까지도 포함시켜 민간가계 대차대조표상의 구성자산(portfolio) 합계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순자산(또는 순부: net wealth)에 대해 단일 또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면서도 낮은 세율로 매년 부과함으로써, 가계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소득 및 자본이득을 과세당국이 파악하기 어려운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에서 착안하여 시행되었다. 명칭과 달리 고액자산가들만을 대상으로 부과되지 않는 나라들이 많음은 이러한 소득세 보완론적 역할 때문이다. 그러나 순부유세는 장점 못지않게 매년 소유자산에 대한 시가평가(mark-to-market valuation)의 애로, 납부세액 현금 확보의 어려움(liquidity problem), 해외 자산도피, 그리고 비과세 대상자산으로의 자산구성 변화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성 문제들로 1990년대 중후반에는 폐지되는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2010년 유럽 재정위기 국가들을 중심으로 제도

입되고 있으며 세수증대 목적의 조세개혁 방안들 중 순부유세나 일회성 자산세 부과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종합부동산세는 1992년 시작된 토지에 대한 조부유세(gross wealth tax)인 종합토지세에 주택자산을 추가하여 2005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상의 순부유세와 비교하여 보면 부채를 공제하지 않는 조부유세의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한 세제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1년 가계금융조사 미시원자료를 사용하여 주택물건별 지방재산세 및 각종 부가세들의 세액, 그리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추정된 후 이들의 인별 종합부동산세 및 부가세 세액을 산정한 후 주택관련 보유세 부담의 분배효과 및 소득 대비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주택에 대한 지방재산세 등은 소득 기준 미약하게나마 역진적인 반면 주택 자산 소유에 대한 추가적인 주택분 종부세 등 세부담은 누진적임을 Suits 지수값을 통해 확인하였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개편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현실에서 주택분 종부세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주택분 종부세의 성격을 재규명하는 과정에서 주택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주택임대소득 과세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순부유세에 충실하게 개편할 경우의 각종 정책대안들을 모색해 보았다. 연간소득 대비 세액상한부담, 주택자산 산입비율 조정, 순부유세 과세 대상 기준금액 설정 등을 통해 현행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비 세수 및 분배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득 대비 세부담액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대안들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순부유세 도입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기존의 관련 조세들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과세, 상속증여세, 그리고 지방재산세에 대한 조세개혁과 병행하여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

<Abstract>

Net Wealth Tax and Aggregated Real Estate Tax in Korea

RO, Younghoon / Senior Research Fellow

This study compares the genuine net wealth tax and the Korean Aggregated Real Estate Tax, and assess the revenue and distributional effects of substituting the current one for various versions of net wealth tax by micro-simulation of 10,000 or more sample household data.

Chapter II explores the proto-type concept of net wealth tax extracting the core elements from the various forms of wealth taxes implemented in European countries from early 1900. We defined it as 'national (or state level) personal, recurrent (annual) tax levied on household net wealth'. In this sense, Korean Aggregate Real Estate tax which was introduced 2005 after adding housing asset to existing Aggregated Land Tax can be labeled as 'gross wealth tax imposed only on real estate asset'.

In Chapter III we surveyed the net wealth tax experiences in European countries, and found out that the tax was introduced with the aim of complementing loopholes in individual income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With the capital gains and capital income flows from the individual households various portfolio holdings not fully disclosed to the taxing authority, introducing a low-rate net wealth tax together with reducing the progressivity of personal income tax rate schedule would bring more tax revenue and less distortion. Especially, ISF (Impô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 which is the French version of net wealth, had the unique feature of reducing the liquidity problem by setting ceiling requiring not to exceed 50% of taxpayer's annual income.

In Chapter IV we estimated the current housing tax burden in Korea, and examined 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both local property tax and national Aggregated Real Estate Tax. With the rich information on 2011 Korean Household Survey's 10,517 families' income and wealth, we calculated the average net wealth, household current income before tax, recurrent housing wealth tax, and examined the regressivity of local property tax and progressivity of national Aggregated Real Estate Tax. When we measured the progressivity through the Suits' index for both taxes, we found the former to be -0.10 and the latter 0.21.

Finally, we explored the feasibility of substituting current housing wealth tax for genuine net wealth tax in Korea by expanding taxable assets and deducting liabilities. When we examined the various alternatives of Korean net wealth versions, most of them produced more revenues with better distributional effects.

However, as witnessed in many European net wealth tax abolishment cases in 1990s,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requires careful design handling the liquidity problem and mark-to-market valuation together with the reform of the related capital taxes like local property tax and capital gains tax.

〈著者略歷〉

노영훈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Columbia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미국 Harvard 법대 초빙연구위원(visiting scholar)

중국 상하이 복旦(Fudan) 경제학부 초빙교수

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용대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研究報告書 12-07

부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부유세의 조세정책적 의미

2012년 12월 24일 인쇄
2012년 12월 31일 발행

저 자 노영훈

발행인 조원동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전화: 2186-2114(대), www.kipf.re.kr

등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일지사

인쇄

© 한국조세연구원 2012

ISBN 978-89-8191-605-3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7,000원